제2권 제2호

KIPF 재정동향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미국의 PAYGO 제도 소개 / 홍승현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 원종학

주요국의 재정동향

주요국의 재정통계

ISSN 2093-3541

한국조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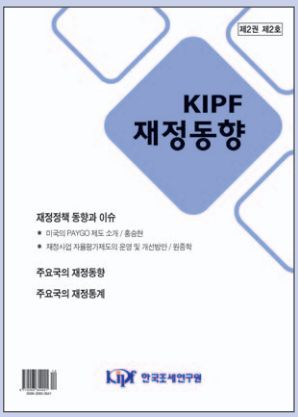

계간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2호(통권 제6호)

발 행 처	한국조세연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발 행 인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김정훈(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편 집 위 원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이은경(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권나현(영국), 김윤지(캐나다), 김정원 · 조은빛(독일),
	김은정(호주), 이성호(일본), 임현정(미국), 이은희(프랑스)
편집 · 제작	최병규(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계간 재정동향	등록번호 송파바00028 / 등록일 2010년 2월 8일
	발행일 2011년 5월 31일 / ISSN 2093-3541
인 쇄	고려문화사 02)2277-1508

계간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2호(통권 제6호)

2011년 5월

한국조세연구원

[목차]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5

Ⅰ. 재정정책 동향 ····· 7

1.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및 공기업결산 완료 ····· 7
2.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 11
3. 재정제도 등 재정운용 관련 ····· 15
4. 최근 재정상황 ····· 19

Ⅱ. 이슈 및 분석 ····· 20

1. 미국의 PAYGO 제도 소개 / 홍승현 ····· 20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 원종학 ····· 34

Ⅲ. 국내외 보고서 ····· 45

1. 주요 보고서 요약 ····· 45
2. 보고서 목록 ····· 69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 87

Ⅰ. 주요국 동향 ····· 89

Ⅱ. 미국 (FY2011: 2010.10~2011.9) ····· 92

Ⅲ. 일본 (FY2011: 2011.4~2012.3) ····· 100

Ⅳ. 영국 (FY2011-12: 2011.4~2012.3) ····· 126

Ⅴ.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 138

Ⅵ. 독일 (FY2011: 2011.1~2011.12) ····· 150

Ⅶ. 캐나다 (FY2011-12: 2011.4~2012.3) ····· 158

Ⅷ. 호주 (FY2011-12: 2011.7~2012.6) ····· 168

제 3 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 185

Ⅰ. 미국 (2011년 3월 기준) ····· 187

Ⅱ. 일본 (2011년 2월 기준) ····· 192

Ⅲ. 영국 (2011년 3월 기준) ····· 198

Ⅳ. 프랑스 (2011년 2월 기준) ····· 203

Ⅴ. 독일 (2011년 3월 기준) ····· 207

Ⅵ. 캐나다 (2011년 2월 기준) ····· 211

Ⅶ. 호주 (2011년 3월 기준) ····· 216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Ⅰ. 재정정책 동향
Ⅱ. 이슈 및 분석
Ⅲ. 국내외 보고서

Ⅰ 재정정책 동향*

1.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및 공기업결산 완료

□ 정부는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였음

○ 2010년도 세계잉여금 처리

(단위: 억원)

2010 세계잉여금	① 지방교부세 · 교부금 정산	국가채무상환		④ 세입이입
		② 공적자금 상환	③ 채무상환	
59,514	15,817	13,109	9,176	21,412

주: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① 지방교부세 · 교육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 상환(①제외 금액의 30% 이상), ③기타 채무상환(①,②제외 금액의 30% 이상), ④ '11년도 세입이입 등

○ 관리대상수지는 13조원(GDP 대비 △1.1%) 적자 시현

–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29.7조원)로 GDP 대비 1.4% 흑자

○ 국가채무는 392.8조원(GDP 대비 33.5%)으로 전년보다 33.2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0.3%p 감소

–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373.8조원(GDP 대비 31.9%)으로, 2009년 국가채무(346.1조원, GDP 대비 32.5%)보다 27.7조원 증가(GDP 대비 △0.6%p 감소)하였으나, 2010년 예산 대비로는 20.8조원 감소(GDP 대비 △3.0%p 감소)

– 지방정부 순채무(19조원)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 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성과관리 대상기관(48개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성과지표(1,153개)의 83.7% 달성(달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hspark@kipf.re.kr)

성 965개, 미달성 188개)

〈표 1-Ⅰ-1〉 2010년 재정수지

(단위: 조원, %)

구 분	2009년(A)	2010년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대비(C-A)	예산대비(C-B)
1. 관리대상수지	△43.2 (△4.1)	△30.1 (△2.7)	△13.0 (△1.1)	30.2 (3.0%p)	17.1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6	28.1	29.7	4.1	1.6
3. 통합재정수지(1+2)	△17.6 (△1.7)	△2.0 (△0.2)	16.7 (1.4)	34.3 (3.1%p)	18.7

주: ( ) 안은 GDP 대비 비중, 2010년 결산 GDP(잠정) : 1,172.8조원(예산 GDP : 1,129.5조원)

〈표 1-Ⅰ-2〉 2010년 국가채무 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2009 결산 (A)	2010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대비(C-A)	예산대비(C-B)
중앙정부(①)	346.1	394.6	373.8	27.7	△20.8
(GDP대비 비중)	(32.5)	(34.9)	(31.9)	(△0.6%p)	(△3.0%p)
○ 국 채	337.5	382.3	367.2	29.7	△15.1
○ 차입금	5.4	8.5	3.5	△1.9	△5.0
○ 국고채무부담행위	3.2	3.8	3.1	△0.1	△0.7
지방정부 순채무(②)	13.5	12.6	19.0[1)]	5.5	6.4
국가채무(①+②)	359.6	407.2	392.8	33.2	△14.4
(GDP대비 비중)	(33.8)	(36.1)	(33.5)	(△0.3%p)	(△2.6%p)

주: 1.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확정치는 6월말 결산완료 이후 집계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10년도 재정수지를 잠정 결산한 결과, 관리대상수지가 13.0조원 적자를 시현(GDP 대비 △1.1%)

○ 관리대상수지는 세입 호조, 예산 미집행 증가 등으로 예산 대비 17.1조원 개선

〈표 1-Ⅰ-3〉 2010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잠정)

(단위: 조원, %)

구 분	2009년(A)	2010년				전년대비	
		예산(B)	결산(C)	예산대비		증감 (C-A)	증감률
				증감(C-B)	증감률		
1.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43.2 (△4.1)	△30.1 (△2.7)	△13.0 (△1.1)	17.1	-	30.2	-
2.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5.6	28.1	29.7	1.6	-	4.1	-
3. 통합재정수지(1+2) (GDP 대비, %)	△17.6 (△1.7)	△2.0 (△0.2)	16.7 (1.4)	18.7	-	34.3	-
- 통합재정수입	250.8	262.3	270.9	8.7	3.3	20.1	8.0
- 통합재정지출	268.4	264.3	254.2	△10.0	△3.8	△14.2	△5.3

□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지정된 21개 공기업의 결산서가 주주총회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됨

○ 2010회계연도 공기업 손익 현황을 보면, 총매출은 98.7조원으로 전년 대비 3.5조원(3.7%) 증가하고 순이익은 2.9조원으로 0.6조원(26.5%) 증가

- 에너지, 교통·수송 관련 공기업의 매출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순이익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침
- 반면,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매출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손실충당부채 설정액 감소(대한주택보증) 등 비용 감소로 순이익은 증가

○ 2010회계연도 공기업 재무 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89.7조원으로 전년 대비 39.3조원(11.2%) 증가, 총부채는 244.6조원으로 32.8조원(15.5%) 증가

- 전력, 도로, 철도, 주택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항만·해외자원투자 등 사업확장에 기인
- 자산이 크게 증가한 기관으로는 토지주택공사(17.8조원), 석유공사(5.4조원), 수자원공사(5.2조원), 한전(4.4조원) 등이며 자산 증가와 함께 부채도 증가

○ 공기업의 결산서는 감사원에 제출(2011.5.10)되어 검사받은 후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2011.8.20)될 예정

〈표 1-Ⅰ-4〉 공기업 현황(2010.12.31. 현재)

시장형 (8)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13)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지경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 에너지(6)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 석유공사, 광물자원, 석탄공사
• 부동산(3)	토지주택, 대한주택보증, 감정원
• 교통 · 수송(7)	인천국제, 한국공항, 철도공사, 도로공사, 부산항만, 인천항만, 수자원공사
• 기타(5)	마사회, 관광공사, 조폐공사, 제주국제, 방송광고

〈표 1-Ⅰ-5〉 공기업 손익 현황(요약)

(단위: 조원)

	2009			2010			증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전체	95.2	2.8	2.3	98.7	2.2	2.9	3.5	3.7	△0.5	△19.3	0.6	26.5
• 에너지	56.5	1.0	0.7	66.1	–0.2	0.4	9.6	17.0	△1.2	△120.3	△0.3	△43.5
• 부동산	19.1	0.6	–0.1	12.4	0.6	0.9	△6.7	△35.2	0.1	13.7	1.0	2,019.0
• 교통 · 수송	11.0	0.9	1.1	11.2	1.4	1.1	0.3	2.4	0.5	49.4	△0.1	△7.8
• 기타	8.6	0.3	0.5	9.0	0.4	0.6	0.4	4.6	0.1	26.1	–	6.6

〈표 1-Ⅰ-6〉 공기업 재무 상태(요약)

(단위: 조원)

	2009			2010			증감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	%	부채	%	자본	%
전체	350.5	211.8	138.7	389.7	244.6	145.1	39.3	11.2	32.8	15.5	6.4	4.6
• 에너지	115.2	59.5	55.7	127.5	69.7	57.8	12.3	10.7	10.3	17.3	2.0	3.7
• 부동산	135.8	111.8	24.0	153.9	127.8	26.1	18.1	13.3	16.0	14.3	2.1	8.9
• 교통 · 수송	94.4	38.9	55.5	103.0	45.6	57.4	8.6	9.1	6.6	17.1	1.9	3.5
• 기타	5.1	1.7	3.4	5.3	1.6	3.7	0.3	5.2	△0.1	△3.3	0.3	9.3

2.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 4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극복 이후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속도가 빠르고 양호한 모습

– 그러나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 · 고령화 등 각종 중장기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특히, 향후 수년간은 내년도 선거일정, 무상복지 논쟁 등 감안 시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임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 체계적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

○ 주요 논의 사항

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전략

② 2012년 예산편성 방향

– 내년도 예산의 중점투자방향

③ 복지, 경제 · 일자리, 국방 · 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및 쟁점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제고 방안 등

○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2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임

‣ 2011.5~6월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2012년 예산 요구안 마련
‣ 2011.6월말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2012년 예산 요구안 제출
‣ 2011.7~9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 보완 ⇒ 2012년 예산안 및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
‣ 2011.10.2	2012년 예산안 및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4월 28일,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확정하고, 4월 말 각 부처에 통보

○ 동 지침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안정적 경제운용과 미래 대비를 위해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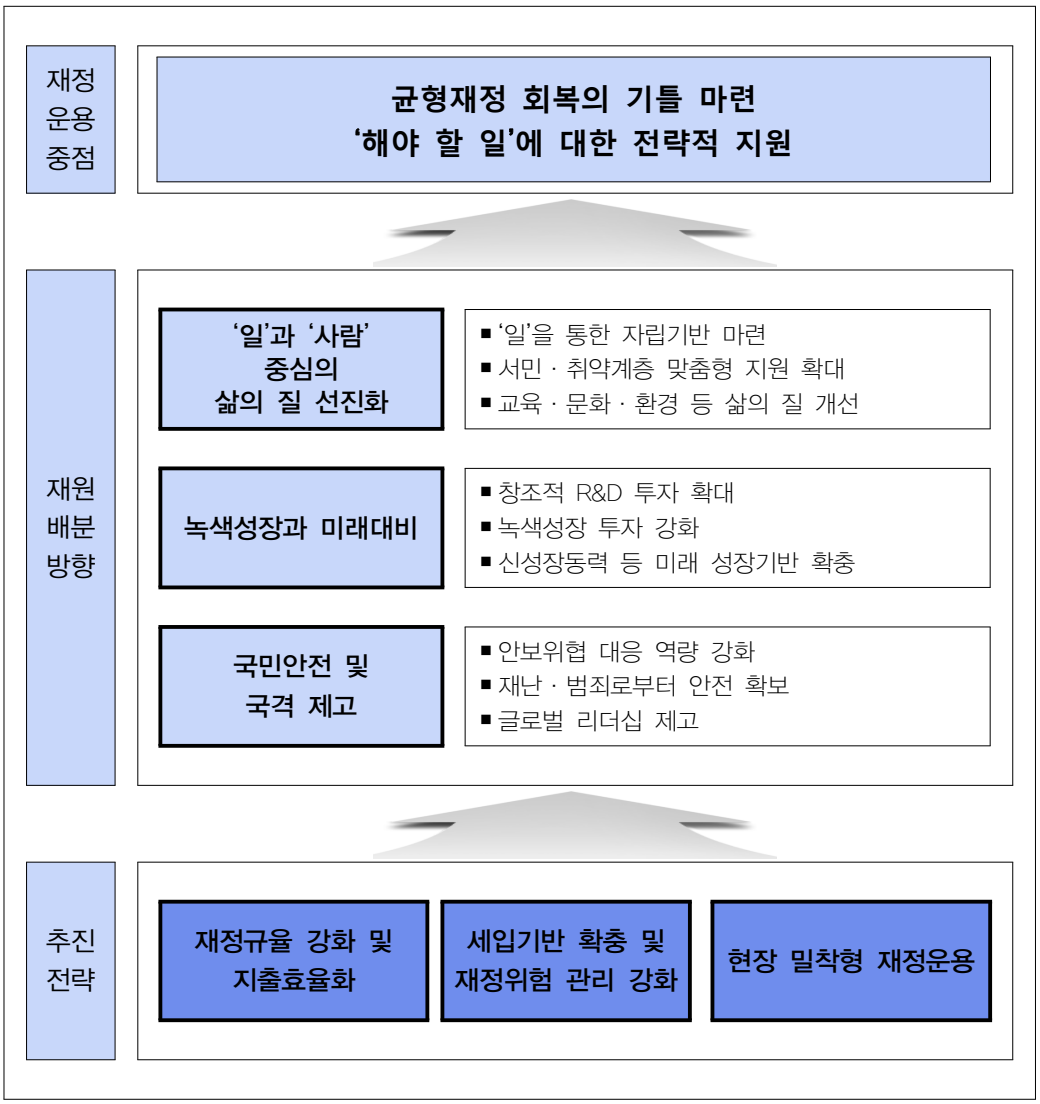

○ 2012년도에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 억제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할 예정

- 2012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하여 재정수지가 2011년(GDP 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재정을 운용
-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정부내 협의절차 강화 등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 소요를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
-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 관리도 강화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략적으로 지원

①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지원

- 서민희망 3대 과제(보육,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를 완결하고,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2단계 서민희망 예산 편성
- 일을 통한 자립, 근로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 촉진을 위해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구축
- 직업 · 평생교육 강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전통문화 중점 육성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둘 계획임

② 녹색성장과 미래 대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창조적 핵심기술 위주로 R&D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유사 · 중복사업 통폐합 등 투자효율성 제고에 주력
- 4대강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또한, IT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신흥국 시장개척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 지원을 확대

③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에 중점

- 안보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투형 군대 육성을 지원
- 자연재해 예방투자 및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 ·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을 확충
-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지속 확대('12년 GNI 대비 비율목표 0.15%)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또한, 취득세 인하 전액 보전 등 지방재정의 안정화 지원 및 낙후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 현장밀착형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갈 예정

– 사업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재정사업의 각 단계에 걸쳐 상시적인 지출효율화를 추진

* 보조사업 존치평가(보조금 일몰제)를 통해 성과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환류

– 또한, 재정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전달체계 개선에도 중점

* 여성 · 노인 등 주요 정책고객에 대한 정책만족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조사하는 등 정책수요자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해 나갈 계획

3. 재정제도 등 재정운용 관련

□ 3월 11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 국회 통과

○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식이 61년 만에 크게 변화

– (종전) 1950년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로 각 부처가 소관 국유재산을 각각 관리하는 분산관리 방식을 유지함에 따라, 각 부처의 칸막이식 권한 행사로 인한 유휴 행정재산의 과다 보유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음

– (개선) 앞으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되,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되며,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됨. 이와 함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청사·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하게 됨

○ 또한, 대규모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개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개발제도'를 도입하였음

○ 동 법률의 2011년 4월 1일 시행에 맞추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을 추진중임

□ 4월 1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 2010년 5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위원회의 한시적(2014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설치·운영방안 보고

– 이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외에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정위험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보완

–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분석·대응뿐만 아니라, 지출효율성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분야 전반에 걸쳐 논의할 계획

– 또한, 주요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재정이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방향을 도출

○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재정위험관리위회 운영방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방안', '재정통계 개편방안', '보조금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여 그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5월 초부터 착수할 계획

○ 금번 평가결과, 일몰(Sunset)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그 외에도 단계적 폐지, 감액, 제도개선 등의 평가결과를 '12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예정

○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와 사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으로 작용

–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하여 동기간 총지출 증가율 6.9%를 상회

* 국고보조사업 규모 :
('07) 32.0 → ('08) 38.2 → ('09) 40.6 → ('10) 42.7 → ('11) 43.7조원

* 국고보조사업 개수 :
('07) 1,421 → ('08) 1,711 → ('09) 2,003 → ('10) 2,081 → ('11) 2,053개

–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 · 폐지가 곤란하며, 보조금 낭비 사례 등 문제 지속 발생

○ 이에 정부는 보조금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존치평가 제도 도입을 작년부터 준비하여, 보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7월)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운영 근거를 반영

– 보조사업 존치평가는 평가의 중복 방지와 각 부처 평가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금년 6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할 예정

□ 4월 29일, '취득세 50% 인하' 지방세특례법 국회 통과

○ 3월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는 대신,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 추진

*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됨

–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 · 확정 예정

* 취득세제 개선 관련 관계부처 TF : 재원지원방법 및 규모 협의 · 확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

※ 정부는 동 발표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10년 12월)하여 취득세율 일부 인상한 바 있음

*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2 → 4%

* 9억원 이하 1인 1주택 : 현행대로 2% (2011년 말까지)

〈표 1– I –7〉 최근 주택 거래세율 변천 추이

연도별	일반주택	고가주택	비 고
2005년 이전	5% (취득2%, 등록3%)	좌동	– 일반 · 고가주택 차별 없음
2005년 1월	3.5% (취득2%, 등록1.5%)	좌동	– 일반 · 고가주택 차별 없음 ('05 : 개인3.5, 법인4)
2006년 1월	2.5% (취득1.5%, 등록1%)	좌동	– 일반 · 고가주택 차별 없음 ('06.8 이전 : 개인2.5, 법인4)
2006년 9원	2% (취득1%, 등록1%)	좌동	– 일반 · 고가, 개인 · 법인 차별 없음
2011년 1월	2%(취득)	4%(취득)	– 고가주택(9억 초과)

주: 2011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취득관련 부분)가 취득세에 통합되었음(종전 등록세 세율과 취득세 세율을 산술적으로 합산)

○ 정부안 마련 및 정치권과 협의 과정

– 취득세를 201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이를 인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해 줌

* 당초 행정안전부는 2조 1,000억원, 재정부는 1조 7,000억원의 세수 부족을 추산했으나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추계규모에 따라 보전키로 결정

〈표 1-Ⅰ-8〉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2011	합계
지출			
	소 계(a)	–	–
수입	취득세	△19,029	△19,029
	지방교육세	△1,903	△1,903
	소 계(b)	△20,932	△20,932
총비용(a-b)		△20,932	△20,932

– 정부안에 대해 취득세 감면은 고가주택 ·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이은 중복적 혜택으로서 부자감세라는 지적,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 및 형평성 차원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음

– 그럼에도 4월 10일 당 · 정 · 청 9인회동(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부산시장도 총리공관 회동에 참석)로 한나라당 정부안에 합의

* 이후 4 · 27 재보선을 앞두고 그 동안 지방재정 악화대책, 보유세 강화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오던 민주당도 4월 12일 정부안에 합의함에 따라 결국 진보신당 등만 끝까지 반대

○ 4월 29일 '취득세 50% 인하' 지방세특례법 국회 통과

– 이번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4. 최근 재정상황

□ 2010년 11월 통계 발표(2011.1.31) 이후 추가 정보 없음

〈표 1-Ⅰ-9〉 통합재정 추이(월별 누계 기준)

(단위: 십억원)

		수입			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소계	경상수입	자본수입	소계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2004년		178,760	177,432	1,329	173,538	145,148	26,992	1,398	5,222	-3,959
2005년		191,488	190,206	1,281	186,398	158,721	24,649	3,028	5,090	-6,521
2006년		209,573	208,091	1,482	205,928	173,688	26,493	5,746	3,646	-10,784
2007년		243,633	241,693	1,940	209,810	169,658	33,045	7,107	33,823	3,577
2008년		250,713	248,809	1,904	238,834	196,879	36,475	5,480	11,880	-15,631
2009년		255,252	252,720	2,532	272,873	209,689	45,134	18,049	-17,620	-43,250
2010년	본예산	262,263	258,714	3,548	264,278	212,396	45,933	5,948	-2,015	-30,100
	1월	25,002	24,946	56	22,694	18,952	2,452	1,290	2,308	466
	2월	39,849	39,651	199	49,312	38,478	8,063	2,771	-9,462	-12,470
	3월	77,599	77,258	340	84,619	68,298	13,728	2,593	-7,020	-19,513
	4월	109,371	108,211	1,160	108,643	87,453	17,387	3,803	728	-13,635
	5월	128,157	126,755	1,402	128,493	103,611	20,575	4,307	-337	-16,804
	6월	143,273	141,671	1,602	154,675	122,232	27,485	4,958	-11,402	-29,449
	7월	166,720	165,053	1,668	168,866	140,848	23,259	4,759	-2,146	-20,927
	8월	188,066	186,265	1,802	181,825	153,054	24,497	4,274	6,241	-14,507
	9월	209,255	207,322	1,933	202,241	172,532	26,274	3,435	7,014	-16,502
	10월	232,121	230,145	1,976	216,598	185,145	27,912	3,541	15,523	-9,879
	11월	252,599	250,445	2,155	230,798	197,826	29,432	3,539	21,802	-6,169
11월진도비		96.3%	96.8%	60.7%	87.3%	93.1%	64.1%	59.5%	-	-
(전년도)		(92.9%)	(92.7%)	(112.0%)	(89.2%)	(91.7%)	(88.1%)	(64.0%)	-	-
(5년 평균)		(93.6%)	(93.6%)	(95.4%)	(88.6%)	(90.7%)	(81.5%)	(76.1%)	-	-

Ⅱ 이슈 및 분석

1. 미국의 PAYGO 제도 소개*

□ 미국에서 PAYGO(Pay-As-You-Go) 제도는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운영됨

○ 예산강제법(BEA)에서 수립한 것과 같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statutory) PAYGO 제도

○ 상원과 하원 자체 내에서 도입한 것과 같은 의회규칙으로서의 PAYGO 제도

가. 법 규정으로서의 PAYGO 제도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1]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PAYGO제도를 2010년 2월 12일을 기점으로 다시 영구 부활시킴[2]

○ 이 법은 세입과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3]을 변화시키는 모든 신규 법률들(2010년 2월 12일 이후 제정되는)이 전체적으로 예산중립적(budget neutral)이어야 할 것을 요구

– 세입감소를 유발하는 법안은 반드시 의무지출의 감소나 다른 세입증가를 통해 반드시 세입감소분을 상쇄해야만 하는 원칙

– 의무지출의 증가를 유발하는 법안은 반드시 세입증가나 다른 의무지출의 감소를 통해 지출증가분을 상쇄해야만 하는 원칙

*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shhong@kipf.re.kr)

1) 과거에는 예산강제법(BEA)을 통해 한시적(1990년~2002년)으로 운영

2) 원래는 2009년 7월 단독법안으로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법안과 합쳐져서 통과되고 다시 하원에서 2010년 2월 4일 통과.

3) 법에는 직접지출(direct spend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매년 세출법안심사를 받는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Medicare나 Medicaid같은 entitlement program들도 포함.

□ 제도의 운영

○ 예산점검표(scorecard)[4]를 통한 법안의 효과 종합

– 의회가 회기를 마칠 때까지 제정한 법안들 중, PAYGO원칙의 적용을 받는 법안(이후 편의상 'PAYGO 법안'이라 칭함)들은 그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점검표에 기록

• 예산상의 효과의 측정은 의회와 OMB 양측에서 이루어짐

• 의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전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의회 의사록(Congressional Record)에 '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해당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 정보를 제공하는 성명을 게재

• OMB는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이 된 법안의 예산상의 효과를 예산점검표에 기록하는데, 법안에 포함된 성명서 등의 비용추계자료를 이용하고, 만일 이 자료가 불가능한 경우, OMB가 직접 결정

– 의회의 회기가 끝난 후 휴회에 들어가면, OMB는 예산점검표(scorecards)를 합산하여 당 회기에 제정된 PAYGO법안들의 전체적 재정효과를 합산

○ 만일 PAYGO법안[5]들의 재정상의 효과가 재정적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대통령이 의무지출들에 대해 일률적 삭감(sequestration)을 함으로써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명시

– '일률적 삭감'이란 통합예산(unified budget)상의 (제외대상이 아닌) 의무지출 프로그램들에 대해, 예산점검표상의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OMB가 정한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을 의미

• 예외적으로 메디케어 지급금은 최고 4%까지만 삭감 가능

• 만일 OMB가 결정한 삭감비율이 4%를 넘는 경우, 메디케어 지급금을 4% 삭감 후, 나머지 지출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을 적용

– 일률삭감 제외대상: 1985년의 BBEDCA(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4) PAYGO법안들의 예산상의 효과를 기록하는 표로서, 5년간의 효과와 10년간의 효과를 구분하여 기록. (참고자료의 예시 참조)

5) 의무지출(direct spending)이나 세수에 영향을 주는 수권법률(authorizing legislation)과 중장기의 의무지출이나 세수에 영향을 주는 세출법안(appropriation legislation)

Control Act of 1985)의 예외 대상에서 준용

- 제225조 (a)~(d)항들에 해당하는 내용: 사회보장, 보훈 프로그램,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세금공제
- 제 255조 (g)~(h)항들에 해당하는 내용: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연방 은퇴/장애 관련 항목, 이미 법적 책임이 있는 기타 프로그램, 경기회복 관련 프로그램 등

[예산점검표를 이용한 PAYGO법안 적용 예시]

○ 2010년 PAYGO법안의 제정으로 2015년까지 200억달러의 비용(적자 증가), 2020년까지 100억달러의 비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

– 비용은 초기에 크고, 2017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표 1-Ⅱ-1〉 법안의 비용 추정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정된 효과	+2	+4	+5	+4	+3	+2	+1	–2	–3	–3	–3
5년 예산점검표		+4	+4	+4	+4	+4					
10년 예산점검표		+1	+1	+1	+1	+1	+1	+1	+1	+1	+1

자료: OMB

– 이러한 법안의 효과는 5년 점검표에 매 회계연도 40억달러(200억달러/5년), 10년 점검표에는 매 회계연도 10억달러(100억달러/10년)를 기록

– 이러한 기록은 모든 PAYGO법안들에 대해 작성되고, 회기가 끝난 후 OMB는 각 점검표들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효과를 종합

– 종합된 예산점검표상의 예산심의 연도(위의 예에서는 2011년)의 5년/10년 점검표 수치가 양(+)이면 부채의 증가가 일어난 경우로 일률삭감(sequestration)이 적용

- 5년 점검표와 10년 점검표를 비교하여 큰 비용을 기준으로 적용
- 상쇄대상 비용만큼 예산심의 연도의 모든 의무지출에서 동일비율로 일률

적으로 삭감. (해당 예산년도에 한해서 일어남)

– 〈표 1-Ⅱ-1〉의 예의 경우, 2011회계연도에 대해 총 40억달러의 일률삭감이 발생

• 추가 입법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15년까지는 매년 40억달러, 그 이후 2020년까지는 매년 10억달러의 일률삭감이 발생

○ 2011년, 새로운 입법을 통해 비용감축이 발생하는 경우

〈표 1-Ⅱ-2〉 추가 입법의 효과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추정된 효과	–1	–1	–1	0	–1	–1	–1	–2	–2	–2	–2
앞선 회기까지의 수지		+4	+4	+4	+4						
5년 평균 법안 비용		–1	–1	–1	–1	–1					
현재까지의 총계		+3	+3	+3	+3	–1					

–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의회는 앞선 회기까지의 예산점검표를 시작으로 추가 법안의 효과를 기록

– 이 경우, 2012회계 연도의 일률삭감 기준금액이 30억달러로 감소

○ PAYGO법안 적용의 예외

– 예산외(off-budget) 항목[6]에 대한 법안

– 긴급비용(emergency designation)으로 구분되는 프로그램

– 농업가격보조, food stamp,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등과 관련된 법안

– 일몰시한이 있는 대체최저한도세(AMT), 메디케어 수가, 유산세와 증여세 등에 있어 현행법의 개정법안

□ 보고서의 발행과 일률삭감 여부 결정

○ 2010년 PAYGO법안은 의회의 매 회기가 끝나고 14일(공휴일과 주말 제외) 이내, OMB는 예산점검표(scorecards)*를 합산하여 보고서를 발행하고 일률삭감(sequestration)의

6) 현재 예산외(off-budget)항목에는 Postal Service Fund,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Trust Fund와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가 포함

필요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

- 2010년 2월 12일 이후 지난 회기가 종료하기까지의 PAYGO법률들을 모아서 1월 13일 처음으로 『2010 PAYGO Report』를 발간
  - 총 97개의 법률이 포함
  - 44개 법률에는 의회의 추계치가 사용되고, 나머지 53개의 법률에는 OMB의 추계치가 사용
  - PAYGO 적용에 제외된 법률들에 대한 설명과 이들이 포함되는 경우의 재정효과도 함께 제시

나. 의회 규칙으로서의 PAYGO 제도

□ 의회의 예산 강제 규정들

○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을 중심으로 기타 의회규칙 및 법적 규정들(PAYGO나 CUTGO[7] 등)을 통해 예산이 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에 대해 규정

○ 상원과 하원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개별 법안 심사 시 의원들의 '이의제기'(point of order)를 통해 집행됨

- 따라서, PAYGO규칙에 위배되더라도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

○ PAYGO규칙은 상원과 하원에서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나 근본 목적은 동일

□ 상원의 PAYGO 규칙

○ 상원의 PAYGO제도

- 1993년 법정 PAYGO제도의 보강을 위해 도입. 그 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형태는 2008회계연도의 예산결의안에서 수정된 내용(Section 201 of S.Con.Res.21)

○ 적용 범위 및 대상

7) 'Cut-As-You-Go'의 약자로, 의무지출(direct spending)을 증가시키는 법안의 통과를 금지하는 규정.

– 5회계연도와 10회계연도에(현재 회계연도를 포함 시, 각각 6년과 11년[8]) 걸쳐 예산내(on-budget) 적자에 대한 효과를 고려

– 적자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의무지출(direct spending)과 세입(revenue)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법안이 적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이 증가효과를 상쇄하는 법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

〈표 1-Ⅱ-3〉 상원 PAYGO규칙의 주요 변화

도입	변경	만기	내용
1993/4/1	103회 의회, FY1994년 예산결의안	없음	PAYGO규칙의 도입
1994/5/12	103회 의회, FY1995년 예산결의안	1998/9/30	부채증가 고려 대상연도의 변경
1995/6/29	104회 의회, FY1996년 예산결의안	2002/9/30	부채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법률의 고려 대상을 조정법안(reconsiliation legislation)을 제외한, 1월1일 이후 제정된 법안으로 한정
1999/4/15	106회 의회, FY2000년 예산결의안	2002/9/30	예산중립성의 조건을 완화하여 예산 내(on-budget) 흑자도 부채증가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2002/10/16	107회 의회, Section 2(b) of S.Res.304	2003/4/15	FY2003년 예산결의안의 부재와 재량지출 한도의 기한만료로, 연간 세출법안에 포함된 의무지출이 포함되도록 규칙의 적용범위 확대
2003/4/11	108회 의회, FY2004년 예산결의안	2008/9/30	연간세출법안에 적용시키는 것을 중단. 예산결의안에 이미 포함된 의무지출과 세입 변화에 대한 예외조항 도입
2007/5/17	110회 의회, FY2008년 예산결의안	2017/9/30	예산결의안에 이미 포함된 변화에 대한 예외조항 폐지. 부채 변화의 고려 대상 연도를 현재+향후5년, 현재+향후10년으로 변경

주: Heniff(2010)

– 의무지출(direct spending)은 mandatory spending이라고도 불리며, 세출법안(appropriations acts)이 아닌 실업급여, Medicare, 연방연금 등과 같이 주로 수권법(budget authority)의 적용을 받는 지출로 1985년 GRH법에 정의된 의무지출의 개

8) 대부분의 법안들의 효과가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해(예산연도)부터 시작되므로 문서에 따라 5년/10년 혹은 6년/11년으로 설명되고 있음.

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9)]

- 의무지출은 개별 수권위원회(authorizing committee)의 소관

– 세입(revenue)의 경우 관련 법률은 대부분 재정위원회(Senate Committee on Finance)의 소관으로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법인세, 관세 등에 대한 법률안이 해당

○ 적용·강제 방식

– 규칙의 적용을 위해, 매년 초부터 규칙 적용의 대상이 되고 기준선전망(baseline projection)에 포함되지 않은 법안의 예상효과를 'pay-as-you-go ledger'에 기록. 여기에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법안들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

- 또한 'pay-as-you-go ledger'에 기록된 흑자를 적자를 상쇄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가능

– 법안의 예상효과는 상원 예산위원회(SCB, Senate Committee on the Budget)의 계산을 따르게 되는데, 보통 지출의 경우는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세입의 경우는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추계치를 사용하나, 상원 예산위원회 자체의 추계치를 사용할 수도 있음

– 법안들이 예산내 적자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결정은 이전 기의 예산결의안에 사용된 기준선 전망[10)]을 기준으로 사용

– PAYGO규칙의 적용은, 특정 법안에 대한 의사진행상의 이의제기(point of order)가 있을 경우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의제기가 없다면 상원에서 법안이 적자를 증가시키더라도 그대로 심의되고 통과되는 것이 가능

– PAYGO규칙은 만장일치로 철회가 가능하고, 만일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60명 이상의 상원의원(재적의원의 3/5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의제기를 철회하는 발의가 가능[11)]

9) 1985년 속칭 GRH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에서는 의무지출(direct spending)을 (1)세출법안 이외의 법에 의해 부여받은 예산권한, (2)entitlement관련 예산권한, 그리고 (3)food stamp프로그램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10) 이는 CBO에서 현행 법들을 기준으로 전망치를 제공한 것.

11) 대부분의 경우, 이의제기를 철회하는 발의는 통과되지 못함(Heniff, 2010).

□ 하원의 PAYGO 규칙

○ 하원의 PAYGO제도

– 110회 의회인 2007년 1월 5일에 처음 채택되어, 매년 의회규칙의 일부로 지속되고 있으며 별도의 만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상원과는 달리, 적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 뿐 아니라 흑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까지 금지하고 있음

– 법안의 예상효과는 하원 예산위원회(House Budget Committee)의 추계, 혹은 CBO의 추계를 바탕으로, CBO가 제공하는 기준선 전망치를 기준으로 평가

– 적용 방식은 상원의 PAYGO규칙과 유사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적자 중립성을 확인하여 법개정안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법안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 이의제기의 철회를 위한 투표는 상원과는 달리 적용되지 않음. 다만, 법안의 심사 이전에 하원의 규정위원회(Rules Committee)에서 해당 법안의 예외를 규정하는 특별 명령(special order)을 보고하고, 의회에서 과반수로 승인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 다른 경우는, 해당 법안을 '제외목록(suspension calendar)'에 포함시키고 규칙 적용의 제외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로, 이를 위해서는 2/3의 찬성이 필요

• 상원과는 달리, 법안이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 다른 적자법안의 상쇄에 사용되지 못함

○ 최근의 변화: CUTGO규칙

– 최근 112회 의회의 시작과 함께, 기존의 PAYGO규칙을 보완/강화하여 CUTGO(Cut-As-You-Go)규칙을 도입(H.Res.5의 Section 2(d)(1))

– 수입(revenue)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수입의 증대를 통한 지출증가의 효과 상쇄와 상관없이, 의무지출(direct spending)을 증가시키는 법안의 상정을 금지시키는 규칙

• 수입의 증가를 이용한 비용의 상쇄도 금지

– 최근들어 PAYGO규칙의 예외를 통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나, 여러 가지 집행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 의회 PAYGO 규칙의 적용

○ 실제 PAYGO제도의 적용 예

–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한 보고서[12]를 보면, 상원의 경우 1993년 도입 이후 2009년 111회 의회까지 총 43번의 PAYGO규칙이 적용된 의사진행상 이의제기(point of order)가 있었고, 2009년 한 해에만 11번의 이의제기가 있었음

- 43번의 이의제기 중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의제기 철회를 위한 발의가 있었으나 그 중 8번만 이의제기가 철회된 경험이 있음
- 나머지 35번의 경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법안(개정)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하원에서는 관례상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성공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 Emergency Designation

– PAYGO규칙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이나 세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을 통해 적자의 증가가 발생

– PAYGO규칙의 적용에 있어 '이의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외에 중요한 loophole 중의 하나가 긴급지출/세입(emergency designation)을 이용하는 것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안에 긴급지출/세입 법안임을 명시하는 해당 조항을 삽입하여 상하원 규칙과 법안으로서의 PAYGO산정에서 제외됨을 명시

○ 예를 들어, 최근의 실업급여연장법(Unemployment Compensation Extension Act of 2010: H.R. 4213, P.L. 111-205)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가 법안문건에 포함

(b) Emergency Designations – Sections 2 and 3 –
(1) are designated as an emergency requirement pursuant to section 4(g) of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P.L. 111–139; 2 U.S.C. 933(g));
(2)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designated as an emergency for purposes of pay–asyou–go principles; and
(3) in the Senate, are designated as an emergency requirement pursuant to section 403(a) of S.Con.Res. 13 (111th Congress), the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12) Heniff(2010)

다. PAYGO 제도의 전반적 평가

□ PAYGO제도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 - 주로 공화당 측의 반발

○ 결국 목표했던 “지출의 감소”가 아닌 지출의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세금의 증가만을 가져왔다는 비판

○ PAYGO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에서 여전히 큰 증가세

- 2011년 1월 13일 발표된 OMB의 『2010 PAYGO Report』를 살펴보면 예산점검표(scorecard)에는 640억달러의 감소가 기록되었지만, 이는 8,840억달러에 이르는 적자 증가항목들이 PAYGO제외 항목으로 제외. 결국 최근에 제정된 법률들로 인한 적자 증가는 향후 10년에 걸쳐 8,200억달러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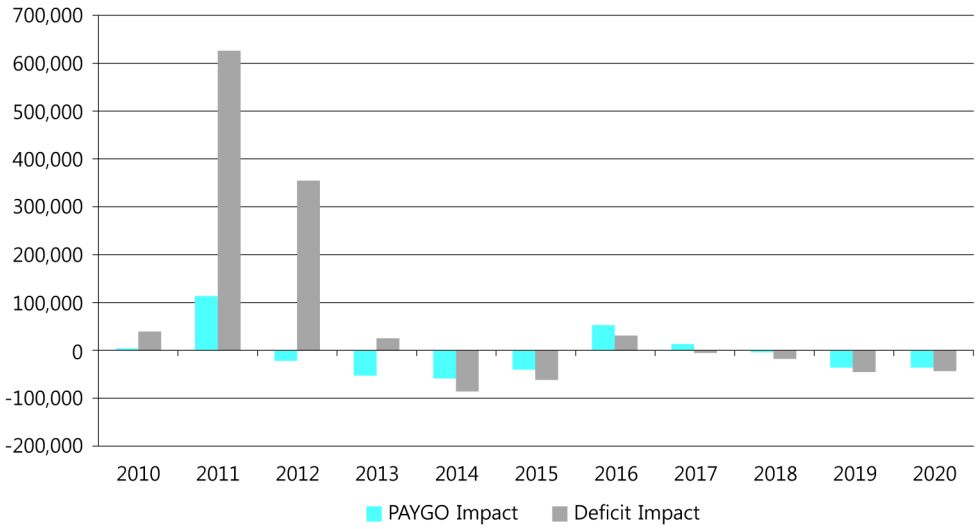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조세연구원, 『미국의 재정』, 재정분석센터, 2011

Concord Coalition, "New House Rules Clear Path for New Deficit," *Issue Brief*, 2011

Heniff, B. Jr., "Allocations and Subdivisions in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CRS Report for Congress*, 2003

_____, "Budget Enforcement Procedures: Senate Pay-As-You-Go (PAYGO) Rule," *CRS Report for Congress*, 2010

_____, "Emergency Designation: Current Budget Rules and Procedures" *CRS Report for Congress*, 2011

Keith, R., "Introduction to the Federal Budget Process", *CRS Report for Congress*, 2008

Keith, R. and B. Heniff Jr., "PAYGO Rules for Budget Enforcement in the House and Senate," *CRS Report for Congress*, 2005

Kogan, R., "The New Pay-As-You-Go Rul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07

[참고 자료 1] 상원의 PAYGO규칙 (2008회계연도의 예산결의안에 나타난 내용)

Sec. 201. PAY-AS-YOU GO POINT OF ORDER IN THE SENATE

(a) POINT OF ORDER. –

(1) IN GENERAL. – It shall not be in order in the Senate to consider any direct spending or revenue legislation that would increase the on-budget deficit or cause an on-budget deficit for either of the applicable time periods as measured in paragraphs (5) and (6).

(2) APPLICABLE TIME PERIODS. –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applicable time period" means either –

(A) the period of the current fiscal year, the budget year, and the ensuing 4 fiscal years following the budget year; or

(B) the period of the current fiscal year, the budget year, and the ensuing 9 fiscal years following the budget year.

(3) DIRECT-SPENDING LEGISLATION. –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nd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4), the term "direct-spending legislation" means any bill, joint resolution, amendment, motion, or conference report that affects direct spending as that term is defined by, and interpreted for purposes of,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4) EXCLUSION. –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s "direct-spending legislation" and "revenue legislation" do not include –

(A) any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or

(B) any provision of legislation that affects the full funding of, and continuation of, the deposit insurance guarantee commitment in effect on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

(5) BASELINE. – Estimates prepare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

(A) use the baseline surplus or deficit used for the most recently adopted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and

(B) be calculated under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b) through (d) of section 257 of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as in effect prior to September 30, 2002) for fiscal years beyond those covered by that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6) PRIOR SURPLUS. – If direct spending or revenue legislation increases the on-budget

deficit or causes an on–budget deficit when taken individually, it must also increase the on budget deficit or cause an on–budget deficit when taken together with all direct spending and revenue legislation enac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alendar year not accounted for in the baseline under paragraph (5)(A), except that direct spending or revenue effects resulting in net deficit reduction enacted in any bill pursuant to a reconciliation instruction since the beginning of that same calendar year shall never be available on the pay–as–you–go ledger and shall be dedicated only for deficit reduction.

(b) SUPERMAJORITY WAIVER AND APPEALS. –

(1) WAIVER. – This section may be waived or suspended in the Senate only by the affirmative vote of three–fifths of the Members, duly chosen and sworn.

(2) APPEALS. – Appeals in the Senate from the decisions of the Chair relating to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shall be limited to 1 hour, to be equally divided between, and controlled by, the appellant and the manager of the bill or joint resolution, as the case may be. An affirmative vote of three–fifths of the Members of the Senate, duly chosen and sworn, shall be required to sustain an appeal of the ruling of the Chair on a point of order raised under this section.

(c) DETERMINATION OF BUDGET LEVELS.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levels of new budget authority, outlays, and revenues for a fiscal year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estimates made by the Senate Committee on the Budget.

(d) SUNSET. – This section shall expire on September 30, 2017.

(e) REPEAL. – In the Senate, section 505 of H.Con.Res. 95 (108th Congress), the fiscal year 2004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shall no longer apply.

[참고 자료 2] '2010 PAYGO Report'의 예산점검표(scorecards) 예시

STATUTORY ESTIMATES OF PAY-AS-YOU-GO LEGISLATION *
(in millions of dollars; positive amounts portray net increases in deficits and negative amounts portray net decreases in deficits)

* Uses Congressional estimates referenced in enacted legislation or OMB estimates if there are no references to the Congressional estimates.

전체법안 효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0-15	2010-20
PART I:													
Total PAYGO legislation enacted in the 2nd session of the 111th Congress since February 12, 2010													
Net impact on the on-budget deficit	39,778	627,227	354,771	25,895	-86,874	-61,375	31,976	-5,223	-16,772	-45,275	-44,035	899,419	820,093
Less:													
Impact of CLASS Act	0	-3,700	-6,400	-8,700	-9,900	-11,200	-9,600	-8,600	-7,500	-6,800	-6,200	-39,900	-78,600
Current policy adjustment	5,863	160,328	217,430	54,916	-1,536	-604	-885	-879	-507	-255	-120	436,396	433,750
Emergency requirements	29,624	356,234	165,990	32,616	-10,220	-4,177	-7,209	-7,529	-5,162	-3,112	-1,917	570,067	545,139
Repeal of prior emergency requirement	-13	-111	-216	-666	-6,207	-4,757	-2,781	-1,292	-438	0	0	-11,970	-16,481
Net PAYGO impact	4,304	114,477	-22,034	-52,270	-59,010	-40,638	52,451	13,077	-3,166	-35,108	-35,798	-55,173	-63,714
Five-year PAYGO scorecard, this session		**-11,035**	**-11,035**	**-11,035**	**-11,035**	**-11,035**							
Balances from prior sessions		**0**	**0**	**0**	**0**	**0**							
Total, five-year PAYGO scorecard		**-11,035**	**-11,035**	**-11,035**	**-11,035**	**-11,035**							
Ten-year PAYGO scorecard, this session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Balances from prior sessions		**0**	**0**	**0**	**0**	**0**	**0**	**0**	**0**	**0**	**0**		
Total, ten-year PAYGO scorecard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6,371**		
Potential Sequestration, end of session		0											

일률삭감 필요액

개별법안 효과

PART II:													
All PAYGO legislation enacted since February 12, 2010													
1 P.L. 111-142	Social Security Disability Applicants' Access to Professional Representation Act of 2010												
Enacted 02-27-2010	Net PAYGO impact	-3	-6	-6	-6	-6	-6	-6	-6	-6	-6	-6	-33	-63
H.R. 4532													
Estimate: OMB	Five-year PAYGO scorecard		-7	-7	-7	-7	-7							
	Ten-year PAYGO scorecard		-6	-6	-6	-6	-6	-6	-6	-6	-6	-6		
2 P.L. 111-144	Temporary Extension Act of 2010													
Enacted 03-02-2010	Net impact on the on-budget deficit	8,605	750	286	275	195	105	75	10	0	0	0	10,216	10,301
H.R. 4691	Less:													
Estimate: Congress	Current policy adjustment	1,040	0	0	0	0	0	0	0	0	0	0	1,040	1,040
	Emergency requirement	7,565	750	286	275	195	105	75	10	0	0	0	9,176	9,261
	Net PAYGO impact	0	0	0	0	0	0	0	0	0	0	0	0	0
	Five-year PAYGO scorecard		0	0	0	0	0							
	Ten-year PAYGO scorecard		0	0	0	0	0	0	0	0	0	0		
3 P.L. 111-145	Capitol Police Administrative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2009/Travel Promotion Act of 2009													
Enacted 03-04-2010	Net PAYGO impact	6	-65	-54	-53	-60	48	0	0	0	0	0	-178	-178
H.R. 1299														
Estimate: OMB	Five-year PAYGO scorecard		-36	-36	-36	-36	-36							
	Ten-year PAYGO scorecard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개요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란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사업수행부처가 재정이 투여된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처의 자율평가 결과를 재정당국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적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 도입배경

□ 2003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이 많은 26개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목표·지표 중심의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개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그 성과평가의 결과를 개별사업의 예산 편성과 연계시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노정

□ 2004년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부처의 자율적 예산운용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산환류 강화 필요

○ 부처 스스로 사업별 자율평가를 통해 사업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평가결과를 자율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기획재정부는 부처 자율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세출구조조정 등에 활용

□ 2006년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시행으로 재정사업부문에 대한 평가수단 마련 필요

*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 (jweon@kipf.re.kr)

2) 제도의 주요내용

□ 자율평가제도는 정부업무기본법상 평가 대상인 48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상

○ 평가대상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200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단위사업이 평가대상이나, 인건비 등 경상경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교부금 등), 정부내부지출, 예비비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별 평가 제외 기준(예시) 〉

[일반재정사업]

인건비, 기본경비, 기금운영비, 국제기구분담금,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정보화 사업]

단순 유지보수비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의 사업 (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 · 교체, 시스템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통신회선료,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등)

※ 구체적인 평가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

□ 평가방법

○ 부처별로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평가

○ 기획재정부가 사업별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사전 제시하고,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

○ 기획재정부가 부처의 평가결과 점검

□ 평가항목은 13개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1~3개 추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유형은 SOC, 시설 · 장비구매, 출자 · 출연,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조사 · 교육 등 기타사업의 7개로 분류함

〈표 1-Ⅱ-4〉 13개 공통질문

(가중치)

계획 (30)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5.0
	1-2. 다른 사업과 중복 · 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5.0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5.0
성과계획 (15)	1-4.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5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7.5
집행 (20)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5.0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5.0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5.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5.0
산출/결과, 활용 (50)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5.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0.0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10.0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 방식의 보완 · 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 기획재정부는 지침을 통해 사전에 항목별 질문에 대한 답변기준을 제시하고, 부처는 항목별로 "예 / 아니요"로 답변

○ "예"라고 답변 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단, 성과달성도, 고객만족도 항목은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의 4등급으로 나누어 답변

□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로 4단계로 등급화

○ 85점 이상은 '우수', 70~84점은 '다소우수', 50~69점은 '보통', 50점 미만은 '미흡'

○ 2009년 평가부터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미흡'(50점 미만)의 5단계로 세분화

○ 평가결과는 예산편성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원칙적으로 '미흡', '매우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10% 예산 삭감

3) 주요 추진일정 및 절차

□ 평가지침 교육 ('10.12월~'11.1월초)

○ 각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업무 담당자 및 재정사업 담당자대상 교육

□ 각 부처 자체 평가결과 제출 (3월)

□ 기획재정부 확인 · 점검 (4~6월초)

□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부처 통보 (7~8월)

□ 단, 위의 일정은 예산 심의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그림 1-Ⅱ-1]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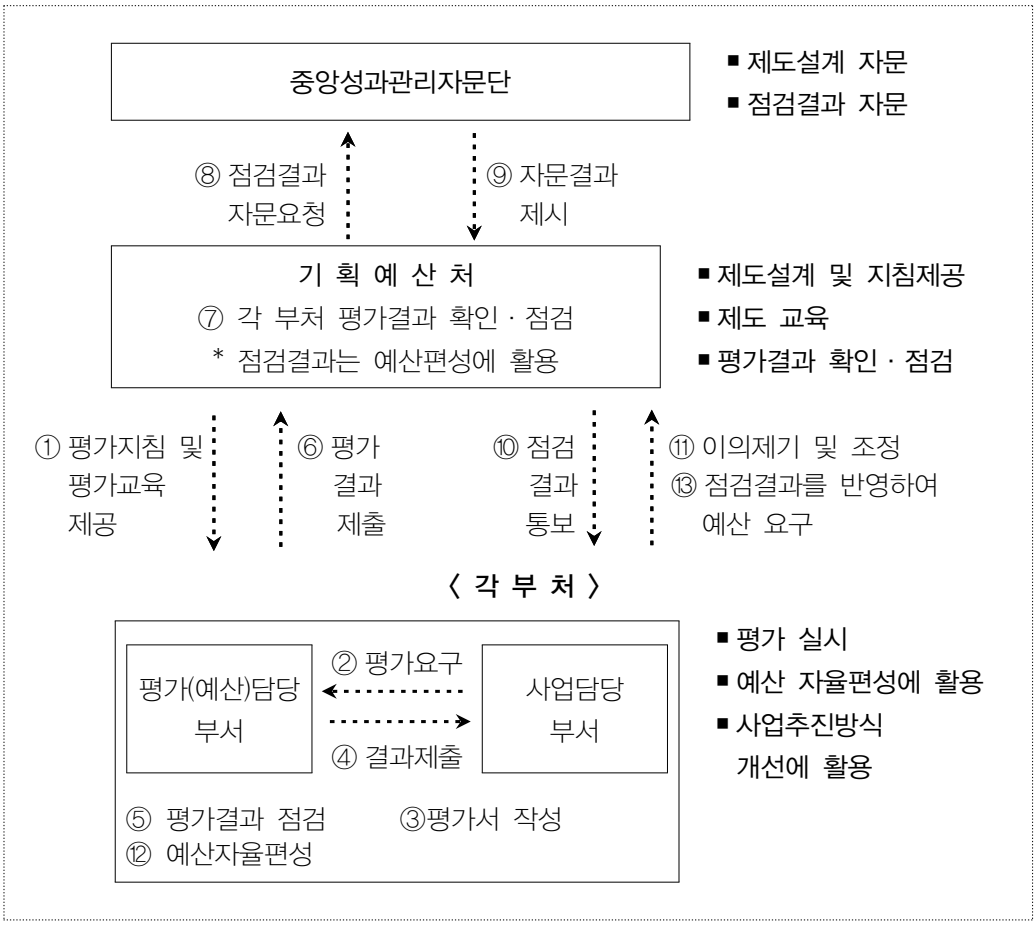

4) 평가결과 활용

□ 평가대상을 일반사업과 정책(의무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운영

○ 의무지출 사업의 예로는 법정 의무지출사업(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및 국정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정사업 등이 있음

○ '매우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 '미흡' 이하 등급사업에 대해서는

– 정책(의무지출)사업이 '미흡'일 경우 사업비 삭감 대신 사업내 또는 사업관련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삭감

– 그 외,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10% 삭감원칙'을 적용하되 '미흡' 원인에 따라 패널티 적용 차별화

○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 이하를 받아 수정평가를 하는 경우,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연속 삭감

5)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변경사항

□ 각 부처별 전체 재정사업 중 1/3을 선정하여 평가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각 부처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1/3을 선정, 해당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과제를 모두 평가

□ 지표 수 및 배점

○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공통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고 배점을 조정

– 지표 수 : 12개 공통지표에서 10개 공통지표로 축소 조정

○ 계획:집행:성과 배점을 30:20:50에서 20:30:50으로 변경

– 성과지표 적절성 확인 등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사전검증이 강화되어 계획단계 평가지표 비중 축소 (30 → 20점)

– 집행단계 평가배점 상향 (20 → 30점)

〈표 1-Ⅱ-5〉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구 분		평가 지표
계획 (20)	사업 계획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 유형별 · 부문별 특성지표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3-3.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 유형별 특성지표
성과/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평가 방식

○ 201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예', '아니오'의 2단계 평가였으나, 2011년 평가부터는 일부 지표에 대해 부분배점을 도입함

□ 부처 자체평가의 상대평가제 도입

○ 부처의 관대화 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평가 시부터 부처 자체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

–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

– 단, 평가사업 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상대평가제 적용 제외

○ 기존의 감점제도(자체평가결과와 기획재정부 확인 · 점검 결과 간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 감점)는 감점 폭을 확대(△2점 → △3점)하여 운영

□ 평가결과 활용

○ 기존의 획일적인 10% 삭감원칙을 개선하여 사업유형별, 미흡유형별로 페널티 다

양화

○ 일반사업의 경우 기존과 같이 '미흡'사업에 대해 차년도 사업예산 10% 삭감원칙을 적용

○ 정책사업, 의무지출사업이 '미흡'일 경우 사업비 삭감 대신 사업 내 또는 사업관련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삭감

○ 미흡 원인을 평가단계에 따라 총 4~5개로 유형화하여 페널티 적용 차별화

○ 우수사업 담당자,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

□ 2009~2010년 기간 동안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으로서 평가주기 미도래 시에도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개선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수정평가 가능

○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결정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표 1-Ⅱ-6〉은 2005~2008년까지의 총점 및 단계별 점수현황을 나타낸 것임

〈표 1-Ⅱ-6〉 사업단계별 점수 현황

연도	사업수	총점	계획(30)		집행(20)	성과(50)
			사업계획(15)	성과계획(15)		
2005	555	60.1	13.8	9.3	15.1	21.9
2006	577	59.9	14.3	8.7	14.7	22.2
2007	585	66.0	14.2	9.2	15.5	27.1
2008	384	66.6	14.2	8.2	14.4	29.5

□ 총점을 보면, 2005~2006년에는 약 60점이던 총점이 2007~2008년에는 약 66점으로 약 6점 정도 상승

○ 이는 각 부처가 점차 평가제도에 익숙해지고 평가에 대한 준비가 충실해지면서 각 단계별 평균점수의 합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 각 사업단계별 점수를 보면,

○ 총 30점 만점의 계획단계 평가에서 22.4~24.5점 사이의 점수를 얻고 있는데,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음

–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총 15점 만점에서 13.8~14.3점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는 총 15점 만점에서 8.2~9.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13.6~15.5점 사이의 점수를 얻고 있는데, 연도별로 집행단계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비해 점수가 낮아지고 있음.

○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21.9~29.5점으로,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점수가 계획단계,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단, 성과·환류단계의 평균점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초기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짐

□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부처의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오고, 나아가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강화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사업을 평가해 효율적인 사업은 예산증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율성이 아주 낮은 사업은 예산을 감소하거나 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이 같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프로그램예산구조는 2005년 4대 재정개혁 시, 재정성과제도와 동시에 도입되어 프로그램예산단위와 성과관리단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성과관리 단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실상 성과와 예산의 직접적 연계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

□ 각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 및 성과관리 범위를 실 · 국별 프로그램 단위로 관리하며, 담당 실 · 국장 1인을 프로그램 장으로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책임을 명시

○ 또한 성과관리 단위와 예산관리 단위를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에서 일치시켜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를 통해 책임성 확보

□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해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협의하여 관리하되, 단위사업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 · 집행

○ 이때, 각 부처는 단위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 · 집행하되, 프로그램의 성과제고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

○ 조직단위, 프로그램 단위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각각에 대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책임성 또한 확보 가능

[그림 1-Ⅱ-2]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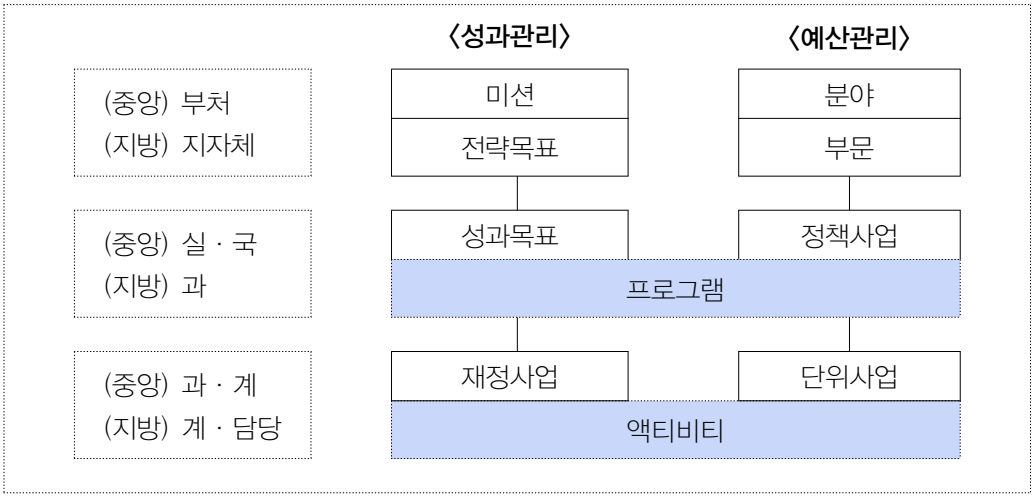

자료: 윤영진, 2004, p. 45.

□ 성과관리와 관련한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정비 미흡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프로그램'은 국가정책 및 조직성과와 연계시켜 설정할 필요

–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방향 또는 전략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사업단위로 구조화할 필요

○ 또한 성과관리를 통한 각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 단위와 예산편성 · 집행 단위를 각 조직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각 단계에서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상이한 조직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경우 조직별 성과관리 곤란

○ 따라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은 반드시 단일 관리자에 의해 총괄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

[그림 1-Ⅱ-3] 현재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제도 체계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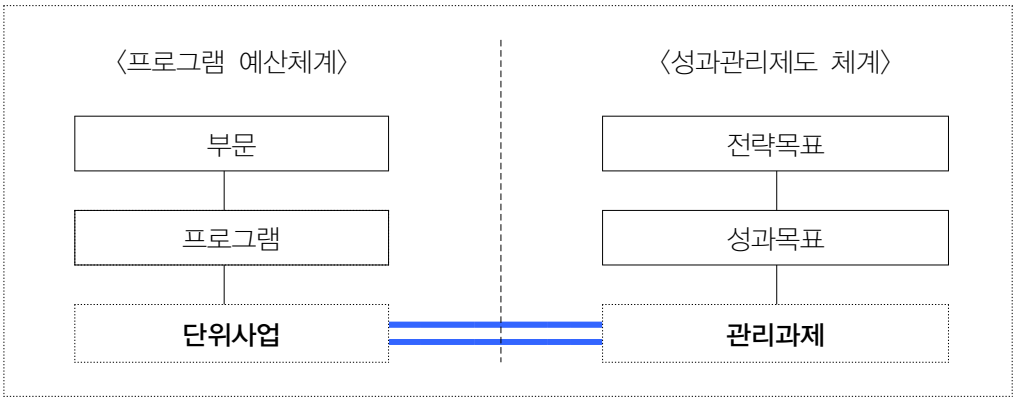

〈참고문헌〉

박노욱 · 원종학 · 김진 · 박명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윤영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4

Ⅲ 국내외 보고서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IMF, Fiscal Monitor (2011년 4월 발표)**

□ 2010년,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약 1%p 감소한 7.7%를 기록하였으며, 개도국도 전년보다 약 1%p 감소한 3.8%를 기록하는 등 재정상황이 개선되었음

□ 2011년 선진국의 재정계획은 국가별로 상이함

○ 재정긴축 정도는 각 국가의 시장압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2010년 12월 확장 재정정책을 승인함에 따라 감세규모를 확대하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unemployment benefit)

– 따라서, 2011년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10.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eklee@kipf.re.kr)

** 김정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kimjw@kipf.re.kr) 요약

〈표 1-Ⅲ-1〉 2008-2012년 각국 재정적자

(단위: GDP 대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적자					
선진국	-3.6	-8.8	-7.7	-7.1	-5.2
미국	-6.5	-12.7	-10.6	-10.8	-7.5
유로	-2.1	-6.4	-6.0	-4.4	-3.6
프랑스	-3.3	-7.5	-7.0	-5.8	-4.9
독일	0.1	-3.0	-3.3	-2.3	-1.5
이탈리아	-2.7	-5.3	-4.5	-4.3	-3.5
스페인	-4.2	-11.1	-9.2	-6.2	-5.6
일본	-4.2	-10.3	-9.5	-10.0	-8.4
영국	-4.9	-10.3	-10.4	-8.6	-6.9
캐나다	0.1	-5.5	-5.5	-4.6	-2.8
개도국	-0.6	-4.9	-3.8	-2.6	-2.2
중국	-0.4	-3.1	-2.6	-1.6	-0.9
인도	-8.0	-10.0	-9.4	-8.3	-7.5
러시아	4.9	-6.3	-3.6	-1.6	-1.7

자료: IMF 추정치 및 예측치

○ 반면, 유럽은 대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유로지역의 재정적자는 크게 감소할 전망

- 독일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할 전망이고, 이탈리아는 임금동결, 프랑스는 연금개혁, 스페인은 연금개혁 및 대규모의 지출감소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대대적인 재정적자 감소를 전망하고 있음
- 영국은 재량지출 삭감 위주의 정책과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선진국들 중 재정적자를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조기집행계획(front-loaded plan)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

○ 일본의 경우, 대지진 이전에는 재정정책을 중립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대지진 발생 이후에 추경을 편성하여 지진피해 복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복구비용 조달을 위해 세수를 증대할 것인지 국채발행 규모를 증가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 논의 중

□ 2011년 개도국의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1.2%가 감소할 전망으로 재정건전화는 가속화될 예정

○ 인도의 경우, 임금 · 연금 · 금리제한으로 재정수입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예정

○ 러시아의 경우, 유가상승과 재량적 재정건전화 조치(discretionary consolidation measures)로 재정수지는 개선될 전망

□ 재정건전화 노력은 2012년까지 계속되다가 점차 완화될 예정이나, 재정적자규모는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 선진국의 경우, 2012년 대대적인 재정조정이 논의중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2%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재정적자 감축은 2013년 그 규모가 감소하여 2014년 종료할 예정인데, 재정적자는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위기 이전 재정적자는 GDP 대비 2%에 불과했지만 2016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로 증가할 전망

– 부채비율 또한 위기 이전 GDP 대비 71%에서 2016년에는 107.3%까지 증가할 전망

○ 반면 개도국의 재정적자는 2012년 GDP 대비 0.5%p 감소할 전망이며, 2016년 평균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로 감소하여 위기이전 수치를 달성할 예정

– 부채비율의 경우, 2016년 GDP 대비 30.1%까지 감소하여 위기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전망

〈표 1-Ⅲ-2〉 중기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2000-07	2007	2016
재정적자			
선진국	-2.0	-1.1	-3.5
개도국	-2.1	-0.1	-1.2
정부부채			
선진국	71.0	73.1	107.3
개도국	43.1	36.0	30.1

자료: IMF 추정치 및 예측치

□ 선진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복지지출로 인해 장기적 재정조정(Longer-Term Adjustmen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평균적으로 선진국의 경기변동조정 기초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primary balance)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GDP 대비 8%가 개선되어야 하나, 고령화 관련 지출(age-related spending)을 포함하면 2010년과 2030년 사이 GDP 대비 12%로 증가할 전망임

○ 선진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재정수지는 향후 10년 동안 GDP 대비 5% 이상 개선되어야 함

- 이 중 일본, 아일랜드, 미국, 그리스의 경우는 GDP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독일은 계획적인 재정조정으로 인해 2014년까지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의 경기변동조정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3% 개선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그 수치가 낮음

〈표 1-Ⅲ-3〉 선진국의 필요한 재정적자 감축분

(단위: GDP 대비 %)

	국가채무	기초 재정수지	경기변동 조정 기초 재정수지	2020-30년 경기변동조정 재정수지	2010-20년 필요한 재정적자 감축분	2010-30년 필요한 재정적자 감축분 (고령화 관련 지출 포함)
호주	22.3	-4.3	-4.2	0.1	4.3	7.7
오스트리아	69.9	-1.9	-0.9	1.5	2.4	6.7
벨기에	97.1	-1.3	0.4	3.4	3.1	8.7
캐나다	84.0	-4.9	-3.4	0.9	4.4	7.9
체코	39.6	-3.9	-2.9	0.9	3.8	4.4
덴마크	44.3	-4.6	-3.2	0.9	4.2	6.2
에스토니아	6.6	-0.3	3.5	0.0	-3.5	-3.1
핀란드	48.4	-3.2	-0.2	0.7	0.9	6.6
프랑스	81.8	-4.8	-3.2	3.0	6.2	8.4
독일	80.0	-1.1	-0.3	1.9	2.2	4.4
그리스	142.0	-3.2	-3.1	7.4	10.5	14.0
홍콩	4.6	4.9	5.0	-1.6	-6.6	…
아이슬란드	96.6	-2.5	5.0	2.2	-2.8	2.4
아일랜드	96.1	-29.7	-6.1	6.3	12.4	14.4
이스라엘	77.9	-0.8	-0.8	0.9	1.7	…
이탈리아	119.0	-0.3	1.4	4.6	3.2	4.6
일본	220.3	-8.4	-6.7	6.6	13.3	14.0
한국	30.9	3.6	3.7	-0.7	-4.4	0.5
네덜란드	63.7	-3.7	-2.7	1.4	4.2	9.5
뉴질랜드	31.6	-4.9	-3.9	0.5	4.4	9.4
노르웨이	54.3	8.4	8.9	10.0	1.1	5.9
포르투갈	83.3	-4.6	-3.1	3.3	6.4	10.6
슬로바키아	42.0	-7.0	-6.1	0.9	7.0	8.9
슬로베니아	37.2	-4.0	-2.7	1.0	3.7	7.7
스페인	60.1	-7.8	-6.3	1.9	8.2	10.3
스웨덴	39.6	-1.2	0.0	0.3	0.3	0.6
스위스	55.0	0.7	0.8	0.2	-0.6	…
영국	77.2	-7.8	-5.9	3.4	9.3	13.5
미국	91.6	-8.9	-6.2	5.1	11.3	17.5
평균	96.6	-5.9	-4.0	3.8	7.8	11.8
G-20	102.9	-6.4	-4.5	4.1	8.6	12.8

자료: IMF 추정치 및 예측치

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년 4월 발표)

□ 세계 경기회복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데 반해, 실업률은 아직 높은 상황

○ 2011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4%, 2012년은 4.5%로 2010년 10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

– 2010년 아시아는 비교적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미국과 유로지역은 1990년대 초 경기불황과 마찬가지로 약한 회복세를 보여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3%에 그침

– 한국의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6%로 지난 가을 전망치 4.5%보다 0.1%p 감소

〈표 1–Ⅲ–4〉 경제성장률 전망

	Year over Year						Q4 over Q4		
			Projections		Difference from January 2011 WEO Projections		Estimates	Projections	
	2009	2010	2011	2012	2011	2012	2010	2011	2012
World Output[1]	**–0.5**	**5.0**	**4.4**	**4.5**	**0.0**	**0.0**	**4.7**	**4.5**	**4.4**
Advanced Economies	**–3.4**	**3.0**	**2.4**	**2.6**	**–0.1**	**0.1**	**2.7**	**2.6**	**2.5**
United States	–2.6	2.8	2.8	2.9	–0.2	0.2	2.7	3.0	2.7
Euro Area[2]	–4.1	1.7	1.6	1.8	0.1	0.1	2.0	1.5	2.1
Germany	–4.7	3.5	2.5	2.1	0.3	0.1	4.0	1.9	2.5
France	–2.5	1.5	1.6	1.8	0.0	0.0	1.5	1.7	2.0
Italy	–5.2	1.3	1.1	1.3	0.1	0.0	1.5	1.3	1.2
Spain	–3.7	–0.1	0.8	1.6	0.2	0.1	0.6	1.1	1.9
Japan	–6.3	3.9	1.4	2.1	–0.2	0.3	2.5	2.5	1.3
United Kingdom	–4.9	1.3	1.7	2.3	–0.3	0.0	1.5	2.2	2.4
Canada	–2.5	3.1	2.8	2.6	0.5	–0.1	3.2	2.8	2.5
Other Advanced Economies[3]	–1.2	5.7	3.9	3.8	0.1	0.1	4.8	4.3	3.7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0.8	8.4	4.9	4.5	0.2	0.2	6.1	5.9	3.8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4]	**2.7**	**7.3**	**6.5**	**6.5**	**0.0**	**0.0**	**7.4**	**6.9**	**6.9**
Central and Eastern Europe	–3.6	4.2	3.7	4.0	0.1	0.0	3.7	3.7	4.0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6.4	4.6	5.0	4.7	0.3	0.1	4.7	4.5	3.7
Russia	–7.8	4.0	4.8	4.5	0.3	0.1	4.7	4.3	3.5
Excluding Russia	–3.1	6.0	5.5	5.1	0.4	–0.1	. . .	. . .	. . .
Developing Asia	7.2	9.5	8.4	8.4	0.0	0.0	9.2	8.4	8.5
China	9.2	10.3	9.6	9.5	0.0	0.0	9.8	9.4	9.5
India	6.8	10.4	8.2	7.8	–0.2	–0.2	9.7	7.7	8.0
ASEAN-5[5]	1.7	6.9	5.4	5.7	–0.1	0.0	6.1	5.4	5.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7	6.1	4.7	4.2	0.4	0.1	5.2	5.0	4.6
Brazil	–0.6	7.5	4.5	4.1	0.0	0.0	5.0	5.0	4.0
Mexico	–6.1	5.5	4.6	4.0	0.4	–0.8	4.4	4.4	3.7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8	3.8	4.1	4.2	–0.5	–0.5	. . .	. . .	. . .
Sub-Saharan Africa	2.8	5.0	5.5	5.9	0.0	0.1	. . .	. . .	. . .

○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

– 미국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9%, 10%이며, 미국과 스페인의 실업률이 위기 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

[그림 1-Ⅲ-1]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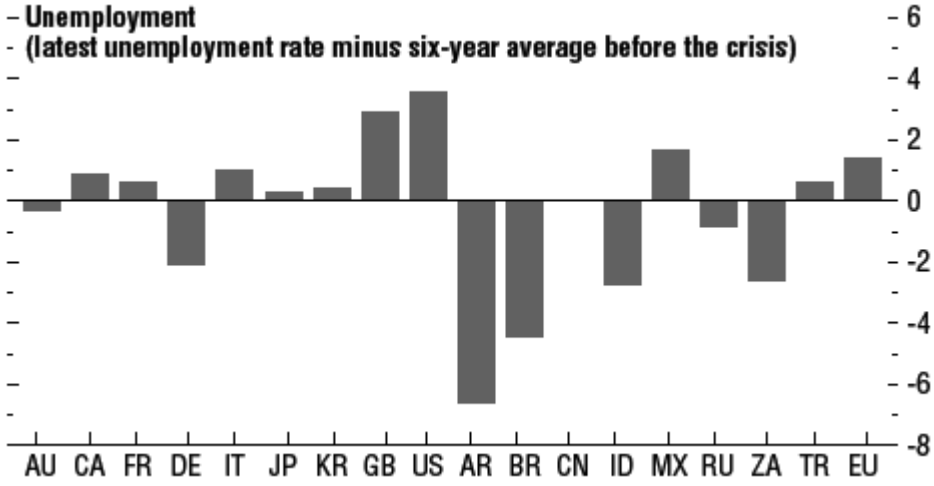

- 금융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년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유가상승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시장의 신뢰 상승 등으로 더블딥의 위험은 줄어들고 있음

□ 선진국들은 2030년까지 높은 부채수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재정건전화에 착수하였으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재정건전화 기제가 필요

○ 미국은 재정건전화보다는 고용과 성장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2011년 재정적자가 기존 0.9%(GDP 대비) 감축이 아니라 0.6% 증가가 될 예정

- 부채수준도 안정화되지 않고 2016년 GDP 대비 110%에 이를 전망
- 재량적 지출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화도 병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과 연금개혁 등 좀 더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

○ 일본은 새로운 경기부양책과 대지진 복구작업으로 인해 재정긴축이 좀 더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유럽은 올해 예산안에 따라 재정적자를 GDP 대비 1% 가량 감축할 전망이며, 2013년

까지 GDP 대비 3% 재정적자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해 재정적자 감축은 영국이 1.75%로 가장 크게 시행할 계획이며, 2013년 재정적자 3% 수준은 독일만 유일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선진국들은 포괄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을 조기집행을 하거나 강력한 재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몇 개국(캐나다, 독일, 영국)을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다. IMF, "Macro-Fiscal Implications of Health Care Reform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10.12)

□ 전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공의료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간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

[그림 1-Ⅲ-2] 민간, 공공, 총의료비 지출 추이(1970~2008)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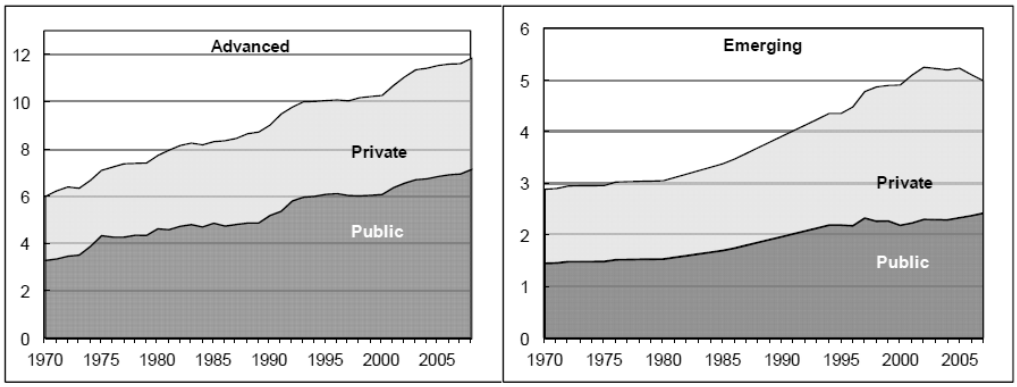

Sources: OECD Health Database, WHO, Sivard (1974–96),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Average spending is weighted on the basis of GDP at Purchasing Power Parity. For advanced economies without 2008 data (five countries), 2006 or 2007 data were used. The final year for spending data for the emerging economies is 2007.

○ 1970년 이래 총의료비지출은 GDP 대비 6%→12%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공공의료가 2/3를 차지 (공공의료지출 비중 55%→60%로 증가)

○ 선진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추세

- 1970-75년: 공공보험 적용 인구 확대 (공공의료비 GDP 대비 1%p 증가)
- 1975-90년: 비용 통제 (공공의료비 GDP 대비 1%p보다 적게 증가)
- 1990년대 초반: 공공의료비 증가
- 1990년대 후반: 비용 통제 (유럽과 미국 중심)
- 2000년대: 비용 다시 증가 (평균 GDP 대비 2%p 증가하여 2008년까지 평균 공공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까지 증가)

○ 최근으로 올수록 거의 모든 나라들의 공공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며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그 편차가 적음

- 2000년대 공공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1%p 이상 증가한 국가: 캐나다, 덴마트,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
- 2000년대 공공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0.2%p에 불과한 국가: 체코, 독일, 노르웨이

○ 이러한 공공의료비 지출 수렴현상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 제도를 본받아 공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것에 기인 (imitation effect)

○ 선진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 원인

- 수요적 원인: 소득 증가, 고령화
- 공급적 요인: 의료기술 발달, Baumal 효과(의료서비스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임금 증가율보다 낮아 단위당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현상)
- 기타: 보건정책

○ 선진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의 구성비

- 1/4은 고령화(aging)에 기인
- 3/4은 초과비용증가율(Excess Cost Growth: ECG)에 기인 (소득수준 향상, 의학기술 발달, Baumal 효과, 보건정책 등 비인구학적 요소)

○ 합의된 대로 2030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까지 낮추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연평균 8%p씩 낮추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

□ 개도국은 공공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증가세가 크지 않음

○ 1971-1995년, 공공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대까지 증가(연평균 0.5%p씩)하였고, 1995년 이후 공공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p씩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개도국의 경우, 공공의료비 지출 규모의 국가간 차이가 큰데, 유럽 개도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출 증가세가 아시아 국가들보다 큼

- 1995년 이후 공공의료비 지출이 크게(GDP 대비 1~1.5%p) 증가한 국가: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터키
- 1995년 이후 공공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감소한 국가: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 2000년 이후 공공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0.5%p 이상 증가한 국가: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폴란드, 태국, 우크라이나

○ GDP 대비 수입 증가에 비해,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개도국의 우선순위가 비의료 부문에 있고, 질병의 종류가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

- 2000~2007년 GDP 대비 세입은 3.5%p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의료비 지출은 0.5p 증가에 그침
- 보건보다는 교육 부문에 투자가 높음
- 선진국과는 달리 만성질환보다는 아직 전염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낮음

〈표 1-Ⅲ-5〉 선진국의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1960~2008)

(단위: GDP 대비 %)

	1960	1970	1980	1990	2000	2007	2008	Changes (Percentage points) [1]			
								1960-2008	1970-2008	1980-2008	1990-2008
Australia	1.8	3.0	3.8	4.4	5.4	5.7	...	3.9	2.7	2.0	1.3
Austria	3.5	3.9	6.1	6.1	7.6	7.9	8.1	4.5	4.2	2.0	1.9
Belgium	...	...	...	6.2	6.5	7.3	7.4	...	...	...	1.3
Canada	2.4	4.9	5.1	6.3	6.2	7.1	7.3	4.9	2.4	2.2	0.9
Czech Republic	...	...	...	3.9	5.9	5.8	5.9	...	...	...	1.9
Denmark	...	6.9	8.1	7.2	7.1	8.2	...	...	...	1.4	0.1	1.1
Finland	1.7	3.3	4.1	5.1	5.1	6.1	6.2	4.5	2.9	2.2	1.1
France	2.8	4.7	6.5	7.4	8.0	8.6	8.7	5.9	4.0	2.2	1.3
Germany	...	4.4	6.6	6.3	8.2	8.0	8.1	...	3.7	1.5	1.8
Greece	...	2.3	3.3	3.5	4.7	5.8	...	...	3.5	2.6	2.3
Iceland	2.0	2.8	5.1	6.2	7.1	7.5	7.6	5.5	4.7	2.5	1.3
Ireland	3.0	4.5	6.7	4.4	4.6	5.8	6.7	3.7	2.2	0.0	2.4
Italy	...	...	...	6.1	5.8	6.6	7.0	...	...	...	0.9
Japan	1.8	3.3	4.8	4.7	6.2	6.6	...	4.8	3.4	1.9	1.9
Korea	...	...	0.8	1.5	2.2	3.5	3.6	...	...	2.8	2.1
Luxembourg	...	2.6	4.6	4.7	5.2	6.6	...	...	4.0	2.0	1.8
Netherlands	...	4.2	5.3	5.5	5.2	7.3	7.4	...	3.2	2.2	1.9
New Zealand	...	4.2	5.2	5.7	6.0	7.2	7.9	...	3.7	2.7	2.2
Norway	2.4	4.3	6.3	6.7	6.9	7.5	7.2	4.8	2.9	0.9	0.4
Portugal	...	1.6	3.7	4.1	6.4	7.1	...	...	5.6	3.4	3.0
Slovak Republic	...	...	...	...	4.9	5.2	5.4	...	...	...	...
Slovenia	...	...	...	...	6.1	5.6	6.0	...	...	...	...
Spain	1.0	2.6	4.8	5.9	5.8	6.1	6.5	5.5	3.9	1.7	0.6
Sweden	...	5.9	8.3	7.5	7.2	7.4	7.7	...	1.8	-0.7	0.2
Switzerland	...	...	...	4.0	5.6	6.3	6.3	...	...	...	2.3
United Kingdom	3.1	3.6	4.6	4.6	5.6	6.9	7.2	4.1	3.5	2.5	2.6
United States	1.2	2.6	3.7	4.8	5.8	7.1	7.4	6.2	4.9	3.8	2.7
Average											
Weighted	1.7	3.4	4.7	5.2	6.1	7.0	7.3	5.6	4.1	2.8	2.1
Unweighted	2.2	3.8	5.1	5.3	6.0	6.7	6.9	4.9	3.4	1.9	1.7

Sources: OECD Health Database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See text for a description of methodology for adjusting for structural breaks. See Appendix I text for a description of the data for 1970. For Luxembourg and Portugal data, 2007 refers to 2006. The averages for given years (e.g., 1960, 1970) reflect different sample sizes, and comparisons should thus be done with caution.

[1]For comparisons of changes up to 2008, the most recent year with available data are used (in some cases 2007).

〈표 1-Ⅲ-6〉 공공 의료비 지출 전망(2010~50)

(단위: GDP 대비 %)

	Baseline Projections									Change, 2010-2030		
Country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Baseline	Optimistic	Pessimistic
Advanced economies:												
Australia	6.0	6.4	6.9	7.5	8.1	8.7	9.3	9.8	10.3	2.1	1.4	3.0
Austria	8.3	9.1	9.8	10.7	11.6	12.5	13.5	14.4	15.2	3.2	2.2	4.4
Belgium	7.6	8.1	8.5	9.1	9.6	10.2	10.8	11.3	11.7	2.0	1.1	3.0
Canada	7.4	7.9	8.4	8.9	9.4	9.9	10.4	10.8	11.1	2.0	1.1	3.0
Czech Republic	5.8	6.0	6.1	6.3	6.4	6.6	6.7	6.8	6.8	0.6	0.0	1.3
Denmark	8.6	8.8	9.0	9.2	9.4	9.5	9.6	9.6	9.6	0.8	-0.1	1.8
Finland	6.4	7.0	7.6	8.3	8.9	9.5	10.1	10.7	11.2	2.5	1.6	3.4
France	9.0	9.4	9.7	10.1	10.5	10.8	11.1	11.4	11.6	1.5	0.5	2.6
Germany	8.1	8.4	8.6	8.8	9.0	9.3	9.4	9.6	9.6	0.9	0.1	1.9
Greece	6.2	6.9	7.6	8.4	9.4	10.4	11.5	12.7	13.9	3.2	2.3	4.1
Iceland	7.8	8.4	9.1	9.9	10.9	12.0	13.0	14.1	15.2	3.2	2.1	4.3
Ireland	6.8	6.9	7.0	7.2	7.5	7.7	7.9	8.1	8.3	0.7	0.0	1.5
Italy	6.9	7.0	7.2	7.3	7.5	7.7	7.8	7.9	8.0	0.6	-0.1	1.4
Japan	6.8	7.1	7.3	7.6	7.8	7.9	8.0	8.1	8.2	1.0	0.2	1.8
Korea	3.9	4.5	5.2	6.1	7.1	8.2	9.5	10.9	12.3	3.2	2.6	4.0
Luxembourg	7.1	7.9	8.9	9.9	11.2	12.5	14.1	15.7	17.5	4.0	3.0	5.2
Netherlands	7.6	8.2	8.9	9.5	10.2	10.8	11.4	12.0	12.5	2.6	1.6	3.6
New Zealand	8.1	8.8	9.5	10.3	11.1	12.0	12.9	13.7	14.5	3.0	1.9	4.1
Norway	7.2	7.5	7.9	8.4	8.8	9.3	9.7	10.1	10.5	1.7	0.8	2.6
Portugal	7.6	8.4	9.2	10.1	11.1	12.2	13.4	14.7	15.9	3.5	2.5	4.6
Slovakia	5.5	5.7	6.0	6.3	6.7	7.0	7.3	7.6	7.9	1.2	0.5	1.9
Slovenia	6.1	6.3	6.5	6.6	6.8	7.0	7.2	7.3	7.3	0.7	0.1	1.5
Spain	6.6	6.9	7.3	7.7	8.2	8.7	9.3	9.7	10.1	1.6	0.8	2.4
Sweden	7.8	7.9	8.0	8.1	8.2	8.3	8.3	8.3	8.3	0.4	-0.4	1.3
Switzerland	6.6	7.4	8.4	9.4	10.5	11.7	13.0	14.3	15.6	3.9	2.9	4.9
United Kingdom	7.3	8.0	8.7	9.6	10.6	11.7	12.9	14.2	15.5	3.3	2.3	4.4
United States	7.6	8.6	9.8	11.2	12.7	14.2	15.7	17.3	18.9	5.1	3.9	6.4
Emerging economies:												
Argentina	5.1	5.4	5.8	6.2	6.6	7.1	7.7	8.2	8.9	1.5	0.9	2.2
Brazil	3.6	3.9	4.2	4.7	5.1	5.6	6.2	6.7	7.3	1.6	1.1	2.1
Bulgaria	4.2	4.5	4.8	5.2	5.6	6.0	6.5	6.9	7.4	1.3	0.8	1.9
China	1.9	2.1	2.3	2.5	2.8	3.1	3.3	3.6	3.9	0.8	0.6	1.1
Chile	3.7	4.1	4.5	4.9	5.3	5.8	6.2	6.7	7.2	1.5	1.1	2.1
Estonia	4.2	4.4	4.7	5.0	5.3	5.6	6.0	6.4	6.7	1.1	0.6	1.7
Hungary	5.3	5.6	6.0	6.4	6.9	7.3	7.8	8.3	8.9	1.6	0.9	2.3
India	1.1	1.2	1.2	1.3	1.5	1.6	1.7	1.9	2.0	0.4	0.2	0.5
Indonesia	1.2	1.3	1.4	1.5	1.7	1.8	2.0	2.1	2.3	0.5	0.3	0.6
Latvia	3.6	3.9	4.1	4.3	4.6	5.0	5.4	5.7	6.1	1.0	0.6	1.5
Lithuania	4.6	5.0	5.3	5.7	6.1	6.6	7.1	7.5	8.0	1.5	0.9	2.1
Malaysia	2.0	2.1	2.3	2.5	2.7	3.0	3.2	3.5	3.8	0.8	0.5	1.1
Mexico	2.7	2.9	3.2	3.5	3.8	4.2	4.6	5.0	5.4	1.1	0.8	1.5
Pakistan	0.8	0.9	0.9	1.0	1.1	1.1	1.2	1.3	1.4	0.2	0.1	0.3
Philippines	1.4	1.4	1.6	1.7	1.8	2.0	2.1	2.3	2.5	0.5	0.3	0.6
Poland	4.6	5.0	5.4	5.9	6.4	7.0	7.5	8.1	8.7	1.8	1.2	2.5
Romania	3.8	4.1	4.4	4.7	5.1	5.5	6.0	6.4	6.9	1.3	0.8	1.8
Russia	3.5	3.8	4.0	4.3	4.6	5.0	5.3	5.7	6.0	1.1	0.7	1.6
Saudi Arabia	2.7	3.0	3.2	3.5	3.8	4.1	4.5	4.9	5.4	1.0	0.7	1.4
South Africa	3.6	3.9	4.1	4.4	4.7	5.0	5.4	5.7	6.1	1.1	0.7	1.6
Thailand	2.8	3.0	3.3	3.6	3.9	4.3	4.6	4.9	5.2	1.1	0.8	1.5
Turkey	3.5	3.7	4.0	4.4	4.8	5.2	5.7	6.2	6.7	1.3	0.9	1.8
Ukraine	4.0	4.3	4.5	4.8	5.2	5.6	6.0	6.3	6.7	1.2	0.7	1.7
Average:	5.4	5.9	6.4	7.0	7.6	8.3	8.9	9.6	10.3	2.2	1.5	3.0
Advanced	7.3	7.9	8.7	9.5	10.4	11.2	12.1	13.0	13.9	3.0	2.1	4.1
Emerging	2.5	2.7	2.9	3.2	3.5	3.8	4.1	4.4	4.7	1.0	0.6	1.3

Sources: OECD Health Database, WHO,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The optimistic (pessimistic) scenario assumes excess cost growth that is 0.5 percentage points lower (higher) than in the baseline.

□ 선진국의 경우, 향후 20년동안(2030년까지) 공공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3%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 중 1/3은 고령화에 기인하고, 2/3는 초과지출증가율(ECG)에 기인 (의료기술, 소득, 보몰효과, 보건정책 등)

○ 2030년까지 미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5%p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을 전망

– 이는 2010년 의료보험 개혁 효과를 반영한 수치로, ECG 효과에 기인

○ 2030년까지 유럽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p 증가할 전망

– EC에서 발간하는 Aging Report에서는 의료기술 발달이 없다고 가정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0.75%p 증가 (의료기술 발달 가정시 3%p)

○ 선진국들의 의료개혁도 불구, 장기적으로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을 낮추지는 못할 전망

– 미국은 의료개혁(2010)을 통해 의료보장 인구 확대(2019년까지 총인구의 94%), 그러나 2030년까지 재정적자는 감축할 것으로 전망

• 지출증가 요인: 기존 병력(pre-existing condition)에 상관없이 커버리지 제공,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Medicaid 적용대상 확대 (빈곤선의 133%까지), 보험 구입에 세제혜택 및 보조금 제공 (빈곤선의 133%~400%에 있는 차상위계층)

• 지출감축 요인: Medicare 환자를 보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지불보상액을 낮추어 지출 감축 기대, 효과는 불분명

• 수입증가 요인: Medicare 재원인 고용세(payroll tax) 증가, 고가의 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세 부과

• 결과적으로, 2010-19년 연평균 GDP 대비 0.1%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2020-29년에는 연평균 GDP 대비 0.5%p 재정적자 감소 전망

– 유럽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독일), 지출 통제(영국), 공공부문 임금 삭감(유럽 다수국) 등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임

• 영국: 2011-15년 실질 의료지출 증가율을 누적 0.5%p로 목표를 하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지출을 GDP 대비 0.75%p 삭감(행정비용 45% 감축 등)해야 함

• 독일: 2010년 11월 국회에서 승인받은 개혁안에 보면, 2011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던 건강보험 기여금 인하 정책을 철회 (GDP 대비 0.4% 세입)

• 약제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감행하였으나 단기적인 효과만 있고, 장기적인 효과는 미비한 실정(원인 중 하나는 약가비 비중이 GDP 대비 15%에 불과하기 때문): 약제가격 인하(아일랜드, 영국), 처방 관행 강화(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림 1-Ⅲ-3] 선진국의 공공의료비지출 증가분(2011~2030)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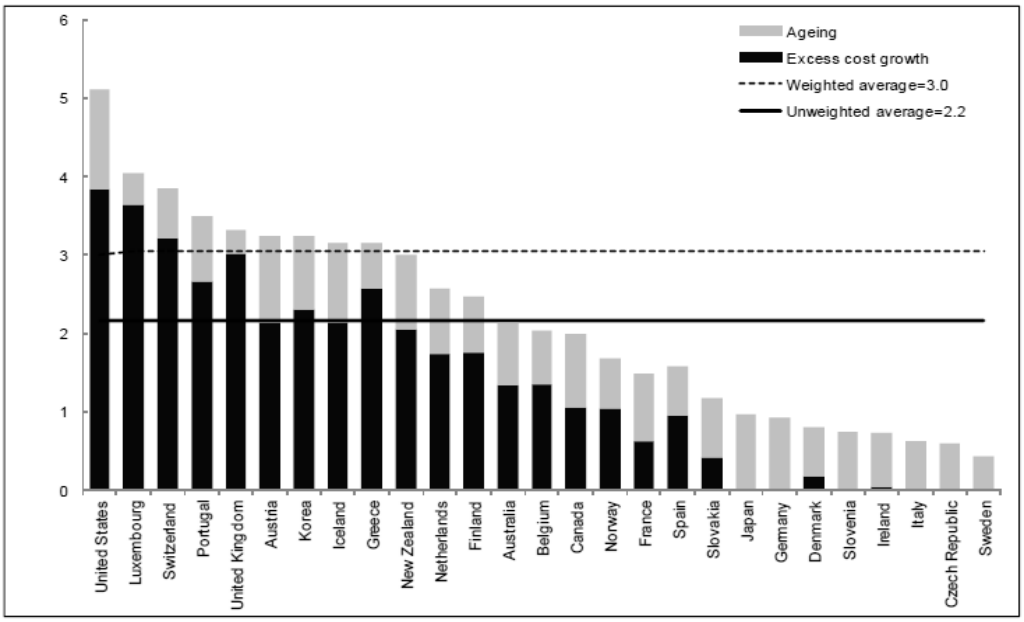

Sources: OECD Health Database, WHO,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Excess cost growth (ECG) is defined as the growth in public health spending in excess of GDP growth after controlling for aging (Appendix II). Weighted averages are based on GDP at Purchasing Power Parity.

□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가능한 정책적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 사례연구(case study), 이벤트 연구 분석(event study analysis), 계량경제학적 분석 틀을 사용하였음

○ 국가별 사례연구: GDP 대비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 감소 및 실질 지출 증가가 둔화된 8개의 성공사례

– 캐나다(70년대 말, 1990년대), 핀란드(1990년대), 독일(2000-07), 이탈리아(1990년

대), 네덜란드(80년대초, 90년대), 스웨덴(80년대, 90년대초), 영국(80년대), 미국(90년대)

○ 이벤트 분석: 특정 개혁 전후로 의료비지출 증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지 않은 나라는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

○ 계량 분석: OECD Health Data를 사용하여 의료시스템의 주요 변수들(민간부문 의료서비스 공급, 규제의 정도, 환자의 선택, 예산제약의 정도)이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의료개혁을 세가지 그룹으로 분류: 거시적 수준의 통제(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제약), 미시적 수준의 개혁(효율성 개선을 위한 개혁), 수요측면의 개혁

○ 거시적 수준의 통제: budget caps, volume control on input and output, price control on input and halth services

– 보통 총체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단기에는 효과가 있을수 있지만 장기에는 통제받지 않은 영역의 지출을 늘리거나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필요불급한 서비스에 대기시간 증가)

① 지출 한도제(budget caps):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총의료비 지출이나 병원 혹은 약제와 같은 부문별 지출에 한도를 정함 (예: 병원에 대한 총액예산제, 일반의에 대한 지출상한제)

② 공급 통제(supply constraints): 투입 통제 기제는 의대생 입학정원 통제, positive list for drugs, high-tech 기계의 rationing을 들 수 있고, output 통제는 특정 치료법(시력검사 및 치과진료)의 delisting

③ 가격통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임금 통제, 약제품에 대한 reference pricing, 특정 치료법에 대한 가격 통제

○ 미시적 수준의 개혁: 의료시스템 내의 운영체계 개선, 진료비 지출제도 개선, 시장 기제에 대한 의존성 증가(환자와 공급자의 옵션 증가)

– 비용 억제뿐만 아니라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함

① 운영 및 공조: 행정 간소화, 의료기능 분권화, 주치의 제도 도입

② 진료비 지불제도

③ 시장기제: 내부 시장 창설(1차의료진이 병원서비스 구입), 의료서비스 구입자와 공급자로 분리하여 공급자 간 경쟁 촉진, 환자의 선택 폭 확대(병원 및 1차의료진)

○ 수요 측면의 개혁: 환자 부담 비용(cost-sharing) 증가, 민간의료보험에 세제혜택 부여

□ 각 정책적 수단을 0부터 6까지 수치화하여 초과비용 지출증가율(EC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하면, 시장기제 확대(-0.50), 공공부문 운영 및 공조체계 개선(-0.30), budget caps 강화(-0.24)가 효과적

○ 거시적 수준의 통제 방식

① 예산상한(budget caps)과 중앙집권적 감독체계: 1 unit 증가는 ECG를 0.25%p 감소시킴

– 예산상한을 의료서비스 전체에 적용해야지 부분적(예를 들면 병원비)으로 한다면 비용억제 효과가 없음(예산상한이 없는 부문에 대한 의료비 폭증)

– 단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캐나다, 스웨덴, 영국에서 수술날짜 정하기 위한 대기시간 증가)

② ③ 공급 및 가격 통제: 비용억제에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수단

– 공급통제는 ECG을 미미하게(0.1%p) 낮춤: 예로 병원 통폐합(캐나다), 병상 수 축소(캐나다, 핀란드), 비효율적 치료법을 보상대상에서 탈락(독일, 네덜란드), positive drug list(독일, 이탈리아) 등이 있음

– 가격통제는 오히려 초과비용증가율을 상승(+0.11)시키는 역효과: 예로 의료진 수가 통제(캐나다), reference pricing for drugs(독일, 네덜란드)

• 가격통제시 공급자들이 서비스 양(volume)을 증가시키거나 환자들에게 고비용 서비스를 권장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

• 예로, 독일의 약가통제 정책은 약제비 지출을 인하하였으나 그 효과가 매우 짧고 오래가지 못함

○ 미시적 수준의 통제 방식

① ② 공공운영 및 계약방식 강화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중앙 감독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다면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정부로 분권화하는 것도 비용을 낮출 수 있음 (0.30%p) (예로 캐나다와 스웨덴을

들 수 있음)

- 의료의 분권화는 진행되었는데 중앙 감독체계가 잘 확립되지 않은 스페인의 경우에는 비용억제 효과 낮음
- 계약방식 개혁: 미국의 managed care제도는 일종의 주치의 제도(서비스 이용 전에 사전허가 필요), 보상액과 서비스 이용량에 대한 지침을 따를 의사들과만 계약
- 지불제도 개혁: 비용보상제도에서 사전지불 예산(prospective budget)제도로 전환(핀란드, 스웨덴), 수요 전망치와 환자당 혹은 case 당 평균비용에 기반하여 미래 지향적 예산(forward-looking budget) 편성하고 이 예산을 통제
  - 이는 행위별 수가제(FFS)에서 case-based payment 방식으로 이행: 예를 들면 DRG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제도인데, 이도 입원을 증가시켜 양을 증가시키면 효과 없음

③ 시장기제 강화: 공급자와 보험자 선택 옵션 확대, 보험자간 경쟁확대는 ECG를 0.5%p 감소

- 정부 내 의료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 분리: 1차 의료서비스에 좀 더 적극적인 계약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 병원간 경쟁 촉진 (영국, 스웨덴)
- 스웨덴에서는 경쟁을 촉진하며 DRG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입원 환자 volume이 증가하여 오히려 비용 증가, DRG 수가를 낮추고 퇴원환자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부과

○ 수요 측면의 개혁: 큰 효과는 없음

- 민간보험제도 활용은 ECG를 0.1%p 감소
-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copay)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지만 저소득층에게 접근성의 문제 발생
  - 핀란드와 스웨덴: 지방정부가 본인부담금 결정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책임 높음
- 의료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민간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효과는 미미함

□ 기타 정책

○ 의료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와 정제

○ IT 활용을 강화하여 효율성 개선: 의료공급자들의 임상 가이드라인 제공, 질병통제 개선, 복약 사고 감소, 중복진료 감소

○ 예방의학 강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 이에게 본인부담금 혹은 보험료를 낮춰주는 인센티브 시스템 개발

○ 저소득층의 safety-net 보장

□ 선진국 중에 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비용은 증가시키지 않은 좋은 예가 한국과 대만임

○ 대만은 총액예산제 도입, 의사들의 보너스 지급은 clinical outcome에 연동

– 칠레는 명시적인 연간 예산 한도를 설정하고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 예산보조 폐지

– 한국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혼용을 통해 비용 억제

– 한국과 대만은 효율성 개선, DRG 제도 도입

– 반면, 멕시코는 의료제도가 매우 분열(fragmented)되어 있고 수직적 통합, 경쟁 없고 공공의료 행정비용이 매우 높음

– 중국도 1차진료 및 예방의학을 장려하도록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

○ 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지원이 더 바람직(노동시장 왜곡이 심할수록): 태국

○ 아시아 개도국에서는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가 가계의 예방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줄여 성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 시장기제를 주로 활용하는 국가

○ ECG가 낮아 큰 개혁은 필요치 않으나 고령화 효과만 통제가 필요한 국가: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슬로바키아

○ ECG가 중간으로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 정책을 혼합하여 적절한 비용억제 노력이 필요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 ECG가 높아 향후 의료개혁이 필요한 국가: 그리스, 룩셈부르크, 한국, 스위스, 미국

– 그리스와 룩셈부르크는 효율성 측면에 큰 개선이 필요
–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예산제약 및 중앙감독이 미흡

□ 공공보험과 공공의료 제공에 주력하는 국가
○ ECG가 낮은 국가: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 덴마크, 아일랜드: 효율성 향상 필요
– 이탈리아, 스웨덴: 우선순위 선정(공공의료 패키지의 구성 등)
○ ECG가 보통인 국가: 노르웨이(기본진료에 대한 보험 확대), 스페인(우선순위 선정 개선)
○ ECG가 높은 국가: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기본의료에 대한 민간보험 역할 확대, 공급자 옵션 증대)

	시장기제	공공의료
ECG 낮음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슬로바키아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ECG 중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ECG 높음	그리스, 룩셈부르크, 한국, 스위스, 미국	아이슬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영국

라. 한국금융연구원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2011.3)

□ 2050년,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의 빠른 진전의 원인은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상승,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보건 · 영양 개선 때문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18년,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
○ 한국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000년 15.3%에서 2050년 91.4%로 크게 증가하여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고령자 부양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저하, 생산성 감소, 저축 감소,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유발하여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

○ 고령화는 2020년과 2030년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2002년에 비해 각각 4.6%p, 11.8%p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투자율도 2002년에 비해 2020년과 2030년에 각각 1.1%p, 2.6%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08년 대비 20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09)

–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경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총지출의 39% 수준에 미칠 것으로 예상

–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조세부담(국민부담)의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IMP는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가 0.041%p 하락 할 것으로 추정

○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4.56%(2003~2010)에서 0.74%(2040년대)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노후생활의 주요 수입원으로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공적 · 사적연금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

○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보다 약 17%p 낮음

– 그러나 모든 연령그룹에서 연금소득보다 노후생활비 및 노후의료비 지출이 더 클 것으로 추정

○ 공적연금 비중이 낮아 고령화 관련 부담의 상당 부분이 가계자산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가계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임

– 가계의 재무상황은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9년 말 우리나라 개인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비중은 약 21.4%, 비금융자산비중은 78.6% 수준

○ 따라서 가급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비중을 증가하도록 연금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

– 사적연금의 비중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세제해택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

를 검토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률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고려

□ 또한 고령화 진전 등으로 개인, 기업, 정부 등의 금융수요가 변화할 전망이므로, 금융부문에서는 다양한 고령화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시장을 육성할 필요

○ 개인은 금융자산 중에서 예적금, 연금 등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기업은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실버시장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고령친화산업 진출 확대와 이에 따른 금융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대한상공회의소(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보완하기 위한 고수익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노동력 확보 및 경제성장력 유지를 위해 출산장려, 여성인력 활용, 정년연장,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강구할 필요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커다란 위험요인

○ 향후 전체 재정에서 자치하는 복지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마.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 재정적자 축소와 적자 해소에 주력" (2011.05)

□ 중국은 2011년 3월,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바오바(8% 성장률 유지) 정책을 포기하기로 함

○ 중국은 지난 10년간 고용창출을 위해 8% 이상의 고성장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인플레이션 및 빈부 격차 심화 등 문제가 발생

□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결과 재정상황 악화, 2011년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9천억위안으로 줄이기로 함

○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기록하며 재정상황 개선, 2000년대에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며 비교적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음

– 2002년 재정적자는 3,150억위안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가 적자폭이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1,540억위안 흑자 기록

[그림 1-Ⅲ-4] 중국의 재정수지 변화 추이

(단위: 천억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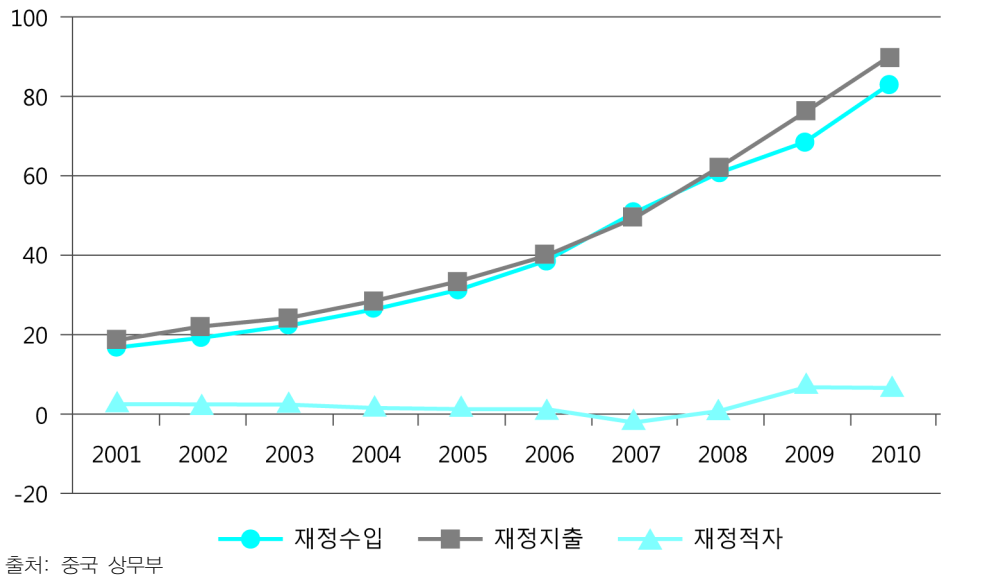

출처: 중국 상무부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결과 재정적자는 2009년 7,718억위안, 2010년 6,495억위안으로 크게 증가

- 2008년부터 재정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였음
- 2008년 11월 5일,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건설(철도, 도로, 공항, 도시, 농촌전력망 등)에 1조 8천억위안 투입
  - 주택, 농촌기반시설 확대, 운송, 보건 및 교육, 환경, 산업, 재해재건, 소득, 조세 및 재정 등 10개 분야에 2조 2천억위안 투입

○ 2011년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적자 규모를 9천억 위안으로 줄이는 목표 설정

- 증치세*(增值稅)징수 범위 확대, 영업세 등 세수 감면

  *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구축
- 건전하고 종합적인 개인소득세 제도 구축
- 자원세 전면 개혁, 환경보호세 신설, R&D 세제, 부동산 세제 등 개혁

○ 그러나 3농(농업, 농민, 농촌), 저개발지역, 민생, 사회사업, 구조조정, 과학기술 등에는 재정지출 확대, 서민 우대 정책 시행

- 도시지역 저소득층 및 농민에 대한 보조금 확대
- 농촌 및 중소도시에 유통망, 인터넷망 건설 확대
- 서부대개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 중부지역 발전 등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세제 우대정책 지속
- 에너지 절감, 교통운수, 생태환경 건설 등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 우대정책 지속 (GDP 단위당 탄소배출 17% 감축)
-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우대 정책 지속(연구개발비 GDP 대비 1.8%(2010년) → 2.2% 확대 계획)
- 민생(교육, 의료, 사회보장, 고용, 주택, 교통운수, 환경보호) 부문에 중앙정부 재정의 2/3 투입
- 특히, 주택공급과 자원개발/전력 두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증가율이 전년 대비 23.9%, 22.9% 증가

□ 2010년에는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가되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4월까지 네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성장속도 조정

○ 질적 성장과 균형 성장 목표: 12차 5개년 계획 규칙(2011~2015년)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7.5%(11차 5개년 목표)에서 7%로 인하, 도시실업률 목표도 4.1%(2010년)에서 5%로 조정

○ 경기부양책: 2009년부터 행정관리 수수료, 증명 수수로, 검정 수수료 등 행정사업 수수료 중 다수를 취소하거나 정지,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허용, 수출기업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증치세 환급률 인상,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세, 인화세, 토지증치세 등 관련 세금 인하 및 면제

○ 외자 수출기업에 적용되던 우대조치 축소 및 폐지

- 2006년 9월부터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증치세 환급 조정을 통해 255개 수출품의 환급 폐지
- 2006년 1월, 658개 품목, 11월 액세서리, 가구, 가죽 등 84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 조치 설정
- 2007년 외자기업 우대 조세정책 종결, 중국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은 동일하게 25%의 법인세 부담
- 2008년부터 기존 외자기업 우대정책이 업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첨단기업은 15%, 영세기업 20%, 서부내륙지역 개발 투자는 15% 법인세 부담

○ 그러나 저소득층 소비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11.4% 증가, 사상 최대 규모인 1.05조위안으로 편성

- 가전 및 자동차 구입 보조금 등 단기 소비촉진대책 지속 시행, 농촌지원 예산 12.5% 증액, 퇴직자의 양로보험금 10% 이상 등 장기적인 정책 마련

2. 보고서 목록

가. 국제기구

□ IMF

1. Fiscal Policy during Absorption Cycles, IMF Working Paper, WP_11_41 (01 Feb, 2011)
2. Taxing Financial Transactions: Issues and Evidence, IMF Working Paper, WP_11_54 (01 Mar, 2011)
3. Fiscal Expectations Under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Evidence from Survey Data, IMF Working Paper, WP_11_48 (01 Mar, 2011)
4. The Real Effects of Financial Sector Interventions During Crises, IMF Working Paper, WP_11_45 (01 Mar, 2011)
5. Sovereign Rating News and Financial Markets Spillovers: Evidence from the European Debt Crisis, IMF Working Paper, WP_11_68 (01 Mar, 2011)
6. Effects of Fiscal Consolidation in the Czech Republic, IMF Working Paper WP_11_65 (01 Mar, 2011)
7. How Strong are Fiscal Multipliers in the GCC? An Empirical Investigation, IMF Working Paper, WP_11_61 (01 Mar, 2011)
8. Fiscal Rules in a Volatile World: A Welfare-Based Approach, IMF Working Paper, WP_11_56, (01 Mar, 2011)
9. Crisis Management and Resolution: Early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IMF Staff Discussion Notes No. 11/05 (09 Mar, 2011)
10. The Dynamics of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in Light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7-10, IMF Working Paper, WP_11_84 (01 April, 2011)
11. Financial Cycles: What? How? When?, IMF Working Paper, WP_11_76 (01 April, 2011)
12. Probabilities of Default and the Market Price of Risk in a Distressed Economy, IMF Working Paper, WP_11_75 (01 April, 2011)

13. "An Analysis of U.S. Fiscal and Generational Imbalances: Who Will Pay and How?", IMF Working Paper, WP_11_72 (01 April, 2011)
14. Policy Responses to Capital Flows in Emerging Markets, IMF Staff Discussion Notes No. 2011/10 (20 April, 2011)
15.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11 (13 April, 2011)
16. A Fiscal Indicator for Assessing First and Second Pillar Pension Reforms, IMF Staff Discussion Notes No. 11/09 (12 April, 2011)
17. Fiscal Monitor, April 2011: Shifting Gears - Tackling Challenges on the Road to Fiscal Adjustment (12 April, 2011)
18. Tax Policy: Designing and Drafting a Domestic Law to Implement a Tax Treaty, Technical Notes and Manuals No. 11/01 (11 April, 2011)
19. When and How to Adjust Beyond the Business Cycle? A Guide to Structural Fiscal Balances, Technical Notes and Manuals No. 11/02 (11 April, 2011)

□ OECD

1.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Drivers of Economic Growth Across OECD and Non-OECD Econom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43 (Feb 2011)
2. To Move or not to Move: What Drives Residential Mobility Rates in the OEC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46 (Feb 2011)
3. Strengthening the Macroeconomic Policy Framework in South Africa,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47 (Feb 2011)
4. How Efficient Are Banks in Hungar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48 (Mar 2011)
5. Drivers of Homeownership Rat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49 (Mar 2011)
6.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in Spain,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50 (Mar 2011)
7. What Drives Inflation in the Major OECD Econom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54 (Apr 2011)

8. Interest Rate Pass-through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55 (Apr 2011)
9. Global Imbalances, Exchange Rate Pegs and Capital Flow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56 (Apr 2011)

□ World Bank

1. Sudden stops and financial frictions : evidence from industry level dat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05 (01 Mar, 2011)
2. Reforming government debt markets in MEN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11 (01 Mar, 2011)
3. The impact of export tax incentives on export performance : evidence from the automotive sector in South Afric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585 (01 Mar, 2011)
4. Service export sophistication and economic grow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06 (01 Mar, 2011)
5. Laws for fiscal responsibility for subnational discipline : international experi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587 (01 Mar, 2011)
6. How economic growth and rational decisions can make disaster losses grow faster than weal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617 (01 Mar, 2011)
7. Financial inclus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analysis and roadmap recommenda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610 (01 Mar, 2011)
8. How resilient were emerging economies to the global crisis ?,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637 (01 Apr, 2011)
9. Financial globalization in emerging economies : much ado about nothing ?,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24 (01 Apr, 2011)

□ ADB

1. Assessment of ADB's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2007-2010, ADB Working Papers (Mar 2011)
2. Development Effectiveness Brief: Uzbekistan: A Partnership for Growth, ADB Reports (Feb 2011)
3.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South-South Economic Links, ADB book, (Apr 2011)
4. ADB Review: News from the Asian Development Bank (March 2011), ADB Awareness Raising and Multimedia, (Mar 2011)
5. The Dynamics of Asian Financial Integration: Facts and Analytics, ADB Book, (Feb 2011)
6. Pacific Economic Monitor (February 2011), ADB Book, (Feb 2011)
7. South Asia Pension Forum: Foster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Pension Systems in the Region, ADB Reports, (Feb 2011)
8.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Evidence from Emerging Asia (No. 249), ADB Working Papers (Feb 2011)

□ ECB

1. Financial advice and stock market participation, No. 1296 (Feb 2011)
2. Consumption and initial mortgage conditions: evidence from survey data, ECB WP No. 1297 (Feb 2011)
3. Check in the mail or more in the paycheck: does the effectiveness of fiscal stimulus depend on how it is delivered?, ECB WP No. 1298 (Feb 2011)
4. Who lost the most? Financial literacy, cognitive abilities, and the financial crisis, ECB WP No. 1299 (Feb 2011)
5. Behaviour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distress, ECB WP No. 1303 (Feb 2011)
6. The response of labour taxation to changes in government debt, ECB WP No. 1307 (Mar 2011)

7. Myopic governments and welfare-enhancing debt limits, ECB WP No. 1308 (Mar 2011)
8. Macro-financial vulnerabilities and future financial stress: assessing systemic risks and predicting systemic events, ECB WP No. 1311 (Mar 2011)
9. News and policy foresight in a macro-finance model of the US, ECB WP No. 1313 (Mar 2011)
10. Financial imbalances and financial fragility, ECB WP No. 1317 (Apr 2011)
11. Fiscal developments and financial stress: a threshold VAR analysis, ECB WP No. 1319 (Apr 2011)
12. Structural reform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 area countries: a model-based assessment, ECB WP No. 1323 (Apr 2011)
13. Nowcasting inflation using high frequency data, ECB WP No. 1324 (Apr 2011)
14.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in steering money market rates du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ECB WP No. 1328 (Apr 2011)
15. Financial remoteness and the net external position, ECB WP No. 1330 (Apr 2011)
16. Central bank communication on financial stability, ECB WP No. 1332 (Apr 2011

나. 국내학회

□ 한국재정학회 (http://kapf.or.kr)

재정학연구 제4권 제1호 (2011. 02)

1. 견제와 위임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에 관한 정치경제학 모형/박상원
2. 반복비례추정을 이용한 소득세 감면규모 추정/전병힐
3. 조세 복지 중첩과 그 감소방안/최광 · 이성규
4.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성명재
5. 탄소세부과의 소득분배효과/권오상 · 허등용
6. The Horizontal Mismatch vs. the Vertical Mismatch Which Causes a Heavier Income Penalty?/김홍균 · 김지혜

2011년 춘계학술대회 (2011.03.25)

1.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조세정책/홍인기(대구대학교)
2.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소득세수 추계/김현숙(숭실대학교) · 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3.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황성현(인천대학교)
4. 독일과 한국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염명배(충남대학교) · 유일호(대한민국 국회)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11.02.10)

1. The political structure and policy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s: evidence from childbirth grants in Korea/김지영(한국조세연구원)
2.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local school subsidies in korea/고선(한국조세연구원)
3. 감세정책이 중기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류덕현(중앙대)

□ 한국재정정책학회 (http://www.public.or.kr)

재정정책논집 제 12권 4호 (2010)

1. 영국의 황금준칙 도입의의와 시사점/이성규
2.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공공정책 효과의 가치 추정 -CVM에서의 가상편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이진권 · 황욱
3. 한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 분석/최종수 · 조성일
4.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김성순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2011 춘계학술대회 (2011.03.11)

1.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혁신/한국지방재정학회
2.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 지표/허명순(감사연구원)
3.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민간이전경비를 중심으로/조기현(한국지방

행정연구원)

4.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시 · 군을 중심으로/차주현(서울시립대)
5.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와 프로그램예산제도: 조직-목표-예산의 상호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금재덕(서울시립대)
6.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이원희(한경대)

2010 동계학술대회 (2010.12)

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방안/김의섭(한남대)
2. 지방소비세와 지역발전상생기금의 발전방향/유태현(남서울대)
3. 지역고용창출서비스와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소고/우명동(성신여대)
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구축 방안/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6. 지방재정지출 결정요인 분석/김덕준(충북개발연구원)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5권 제3호(2010년 12월)

1. 서울시 재정형평화제도와 세수노력에 대한 유인 효과의 평가/최병호 · 이근재

2010년 03월 정책토론회

1. 시군재정확충방안/박충훈(경기개발연구원)
2. 자치구재정확충방안/조임곤(경기대)

2010년 04월 지방재정세미나(진도) 발표문 (2011.04.26)

1.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여건과 정부간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이재원(부경대)
2.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김재훈(서울과기대)
3. 일본의 삼위일체 분권개혁과 사회복지/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4. 복비분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과제/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박경돈(충주대)

□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9권 1호 (2011년 03월)

1. 미술품 가격 결정 요인과 투자 수익률 분석/남준우
2. 정보통신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기술적 효율성을 감안한 접근방법/정선영
3. 식민지 시대의 도시간 · 직종간 비숙련 임금 격차/차명수
4. 정보재 가치와 플랫폼: 양면시장을 고려한 정보재 가치논쟁의 검토/박지웅
5. 지역간 생산승수와 생산연계구조: 지역경제성장의 제약요인 분석/지해명

다. 국내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재정포럼

1. 기업기부금의 자발성 실태조사/손원익 (2011.02)
2.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박명호 (2011.02)
3. 사회적기업과 조세정책방향/김진수 (2011.03)
4. 조세징수 도급(Tax Farming)의 역사와 배경/고선 (2011.03)
5.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변화추이 분석/성명재 (2011.03)
6. 재정 · 정치제도의 재정성과에의 영향: 실증분석을 중심으로/홍승현 (2011.04)
7. 조세 · 재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과학화 필요성: 재정패널 자료 특성에 대한 논의/송헌재 (2011.04)

세미나 자료

1. 공정사회와 조세정책/박명호,정재호 (2011.03)
2. 환경친화적 조세 · 재정정책과 녹색성장/한국조세연구원, UNESCAP, 녹색성장위원회 (2011.04)

3. 2011년도 춘계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한국조세연구원 (2011.04)
4.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한국조세연구원 (2011.04)
5.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한국조세연구원 (2011.04)

기타연구자료

1. 2010 공공기관과 국가정책/박정수(편) (2010.12)
2. 조세 · 재정모의실험모형: KIPFSIM10 모형의 구축/성명재 · 송헌재 · 전병목 (2010.12)
3.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손원익 (2010.12)
4. 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심태섭 외 (2010.12)
5.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한계/라영재 · 윤태범 (2010.12)
6.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제2호 (2011.01)
7. 각국의 성과관리제도 (2011.02)
8.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1호(제5호) (2011.02)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예산분석 보고서

1. 2010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2011.04.15)
2. [예산정책보고서 제14호]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2011.04.13)
3. [예산현안분석 제39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 상 쟁점 (2011.02.28)
4. [법안비용추계 제8호] 법안비용추계 미첨부요건 강화 방안 (2011.02.25)
5. [예산정책보고서 제13호] 재정법률 개선과제 (2011.02.23)

경제분석 보고서

1.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04.21)
2.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13호) (2011.04.07)
3.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12호) (2011.03.07)
4. NABO 경제동향&이슈(통권 제9호) (2011.02.28)
5.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2011.02.23)

기타보고서

1. NABO 2010 연차보고서(2011.03.06)

포럼/간담회

1.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2011.04.04)
2.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 포럼 (2011.03.24)
3.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2011.03.18)
4.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 (2011.03.09)
5. 금융위원회 주요사업 평가 (2011.02.25)
6.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된 예산상의 쟁점 (2011.02.22)

□ KDI (http://www.kdi.re.kr)

보고서

1.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윤희숙, 고영선 (2011.02.10)
2. KDI 경제동향 2011. 2 (2011.02.15)
3. KDI 경제동향 2011. 3 (2011.03.10)
4. KDI 경제동향 2011. 4 (2011.04.11)
5. Economic Bulletin, February 2011 (2011.02.21)
6. Economic Bulletin, March 2011 (2011.03.21)
7. Economic Bulletin, April 2011 (2011.04.22)
8. click 경제교육 2011. March (2011.02.24)
9. click 경제교육 2011. April (2011.03.24)
10. click 경제교육 2011. May (2011.04.27)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2월 (2011.02.25)
12.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3월 (2011.03.31)
13. 나라경제 2011. 3 (2011.03.03)
14. 나라경제 2011. 4 (2011.04.01)
15. Korean Development, 1973-84: A World Bank Economist Remembers and Reflects (2011.03.21)

한국경제 60년사/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1.03.10)

한국경제 60년사: 총괄편

한국경제 60년사: 산업편

한국경제 60년사: 사회복지 · 보건편

한국경제 60년사: 대외경제편

한국경제 60년사: 국토 · 환경편

한국경제 60년사: 경제일반편

한국경제 60년사 (보급판 전집)

국제회의/세미나/공청 · 토론회

1.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 KDI (2011.04.15)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5,6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해외조사실 (2011.02.11)
2.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7호: 국제통화시스템 변경논의의 배경과 향후 전망/해외조사실 (2011.02.17)
3.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8호: 중국의 주요곡물 수급현황과 향후 전망/해외조사실 (2011.02.24)
4.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9호: 해외경제정보 벨기에의 국가 리스크(sovereign risk)/해외조사실 (2011.03.03)
5.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0호: 브라질 경제의 주요 현안과 전망/국제경제실 (2011.03.10)
6.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1호: 포르투갈의 재정리스크와 구제금융 전망/국제경제실 (2011.03.17)
7.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2호: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2단계 하락/국제경제실 (2011.03.24)

8.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3호: 포르투갈 의회, 추가 재정긴축안 부결/국제경제실 (2011.03.31)
9.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4호: 그리스 ·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추가 하락/국제경제실 (2011.04.07)
10.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5호:포르투갈, 구제금융 요청/국제경제실(2011.04.14)
11.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6호: EMU 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국제경제실 (2011.04.21)
12.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6호: 아일랜드, 국가신용등급 2단계 하락/국제경제실 (2011.04.21)
13.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17호: 이슬람금융의 최근 동향 및 전망/국제경제실 (2011.04.28)
14. 금융경제연구 제459호: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경제연구원 (2011.03.14)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보고서

1.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박번순 · 김화년 · 권혁재 · 박찬수, 연구보고서 (2011.04.11)
2. 현행 '인플레이션 타기팅(IT)'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강민우, SERI 경제포커스 제 332호 (2011.03.29)
3. 한반도 정세보고서: 1/4분기 KPSI 조사결과/방태섭 · 임수호 · 최명해 · 정호성, 연구보고서 (2011.03.14)
4.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최홍, SERI 경제포커스 제326호 (2011.02.15)
5.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식량안보 전략/박환일 · 강희찬 · 김화년 · 임수호 문외솔, 연구보고서 (2011.02.14)
6. 환율 1,100원 붕괴의 배경과 향후 전망/정영식 · 정대선, 연구보고서 (2011.04.07)
7. 미국경제의 회복세 전환과 출구전략/곽수종, SERI경제포커스 제333호 (2011.04.05)
8.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대응/박현수 · 김용기 · 곽수종 · 배영일 김정우 · 정호성 · 이종규, 연구보고서 (2011.03.31)

9. 東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전망/구본관 · 고유상 · 박찬수 · 신창목 · 이원희 · 이치호 · 정동영 · 정호성 , CEO Information 제797호 (2011.03.30)
10. 2011년 중국 전인대(全人大)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권혁재, SERI 경제포커스 제330호 (2011.03.15)
11. 한반도 정세보고서: 1/4분기 KPSI 조사결과/방태섭 · 임수호 · 최명해 · 정호성, 연구보고서 (2011.03.14)
12. 최근 원화와 엔화 간의 동조화 배경 및 시사점/정대선 · 정영식, SERI 경제포커스 제328호 (2011.03.01)
13. 베트남의 대외불균형과 시사점/박번순, SERI 경제포커스 제327호 (2011.02.22)
14. 중국 리스크 평가와 한국경제/엄정명 · 신창목 · 김화년 · 권혁재 · 이태환 정진영, CEO Information 제790호 (2011.02.09)
15.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이은미, SERI 경제포커스 제325호 (2011.02.08)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보고서

1. LGERI 리포트: 중국 서부 대개발(인프라 깔기 10년, 이제 거점 중심으로 본격 개발)/이철용 (2011.02.23)
2. LGERI 리포트: 제조 강국 독일 기업의 경쟁력 해부/이서원 (2011.02.16)
3. LGERI 리포트: 환율과 기업 경쟁력(기업가치와 수익성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 줄어들고 있다)/박상수 (2011.02.16)
4. Weekly 포커스: 물가 낮추려면 성장 얼마나 희생해야 하나/정성태 (2011.03.30)
5. LGERI 리포트: 일본 대지진, 경제적 충격파는 어디까지?/이지평 · 배민근 · 윤상하 (2011.03.21)
6. Weekly 포커스: 최근 신흥국 자금 유출 점검(대규모 유출 지속 가능성 크지 않다)/최문박 (2011.03.21)
7. Weekly 포커스: 애그플레이션 시대, 다시 보는 농업/도은진 (2011.03.21)
8. Weekly 포커스: 환경규제를 발판으로 화학물질관리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정유진 (2011.03.16)

9. LGERI 리포트: 중동 민주화 도미노의 경제적 파장/이지평 · 이근태 · 이광우 (2011.03.09)
10. Weekly 포커스: 정체된 서비스 소비, 증가 여지는 크다/이혜림 (2011.04.20)
11. LGERI 리포트: 2011년 경제전망(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성장률 4% 초반으로 둔화)/ 경제연구부문 (2011.04.13)
12. LGERI 리포트: 위안화, 글로벌 통화의 길 아직 멀다/배민근 (2011.04.06)
13. Weekly 포커스: 북한에게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유승경 (2011.04.06)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보고서

1.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년 4월호 [Vol.21-2] (2011.04.29)
2.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이소영 (2011.03.28)
3.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와 한계/송원근 (2011.02.10)
4.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조경엽 (2011.03.30)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CFE 리포트

1.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곽은경 (2011.04.28)
2.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김정래 (2011.04.21)
3. 코리아 브랜드를 발명하라/안지윤 (2011.04.07)
4. 전월세안정대책의 주요 논의와 정책과제/김재환 (2011.04.14)
5. 행태주의 경제학이 던지는 메시지/유동운 (2011.03.24)
6.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전략환경/배정호 (2011.02.24)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692회]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현인택 (2011.2.16)
2. [693회]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새로운 내일/최시중 (2011.2.23)
3. [695회]2011년 한국경제 운영전략/윤증현 (2011.3.9)

4. [696회]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안종범 (2011.3.16)
5. [702회]선진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박재완 (2011.4.2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 미 · 중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 및 평가/나수엽 (2011.02.11)
2. EU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시사점/강유덕 (2011.02.15)
3.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논의의 쟁점과 전망/이보람 (2011.02.22)
4. 중국의 소비발전 단계와 12 · 5 규획 기간의 소비 정책/북경사무소 (2011.02.23)
5. 이집트발(發) 반정부 · 민주화 시위의 중동 내 확산 가능성과 영향 평가/박철형 (2011.02.23)
6. 아태지역의 새로운 지역협력과 중국의 FTA 전략/북경사무소 (2011.03.03)
7.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세제개편 방향/북경사무소 (2011.03.07)
8. 최근 선진공여국의 ODA 개혁조치와 시사점/권율 외 (2011.03.15)
9. 리비아 사태 이후 중동 반정부 · 민주화 시위의 확산가능성: 주요국별 점검/박철형 외 (2011.03.17)
10. EU의 그린조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조미진 외 (2011.03.18)
11. 인도의 2011년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송영철 외 (2011.03.18)
12.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1: 총 16편 중 제1~2편/북경사무소 (2011.03.21)
13.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2: 총 16편 중 제3~4편/북경사무소 (2011.03.25)
14.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3: 총 16편 중 제5~6편/북경사무소 (2011.04.14)
15.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2: 총 16편 중 제7~8편/북경사무소 (2011.04.21)
16.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김규판 외 (2011.03.30)
17. 일본의 지진사태로 본 자연재해와 거시경제/허인 외 (2011.03.30)
18. 최근 영국의 인플레이션 동향과 경기회복 전망/오현정 외 (2011.04.04)

19. 일본 대지진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최필수 외 (2011.04.06)
20. 중국 인플레이션의 우리나라 전이 가능성과 시사점/박영준 외 (2011.04.12)
21. 201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이승신 외 (2011.04.13)
22.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주요국의 원전 정책 방향과 시사점/강유덕 외 (2011.04.18)
23. 최근 독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과 향후 전망/이현진 (2011.04.20)
2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 나타난 2011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국가예산 분석/홍익표 (2011.04.21)
25. 국제 고유가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황지영 (2011.04.27)
26. 포르투갈 구제금융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전망/강유덕 외 (2011.04.28)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보고서

1. 국내 기업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향후 활성화 방안/오세경 (2011.02)
2.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서병호 (2011.02)
3.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송인만 외 (2011.03)
4. 녹색금융의 자본조달론 -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활성화/전용일 외 (2011.03)
5.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박성훈 (2011.03)
6.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김병덕 외 (2011.03)
7. 금융안정 분담금(은행세) 도입과 정책방향/박성욱 외 (2011.03)
8.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김병연 외 (2011.04)
9. 원/달러 변동성 증대의 결정요인 분석/성태윤 (2011.04)
10.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강종만 (2011.04)
1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개선방향: 비교공시를 중심으로/송민규 (2011.04)

세미나

1.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정책토론회 (2011.03.04)
2. 법적 예금보장과 중앙은행에의 대체계좌설정을 통한 예금보호(2011.02.17)
3. On the Determinants of Aggregate Currency Mismatch (2011.01.27)
4. Contagion of Liquidity Crisis between Two Firms (2011.01.26)
5.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 - 평판과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2011.01.25)
6. 부동산 PF대출의 부실화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2011.01.21)
7. Prospects and Issues for the U.S. and Global Economies in 2011 Allen Sinai (2011.01.20)
8. 『금융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토론회 (2011.04.12)
9. 국제통화시스템 : 개혁과 과제 (2011.03.22)
10.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공청회 (2011.03.11)
11. Asset Market Structures and Monetary Policy in a Small Open Economy (2011.03.09)
12. 공적 연기금의 역할 선진화 (2011.04.26)
13. 서민금융의 지속적 발전과 심화 (2011.04.28)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Ⅰ. 주요국 동향
Ⅱ. 미 국 (FY2011: 2010.10~2011.9)
Ⅲ. 일 본 (FY2011: 2011.4~2012.3)
Ⅳ. 영 국 (FY2011-12: 2011.4~2012.3)
Ⅴ.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Ⅵ. 독 일 (FY2011: 2011.1~2011.12)
Ⅶ. 캐나다 (FY2011-12: 2011.4~2012.3)
Ⅷ. 호 주 (FY2011-12: 2011.7~2012.6)

Ⅰ 주요국 동향*

□ 영국, 캐나다, 호주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FY2011-12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영국의 FY2011-12(2011.4-2012.3) 예산기조는 경제성장과 공정성 확보

–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에 소득세, 자본취득세, 법인세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

– 조세제도 간소화 및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 이를 통해 재정건전화 시행

○ 캐나다의 FY2011-12(2011.4-2012.3) 예산기조는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 기업에 고용창출의 인센티브 제공 및 개인의 대한 세제혜택 증가(아동의 교육비, 양육비, 가족 간호에 참여하는 자, 의료비 등)

– 캐나다 재정은 현재 상당히 건실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전략 및 운영검토, 조세시스템 개편 등)

○ 호주의 FY2011-12(2011.7-2012.6) 예산기조는 건실한 경제성장

– 사회기반시설 확충, 미래 성장잠재력인 노동력 양성을 위해 훈련, 일자리 확대 등 시행, 교육환경 개선

–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FY2012-13에 예산흑자 목표를 세우고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로 제한, 지출효율화 모색(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 세제개편, 효율성 배당제도 시행)

□ 일본은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복구사업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2~10%p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복구비용 충당을 위해 소비세 인상, 소득세 및 상속세 인상 등을 검토 중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 영국은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예산책임헌장), 프랑스는 재정통제 거버넌스(governance) 확립을 위한 헌법초안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법적 근거 마련

○ 영국의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채무관리정책 목표, 재정건전화 목표, 재정현황 및 예산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예산책임청의 역할 등의 내용을 예산책임헌장을 통해 법률화

– 재정건전화 목표는 5년 이내 재정균형 달성, FY2015-16까지 공공부문 순부채 감소

– 이러한 목표들을 예산책임헌장에 포함하여 법률화함으로써 재정목표 수정시 헌장을 수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

○ 프랑스 국무총리는 2011년 3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새로운 법률체계와 법기구 제정을 담은 헌법초안을 의회에 제출

– 각 프로그램의 수익과 지출 균형 목표 달성을 통해 지출 통제, 세제혜택 제한, 유럽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초안의 우선 국회 내부검토를 내용으로 함

□ 독일과 프랑스는 중기적, 미국은 장기적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 독일은 2012년부터 top-down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추가 수입 발생시 신규 지출보다는 우선적으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여 2016년까지 신규차입 규모를 GDP의 0.35%까지 감소시킬 계획

– 독일은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지향적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 재정수지와 부채 수준이 서서히 안정화되어 2012년 초부터 SGP 제재 메커니즘이 교정적 제재에서 예방적 제재로 전환될 전망

○ 프랑스는 OECD 보고서에서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2%, 부채를 GDP 대비 90% 이하로 낮춰 안정화시킬 계획을 발표

– 재정목표 주기적 검토, 재정건전화를 위해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설치, 구조개혁 제안

○ 미국은 2011년 전반적으로 고용 및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10년 이상 시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

– 하원 제시 FY2012 예산안에서 향후 10년간 5조 8천억달러의 재정지출 삭감정책 제안

- 오바마 대통령도 향후 12년동안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발표
- 의료 등 복지혜택 축소, 국방지출 삭감, 국내지출에 대한 지출한도 부과 등이 구체적인 실행 방식

Ⅱ 미국 (FY2011: 2010.10~2011.9)

1. 세제개편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FY2011 예산안 통과

□ 4.15일 FY2011 연방예산 효력 발생

○ FY2011 예산안은 작년 9월 30일까지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연방정부는 그간 FY2010에 준하는 7번의 준예산*으로 운영

* 예산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기한이 있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준예산의 기한 만료 전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한시적인 준예산을 편성

○ 4.8일 저녁 연방정부 폐쇄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간신히 여야 의회 지도자들 간에 합의한 사항을 14일 상하 양원에서 통과

– 4.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효력 발생

○ 합의된 FY2011 예산은 FY2010 수준보다 385억달러 삭감된 수준

2)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의 FY2012 예산방침 발표

□ 4.5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폴 라이언(공화당)은 향후 10년간 현 정책 유

지시보다 5조 8천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 방침을 제안

* CBO 기준선 전망 기준. 대통령 예산안에 비해서는 6조 2천억달러 이상 지출 삭감

○ FY2012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 측의 입장은 의료보험법 폐지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혜택 축소, 국방지출 삭감, 국내지출에 대한 지출한도 부과 등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보다 재정적자를 약 4조 4천억달러 더 줄일 것을 제안

〈표 2-Ⅱ-1〉 폴 라이언 위원장이 제시한 예산 방침의 주요 내용

재정지출 축소	■ 국방지출 절감 ■ 비안보 재량지출을 2008년 수준 이하로 축소 ■ 공무원 인력 축소 ■ 불요불급한 사업 폐지 ■ 금융기관 구제금융 종료 및 Fannie Mae, Freddie Mac 개혁
사회안전망 개혁	■ 의료보험법 폐지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제개혁	■ 개인소득세 인하(최고세율 35%→25%로 인하) ■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35%→25%로 인하)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11.10월 FY2010 결산 발표 예정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1) 오바마 대통령, 향후 12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 11.4월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2년 동안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

○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

– (비안보 재량지출) 향후 12년 동안 7,700억달러 삭감

– (국방지출) 2023년까지 4,000억달러의 국방지출 절감 방안 강구

– (보건 · 의료 비용) Medicare와 Medicaid를 개선하여 2023년까지 4,800억달러 절감 및 그 이후 10년 동안 추가 1조달러 절감

– (세제 개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 감면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상위 2%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제한하여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 기타 요소로는 농업보조금 등 보건 · 의료 부문 이외의 법정지출에서 2023년까지 3,600억달러를 절감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

향후 12년간 4조 달러 재정적자 감축계획

2) 의회예산처, FY2012 대통령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4.15일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2월 의회에 제출된 FY2012 대통령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

* 사전분석 보고서는 3.18일 발간

○ 대통령 예산안이 의결될 경우, FY2011의 재정적자는 의회예산처의 기준선 전망보다 260억달러, FY2012의 경우는 830억달러 더 증가할 전망

○ FY2012~FY2021 기간 동안 재정적자는 대통령 예산안의 경우 9조 5천억달러, CBO의 기준선 전망이 6조 7천억달러로 대통령 예산안이 현 정책 유지시보다 약 2조 7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킬 전망

○ 국가채무의 경우도 대통령 예산안의 경우 FY2011에 10조 4천억달러(GDP의 69%)에서 FY2021에는 20조 8천억달러(GDP의 87%)로 CBO 기준선 전망보다 약 2조 8천억달러 더 높은 수준

〈표 2-Ⅱ-2〉 CBO의 FY2012 대통령 예산안 분석-경제적 효과 제외

(단위: 십억달러)

	Actua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2012-2016	Total 2012-2021
CBO's March 2011 Baseline														
Revenues	2,163	2,230	2,558	3,087	3,440	3,642	3,826	4,071	4,271	4,483	4,703	4,951	16,554	39,032
Outlays	3,456	3,629	3,639	3,779	3,954	4,180	4,460	4,661	4,856	5,148	5,412	5,680	20,012	45,770
Total Deficit	-1,294	-1,399	-1,081	-692	-513	-538	-635	-590	-585	-665	-710	-729	-3,459	-6,737
CBO's Estimate of the President's Budget														
Revenues	2,163	2,229	2,544	2,899	3,212	3,442	3,635	3,818	3,994	4,179	4,382	4,597	15,732	36,702
Outlays	3,456	3,655	3,708	3,800	3,976	4,191	4,476	4,687	4,896	5,200	5,483	5,756	20,150	46,172
Total Deficit	-1,294	-1,425	-1,164	-901	-764	-748	-841	-870	-902	-1,021	-1,101	-1,158	-4,418	-9,470
Difference Between CBO's Estimate of the President's Budget and CBO's Baseline														
Revenues	n.a.	-1	-14	-188	-228	-200	-191	-254	-277	-304	-321	-354	-822	-2,331
Outlays	n.a.	25	69	21	22	11	15	26	40	53	70	76	138	402
Total Deficit[a]	n.a.	-26	-83	-209	-251	-210	-206	-279	-318	-356	-391	-429	-959	-2,733
Memorandum:														
Total Deficit as a Percentage of GDP														
CBO's baseline	-8.9	-9.3	-6.9	-4.2	-3.0	-3.0	-3.3	-2.9	-2.8	-3.0	-3.1	-3.1	-4.0	-3.4
CBO's estimate of the President's budget	-8.9	-9.5	-7.4	-5.5	-4.4	-4.1	-4.4	-4.3	-4.3	-4.7	-4.8	-4.9	-5.1	-4.8
Debt Held by the Public as a Percentage of GDP														
CBO's baseline	62.1	68.9	73.4	75.1	74.9	74.5	74.6	74.7	74.7	75.0	75.3	75.6	n.a.	n.a.
CBO's estimate of the President's budget	62.1	69.1	74.3	77.2	78.3	78.9	79.9	81.1	82.4	84.0	85.7	87.4	n.a.	n.a.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Note: n.a. = not applicable; GDP = gross domestic product.

a. Negative numbers indicate an increase relative to the deficit in CBO's baseline.

○ CBO는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도 분석

- 2012년에서 2016까지 대통령 예산안은 CBO 기준선 전망에 비해 실질 GNP를 평균 0.2%~0.7%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감세정책으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
-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 예산안은 기준선 전망에 비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실질 GNP를 평균 0.1%~1.2% 낮게 할 전망
  - 국가채무 증가가 한계세율 인하효과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표 2-Ⅱ-3〉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2012년~2016년)

(Average percentage difference from CBO's baseline, by calendar year)

	2012		2012-2016	
	Small Effect	Large Effect	Small Effect	Large Effect
Change in Real GNP	0.2	0.7	0.2	0.7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Notes: For details about the analysis, see Appendix A.

GNP = gross national product.

〈표 2-Ⅱ-4〉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2016년 이후)

(Average percentage difference from CBO's baseline, by calendar year)

	2017-2021	Long Term[a]
	Government Spending Reduced After 2025	
Solow-Type Growth Model	-1.2 to -0.1	-3.0 to -0.7
Life-Cycle Growth Model	-1.2 to -0.3	-2.9 to -1.1
	Tax Revenues Increased After 2025	
Solow-Type Growth Model	-1.2 to -0.1	-3.0 to -0.9
Life-Cycle Growth Model	-1.0 to -0.2	-3.8 to -1.6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Notes: CBO's Solow-type growth model is an enhanced version of a model developed by Robert Solow. CBO's life-cycle growth model is an overlapping-generations general-equilibrium model that is based on another standard model of the economy. For detailed descriptions, see Appendix A.

In the 2017-2021 period, estimates derived from the Solow-type model are not affected by whether government spending is reduced or tax revenues are increased after 2025.

a. Estimates of changes that would occur after 2040.

3) 위스콘신주 반공무원 노조법 승인

□ 위스콘신 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공무원 단체교섭권 제한과 연금 및 의료보험의 근로자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승인

○ 지난 1월 취임한 스캇 워커(공화당)주지사와 공화당 주도 주의회가 재정적자를 이유

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연금 및 의료보험의 근로자 부담비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입법을 추진하여 논란

- 다만, 주정부는 이번 입법을 하는 대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제 무급휴가나 감원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한 주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던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었으나, 3월 9일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

○ 위스콘신 주는 현재 약 36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

□ 이와 유사한 법안 채택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점차 확산

○ 위스콘신 주에서 이번 법안의 승인으로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공화당 주도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채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 오하이오, 인디애나, 아이오와, 테네시, 캔자스 등의 주의회에서는 이미 공무원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입법 조치를 검토 중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정책이슈

1) S&P,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 4.18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

○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주요 요인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와 급증하는 부채 등의 요인이 작용

○ S&P가 신용등급의 최고등급인 AAA 등급 자체를 낮춘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

- 미 국채는 이 소식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반등

○ 한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삭감안이 미국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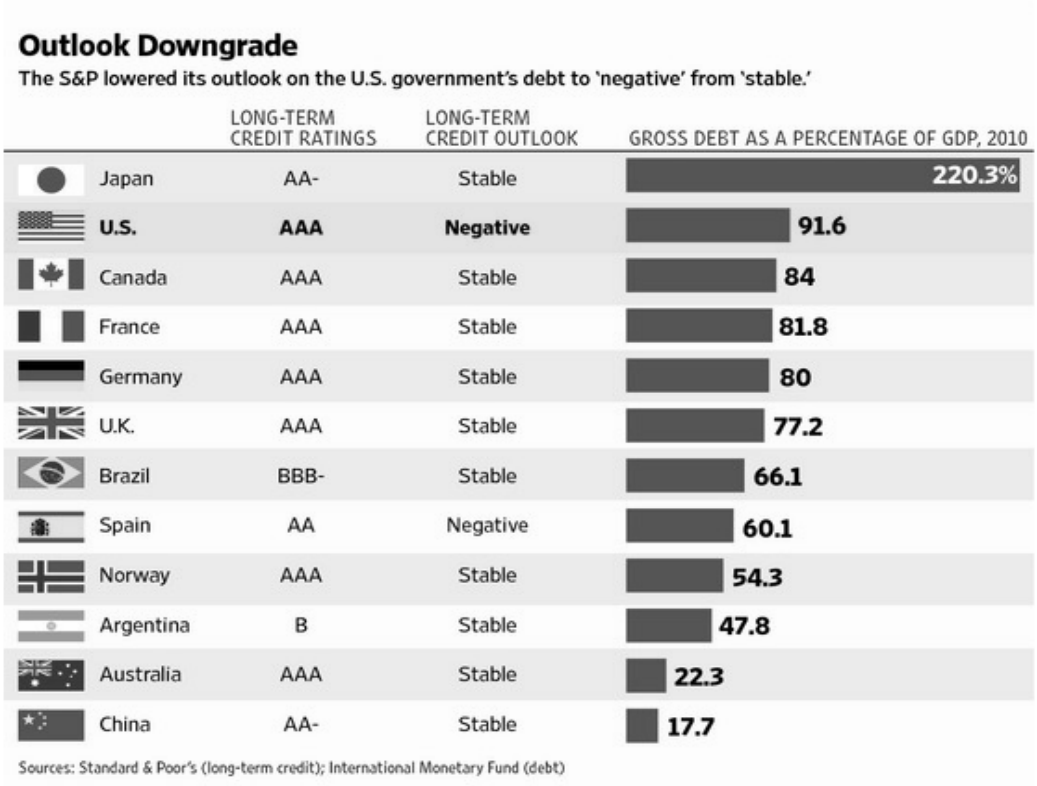

자료: Wall Street Journal, "U.S. Warned on Debt Load", 11.4.19일

2) 오바마 대통령 2012년 대선 출마

□ 오바마 대통령 2012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4.4일 연방 선거위원회에 정식 후보등록

○ 4.1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첫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진행

Ⅲ 일본 (FY2011: 2011.4~2012.3)

1. 세제개편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결산, 추경

가. FY2011 예산안 (FY2011: 2011.4~2012.3)

□ FY2011 예산, 1월 24일 제출된 정부안대로 국회 성립 (3.29)

○ FY2011 예산안의 세부내용은『재정동향』제5호를 참조

□ 각의, FY2011 예산집행에 관한 절차 등을 발표 (4.1)

○ (예산의 移替) 각 부성 등의 장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예산총칙 제12조 및 제13조), 재무성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의 流用) 각 부성 등의 장은 여비 및 부성 등의 경비에 속하는 각 목 및 성과중시 사업에 관한 재무성 장관이 지정하는 각 목 간의 유용은 제정법 제33조 2항에 의해 재무성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목의 세분화) 각 부성 등의 장은 재무성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사업비 등을 사용할 경우, 재무성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목을 더 세분화해야 함

○ (예산의 繰越) 각 부성 등의 장은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낼 수 없어 계속해서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점에서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

○ (보조금 등의 교부절차 등) 보조금 등의 교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재무성 장관이 중앙연락회의와 협의한 후 적정 여부를 결정

나. FY2011 추경(FY2011: 2011.4~2012.3)

□ 동북지역 대지진의 조기 복구를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4.2조엔 규모의 FY2011 1차 추경안 발표 (4.22)

○ 동 재원은 국채시장의 신임 확보를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삭감, 세외수입 등을 통해 확보

〈표 2-Ⅲ-1〉 FY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십억엔)

세 출	금액	세 입	금액
1. 도후쿠 대지진관련 경비	4,015.3	1. 세외수입	305.1
(1) 재난구호 등 경비	482.9	○ 독립행정법인 일본 고속도로보유·채무 상환계획 납부금	250.0
○ 응급 가설 주택의 제공 등	362.6		
○ 재해원호 및 생활자금 대출	60.7		
○ 유족·이재민 위로금 지급 등	59.7		
(2) 재해폐기물처리 사업비	351.9	○ 공공사업비부담금수입	55.1
(3) 재난대응 공공사업비	1201.9		
○ 재해복구 등 공공사업	1043.8	2. 국채발행	–
○ 일반공공사업비	158.1		
(4) 시설비 재해복구비 등	416.0		
○ 학교, 사회복지시설	301.6		
○ 경찰·소방 방재시설 등	80.9		
(5) 재해관련 대출	640.7		
○ 중소기업 등의 사업재건 대출	510.0		
○ 재해복구 주택담보 대출 등	130.7		
(6) 지방교부세 교부금	120.0		
(7) 기타 경비[1]	801.8		
2. 기본경비의 삭감	−3,710.2		
(1) 아동수당 감액	−208.3		
(2) 고속도로무료화 삭감	−100.0		
(3) 기초연금국고부담의 연금특별회계 편입	−2,489.7		
(4) 주변지역 정비 자금 활용의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편입	−50.0		
(5) 정부 개발원조 등 감액	−50.1		
(6) 의원 세비 감액	−2.2		
(7) 경제위기대응 지역활성화	−810.0		
계	305.1	계	305.1

주: 1) 자위대, 소방경찰, 해상보안청 활동경비, 의료보험료 감면, 피해자 생활재건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피해아동 취학지원, 기업등 전력수급 대책, 안정적 연료 공급대책 등

자료: 財務省, 「平成23年度補正予算」, 2011.4.22.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2010년 6월 발표된 「재정운영전략」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결과 발표 (2.2)

〈표 2-Ⅲ-2〉 2011년도 「재정운영전략」 이행 상황(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 목표(내각부 시산결과)	
(1) 수지(flow) 목표	
① 중앙 · 지방 기초재정수지	– FY2011 중앙 · 지방 기초재정수지(GDP 대비)는 전년 대비 0.9%p 향상될 전망 – FY2015 및 FY2020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지개선폭은 각각1.0%p, 4.2%p
② 기초재정수지	– FY2011 기초재정수지(GDP 대비)는 전년 대비 0.9%p 향상될 전망 – 2015년도 및 2020년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지개선폭은 각각1.5%p, 4.6%p
(2) 잔고(stock) 목표	– 2011년 국가채무는 전년(174%) 대비 177%로 악화될 전망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PAYGO원칙	– (FY2011 예산안) 법인세 감세에 따라 증세조치 병행
재정적자 감축 원칙	– (FY2011 예산안) 전년 대비 신규 국채발행 및 국채의존도 감소 – 기초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상기 시산결과와 같으나 향후 불확실한 요소 증가에 따라 신중한 조치 필요
구조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 현재 사회 보험서비스는 대부분 특례채권에 의존 –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1/2 유지는 여전히 문제
세출 재검토의 원칙	– (FY2011 예산안) 편성 시 '재편성 기준' 및 '사업구분'에 따라 예산요구시 2.5조엔의 세출 삭감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 (FY2011 예산안) 지방 일반재원 총액의 확보, '지역자율전략 교부금(가칭)'의 창설 등을 동 원칙에 따라 실시
중기 재정 프레임	
(1) 국채발행규모 억제	– FY2011 신규 국채발행액은 전년(44조 2,030억엔)수준을 하회하는 44조 2,980억엔
(2) 세입측면	–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추진에 대하여'(2010.12)에 근거하여 올해 중반까지 사회보장 개혁방안 및 세제개혁안을 준비
(3) 세출측면	–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전년(70조 9,319억엔) 수준을 하회하는 70조 8,625억엔 –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관련 일반재원 총액은 59조 4,990억엔으로 전년(59조엔 4,103억엔)과 비슷한 수준

자료: 國家戰略室, 財政運営戰略のポイントと「財政運営戰略の進捗状況の検証」, 2011.1.

□ IMF · 무디스, 불충분한 중기 재정재건 계획에 대한 우려 표명 (2.23)

○ IMF는 23일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된 『세계경제전망과 과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기 재정재건계획의 진전이 충분하지 않으며 더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

– 카를로 코타렐리 재정국장은 "일본의 소비세율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의 여지가 충분하다"하다고 강조

○ 무디스, 일본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 등 세금제도 개혁 실패 시 신용등급 강등을 고려하겠다고 경고

– 2월 22일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등급(Aa2)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국가전략실, 예산집행의 적합성 및 투명성 확보, 효율성 향상을 위해 PDCA 사이클[13]과 관련된 「예산감시 · 효율화팀에 관한 지침」 개정 (3.3)

○ 동 지침은 PDCA 사이클 중 Do(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효율적 집행), Check(평가 및 검증), Action(예산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예산감시 · 효율화팀 설치

– 각 부성의 차관을 팀장으로, 각 부서의 과장을 팀원으로 하고, 모니터링 평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형태로 구성

– 정기 회의는 분기별 활동의 평가 및 사전 심사 등을 고려하여 연 4회 실시

○ 해당 업무 내용

– 원칙적으로 매년도 개시 시점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책정 · 관리하고 공표

– 예산집행 상황의 관리 및 자체 평가 실시

• 예산집행 계획 중 지출부담행위 또는 지출계획에 대한 실적을 월별로 파악 · 관리하고 적시에 공표

13) 2009년 10월 「행정쇄신회의」에서는 5대 세출조정에 대한 기본지침을 결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예산의 집행 실태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PDCA(Plan → Do → Check → Action) 사이클을 확립하는 것이었음(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2호를 참조)

• 상반기(4~9월) 및 연도 종료 후, 예산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산 감시 효율성 활동 전체에 대해 각각 자체 평가 실시 및 발표

– (예산집행의 중요한 결정 등에 대한 사전심사) '공공사업의 지점 설치' 및 '보조금 교부' 중 일정 사항, '중요한 조달'에 대해서는 필요성 · 효과성 ·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사전심사를 실시

– (행정사업 리뷰) '행정사업 구분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쇄신회의에서 담당

–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 건의사항 접수) 적어도 연 1회 국민의 건의사항 건수 및 주요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등을 정리 및 발표

– (외부기관과의 연계) 회계감사원, 재무성 회계실, 총무성 행정평가국, 행정쇄신회의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조사 및 대책 등에 적극 협력

– (예산요구에 대한 반영) 예산집행계획 등에 따른 예산감시 및 효율화 결과를 예산요구에 반영

• 회계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따른 지적, 결산관련 국회의결, 행정평가 · 감시 결과에 따른 권고, 재무성의 예산집행 조사결과 등에 따른 개선 실시 상황을 추적하고 해당 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

○ 동 지침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개시 전이나 필요한 경우 적시에 국가전략실에서 검토 및 개정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국가전략실, 2010년 6월 발표된 「新성장전략」에 따른 성과를 가시화하고 향후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新성장 전략 실현 2011」을 발표 (2.10)

○ 2010년 주요성과

– 포괄적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방침 등으로 미래 개척을 위해 노력

– 3단계 경제대책 등을 통해 경기 및 고용 동향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실시[14)]

– 법인세율 5%p 인하 등으로 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

○ 2011년 주요 성과 및 과제

14) 3단계 경제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4호를 참조

- 2011년에 예상되는 주요 성과와 과제를 7대 전략 및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별로 개관[15)]
- 3~4월 진행상황 조사 실시 및 신성장전략의 검토

○ 신성장전략의 수립 후 경제동향

- 일본 경제는 신성장전략을 위한 노력 등으로 신성장전략 수립 시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향후 디플레이션 탈피, 장기적 과제에 대한 대처 등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함
- 향후 경제전망과 거시경제 목표는 명목 및 실질성장률을 각각 3%, 2%로 하고 디플레이션 탈피, 3% 실업률을 유지

다. 기타 정책이슈

□ (경제적 영향) 해외 전망기관 및 내각부 등, 동북 대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액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 (해외 전망기관) 해외 투자은행 등은 현재까지 지진 피해 규모를 한신 대지진(95년)과 비슷한 14조~15조엔 규모를 중간값으로 한 5조~26조엔(2009년 GDP 대비 1~6%) 정도로 추정(3.21)

- IMF는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하였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1%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인사이트도 일본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1.2%에서 이번 지진으로 0.2%p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에도 단기 변동성이 높긴 하겠으나 한신 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내각부) 지진 · 해일 및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실물경제의 피해액은 약 16조~25조엔 정도로 추산됨에 따라 2011년 경제성장률이 0.2~0.5%p 감소할 것으로 추정(4.13, 4.22)

15) 7대 전략 및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3호를 참조

– 부문별 경제적 영향 및 정부 대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참고 5〉상의 요약표 참조

○ (일본은행)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 및 기업심리 악화 등 생산 전반에 강한 경기하강 압력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6%로 대폭 하향조정 (4.28)

□ 전문가들은 향후 복구사업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2010년 GDP 대비 7.7%)가 2~10%p 확대되어 재정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

○ 일본정부는 대지진 관련 긴급조치 및 복구지원 2단계 조치를 통해 10조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발표된 재정운영전략 등 재정정책의 신뢰성 유지도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

〈표 2-Ⅲ-3〉 동북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경제 피해규모 추산

(단위: 조엔, GDP 대비 %, 억달러)

기관	추산규모	달러환산
스탠다드차타드	5 (1.1)	630
시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5~10 이상 (1.1~2.1)	630~1,250
노무라증권	10 이상 (2.1)	약 1,250
세계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바클레이즈캐피탈, OCBC(싱가폴)	14~15 (3.0~3.2)	약 1,800
골드만삭스	16 (3.4)	약 2,000
미쓰비시UFJ증권, 사라신은행(스위스)	20 (4.2)	약 2,500
에어웰드와이드(미국)	26 (5.5)	약 3,240

주: ( ) 안은 2009년 GDP대비 규모를 의미

자료: LG경제연구원, 「일본대지진 경제적 충격파는 어디까지?」, 2011.3. 재구성

□ 요미우리, 일본정부가 재해복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3.13)

○ 간 총리는 야당인 자민당과 함께 재해복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합의

○ 복구비용 충당을 위해 소비세 인상 등 증세 방안 검토를 논의

– 자민당에서는 소비세 1%p를 올릴 경우 약 2.5조엔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재무성, 대지진에 따른 국세 및 관세 신고 · 납부 등 기한 연장(3.15) 및 세관절차 간소화 조치 발표(3.22)

○ 국세청, 국세통칙법 제11조에 의거 지진 · 해일 피해지역인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아바라키현에 대해 모든 세목의 신고 및 납부 연장

○ 관세청, 지진 · 해일에 따른 망실 및 보세 화물, 구원물자 운반 컨테이너에 대한 세관절차 간소화 조치 실시

□ 니혼게이자이, 일본정부가 대지진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등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3.30)

○ 일본정부는 지진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 및 상속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소득세) 3~5년간 세수 10% 한시적으로 확대

– (소비세) 현행 5%에서 10%로 인상

– (법인세) 실효세율 40%에서 35% 인하를 철회 등

□ 일본은행,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1조엔 규모의 특별대출제도 도입 검토 (4.8)

○ 피해지역 금융기관에 정책금리의 상한선인 연 0.1%로 1년간 대출 예정, 담보조건 완화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금융정책회의에서 결정할 방침[16]

16) 일본은행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에도 5,000억엔 규모의 저이자대출제도를 도입하였음.

○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0.1%로 동결, 40조엔 규모의 양적완화정책도 유지하기로 결정

□ 경제산업성,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제도 개정 (4.8)

○ 거래처가 도산했을 경우 적립 총액의 10배를 한도로 무이자 · 무담보 · 무보증으로 공제금을 대부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제도

○ 대지진과 같은 막대한 재해에 의해 거래처(채무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채무자가 채무정리 수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제계약자(채권자)가 공제금의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정

〈참고 1〉 동북지역 대지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공급측면)

1-1. 피재지역(지진 · 해일등에 의한 영향)

농림 수산업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농림 수산성	□ 농업 ○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등 약 2.4만ha의 농지 침수, 염해 발생 우려 ○ 아오모리현에서 미에현까지 16개 현에서 농지 2,012여 곳과 농업용 시설 등 10,068군데 파손(피해액은 각 2,812억엔, 2,052억엔) ○ 농작물 등의 피해는 13개 현에 걸치고, 피해액은 하우스, 축사 등 333억엔, 농작물의 침수 및 유실, 가축의 사망 등으로 70억엔 □ 임업 · 목재산업 ○ 주요 피해 현은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나가노현 등으로 피해액은 969억엔 이상 ○ 피해 내역은 삼림 황폐화 217억엔(269곳), 치산시설 211억엔(87개소), 임도시설 등 18억엔(1,062 개소), 산림 피해 3억엔(308ha), 목재가공 유통시설 513억엔(71곳), 특임시설 등 7억엔(276곳) ○ 일본 합판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이와테현 및 미야기현의 합판공장이 피재 □ 수산업 ○ 전국의 어업생산량의 50%을 차지하는 7도현(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기, 지바)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큰 피해 (7도현의 어업자는 73,948명, 전국의 어업자수의 1/3) ○ (어선)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현까지의 19개 도현에서 피재를 확인, 현재까지 피해척수는 18,872척, 피해액수는 1,150억엔 ○ (어항) 홋카이도에서 지바현까지 7도현에서 피재를 확인, 현재까지 피해 어항은 315곳, 피해액수는 3,781억엔 ○ (양식시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15도현(道縣)에서 피재를 확인, 현재까지 피해액은 양식시설 448억엔, 양식수산물 368억엔	□ 농수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 농수산성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수산 지진재해대책본부' 설치 및 전문가 등에 의한 피해상황 조사 등 ○ 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 정책금융공고(JFC)에서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위기대응 융자대상에 추가 ○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의뢰 ○ 피해지역 농산어촌을 정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책정 검토중 □ 농업 ○ 농업용 시설 등의 긴급점검을 위해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에 독일 농촌공학연구소 전문가 및 농업행정국 담당관 파견 ○ 지방 농업행정국을 통해 재해응급펌프를 공동으로 사용 ○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 복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제도 및 농지전용 허가 제도의 취급 안내 ○ 슈퍼 L자금을 피해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대부하도록 결정 ○ 농지 · 농업수리시설의 피재 상황의 조기파악과 복구, 피재 상황에 따른 수도, 원예 등의 영농 준비를 위한 기술지도 ○ 농업인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신청기한 등의 연장 ○ 가축공제 및 원예시설 공제의 불입기한 연장관련 아오모리현 등 6개 현 및 같은 현 내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통지 □ 축산업 ○ 배합사료 부족에 따른 수유방법, 정전 윈드리스 축사, 원예시설의 온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배합 사료의 공급 확보를 위해 ① 규슈나 홋카이도 등으로부터의 배송 요청, ② 비축 사료곡물(최대40만톤)의 무상 · 무담보에서의 대부 등

농림 수산업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농림 수산성	○ (어시장) 홋카이도에서 지바현까지 7도현에서 피재를 확인, 현재까지전체 105개 시장 대부분이 피재(전괴가 25곳, 반괴 11곳, 침수 · 설비 파손 등 30곳 정도) ○ (수산가공시설) 현재까지 2,108군데 공장 가운데 전괴 368곳, 반괴 97곳, 침수 104곳	□ 임업 · 목재산업 ○ 임업 · 목재관계 단체와 재해복구 목재의 안정공급 및 가격안정 등에 대해서 협의 ○ 임야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이 관계단체에 대해 주택관련 자재에 대해 원활한 공급을 요청 □ 수산업 ○ 피해 어업인 등의 대부금 상환 유예 및 자금융통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요청 ○ 통장을 소실 · 유실한 예금주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 응급조치 요청 ○ 수산가공관계 단체(19개 단체)에 대해 식료지원에 대한 협력을 요청 ○ 어업공제단체 및 어선보험단체에 대해 피해의 조기파악, 신속한 손해 평가의 실시, 공제금 · 보험금의 조기 지불 요청 ○ 어업경영 안전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신규가입의 신청기한 연장. ○ 자원관리 · 어업소득 보장 대책으로 피재 어업인에 대해 가입 신청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 ○ 수산청 어업지도선(수색활동) 및 조사포경 10척이 민간어선과 협력하여 중유, 경유, 생활필수품 등 지원물자 수송 ○ 대지진에 의한 피해 수산업자에 대한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 및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팀을 설치

광공업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경제 산업성	□ 자동차 ○ 동북지역의 자동차부품 회사가 피해, 자동차 생산 전국적 축소 · 정지, 현재 생산 가능한 차종으로부터 조업 속도 조정 및 재개, 부품 공급의 상황에 맞춘 생산이 이뤄질 전망 □ 전기 ○ 반도체 · 전자 부품회사 등의 생산 정지, 라이프 · 라인이나 설비 복구에 따라 순차 생산을 재개 중 ○ 높은 세계 점유율을 가지는, 마이콘, 실리콘 웨이퍼, 리튬 이온 전지 등은 일부 생산 재개가 지연 □ 소형재 ○ 동북 · 관동지역의 기업 중 약 80%가 이미 생산을 재개 또는 예정 □ 비철금속 ○ 전선의 생산 능력의 약 25%가 정지, 4~5월에 걸쳐서 복구 전망 □ 화학 ○ 피재지역의 3개 공장이 정지, 1공장을 제외하고 재개 □ 시멘트 ○ 이와테현, 오후나토시 임해부에 위치하는 동북 최대의 시멘트 공장에 해일에 의한 피해 막대	○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서플라이어(supplier) 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조기복구에 노력중 ○ 가설 주택용 자재나 전선 · 케이블 자재 등의 라이프라인, 인프라 설비 유지 관련 물자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해 관련업계에 요청
국토 교통성	□ 조선 ○ 아오모리현 · 이와테현 · 미야기현 · 후쿠시마현에서 거의 전역에 걸쳐 괴멸 ○ 하치노헤(아오모리현), 시오가마(미야기현) 등에서 일부 복구	○ 게센누마, 이시노마키, 시오가마지구의 조선소 피해상황를 현지조사,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한 복구 및 부흥 지원책을 검토.
농림 수산성	□ 식품 ○ 식품의 포장재 회사의 피재에 의해 초과수요 발생, 삶은 메주콩, 우유 · 유제품, 음료 등 식품가공업 전반에 영향 ○ 피재지역 7개 도현의 태평양 해안 2,108개 수산가공공장 중 531개가 전괴, 침수 등의 피해	○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에 음식료품용 용기 · 포장 자재 등이 우선적인 공급을 의뢰 ○ 농림수산성에 의한 미네랄워터의 생산 · 공급의 확대에 관한 요청을 받고 페트병용 캡의 제조업자는 음료회사와 공동으로 증산을 정비

유통 · 서비스업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경제 산업성	□ 유통 ○ (점포의 영업 재개) 동북 6개도와 이바라키현에서 영업정지 편의점이 지진 직후 약 40%에서 현재 10% 미만으로 감소 ○ 하치노헤(아오모리현), 시오가마(미야기현) 등에서 일부 복구	○ 생활필수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유통관련 업계에 요청 완료
농림 수산성	○ 지진으로 89개 도매시장에 피해, 지진직후 연료 공급 부족으로 입하가 격감, 현재는 회복중에 있으나 일부 시장은 시설 피해 및 거래 침체 ○ 물류센터는 피재에 의해 정체, 현재 미야기현은 가공식품도매의 물류센터 약 70%가 폐쇄 ○ 지진 직후 피해지역의 많은 점포가 일시적 폐점, 현재 편의점의 약 90%, 슈퍼마켓의 약 80%가 개점 ○ 연안 시장 · 짐 처리소 시설은 해일에 의해 홋카이도에서 지바현에 걸쳐서 큰 피해가 발생, 이와테현 · 미야기현 · 후쿠시마현에서 거의 전역에 걸쳐 괴멸, 하치노헤(아오모리현), 소금가마(미야기현) 등이 일부 복구	○ 피해 도매시장의 시설 복구대책 검토중 ○ 조사결과를 근거로 자금융통 등을 포함한 복구대책 검토 ○ 수산업, 재해복구사업에 포함시켜 복구대책 검토
국토 교통성	○ 동북 6개 현의 호텔 · 여관 285개중 8개 시설이 대규모 손상에 의해 영업 불능, 그 외 다수의 호텔 · 여관은 시설의 손괴 등으로 영업 정지	○ 금융지원이나 고용 안정화 조치를 마련중

SOC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총무성	□ 통신 ○ NTT 유선전화는 연안을 중심으로 약5.5만 회선이 불통(총 100만회선), 휴대폰의 기지국은 약1,060개 파손(총 14,800개), 4월말 복구를 목표 □ 방송 ○ 이와테현, 미야기현에서 TV 중계국 174개 중, 7개 파손 □ 우정 ○ 지진 직후 우체국(동북 6현: 1,932곳) 584곳이 영업정지, 현재 80% 복구 ○ 지진 직후 우편배달(동북6현: 513거점) 44거점 업무정지, 현재 68% 복구	□ 통신 ○ 현재까지 위성휴대폰 등의 무선통신기기를 각 현의 재해대책본부등에 무상대여, 통신사업자에게 비상전원용 연료의 확보 등 지원 □ 방송 ○ 피재 20개 시정에서 임시재해방송국(FM방송)의 개설을 임시 허가 ○ NHK 신청에 따라 수신료면제 조치 승인 ○ NHK 및 민방에게 재해속보 제공을 요청 ○ 총무성, 휴대폰용 라디오를 1만대 확보 및 피해지역에 배포. □ 우정 ○ 일본우정㈜에게 우편물의 송달, 저금 · 보험의 비상취급, 피재지역의 생활 지원에 총력을 다하도록 요청
국토 교통성	○ 피해지역의 도로, 공항, 항만의 기능 회복으로 긴급물자의 수송로를 확보하였으나, 많은 인프라 시설 피해 상존 □ 도로 ○ (3월23일) 고속도로 10, 직할국도 28, 보조국도 38, 지방도로 257의 구간이 통행금지 ⇒ (4월11일) 고속 도로 1노선, 직할 국도 16, 보조 국도29, 지방도로 227의 구간이 통행금지 □ 철도 ○ (3월23일) 동북지역 33개 노선에서 운전중지 ⇒ (4월11일) 24개 노선에서 운전 중지 중 □ 공항 ○ (3월23일) 센다이공항, 구원기만 운용 ⇒ (4월13일) 민항기 취항 재개	○ 피해시설에 대한 본격적 복구 대응

SOC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국토 교통성	□ 항만 ○ (4월11일) 피해지역 항만(아오모리현~이바라키현의 태평양해안)의 잠정 이용 가능, 안벽수(수심 4.5m 이상의 공공안벽)은 129/367 바스(시설의 대부분으로 복구공사가 필요) □ 하수도 ○ (4월11일) 11개 현 63군데 처리시설, 72군데 펌프시설에 피해	
경제 산업성	□ 전력 ○ 정전 약 17만호(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총 342만호)내역: 약 3만호(이와테현), 약 9.9만호(미야기현), 약3.6만호(후쿠시마현) ○ 도시가스의 공급 정지 약 21만호 (상기 3개현: 총 67만호) □ 석유 ○ 제유소는 피재 6군데 중 3군데(모두 간토이) 복구했지만, 나머지는 복구가 장기화 ○ 주유소는 동북 3현의 가동률이 53%까지 감소	○ 가솔린, 경유등의 연료는 민간비축 의무의 낮추어(총 25일분)을 포함해 탱크 로리의 추가 투입(4월11일까지 약290대 투입) ○ 해상 · 철도수송 루트의 확보(시오가마 유조소의 출하시간 연장 등), 가설 미니스탠드의 설치, 정보제공의 충실화 등의 대책을 실시 ○ 현재 지역적인 편차는 있으나 동북지역에 석유제품의 공급량은 지진 이전의 수요량의 약 80% 정도(일량 약3만kl)에까지 회복 ○ 동북지역 주유소도 지진이전 약 90% 가동 가능, LP가스는 4월7일에 4만톤의 국가비축량 방출 완료
농림 수산성	○ (촌락배수 관련) 지진에 의해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도치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의 11개 현에서 698군데가 피재, 피해액 285억엔	○ 촌락배수와 관련하여 현재 피재한 시읍면에는 각 지방 농업행정국에 서 응급대응이나 재해복구에 관한 기술상담을 받는 등의 지원 ○ 농업촌락배수 시설의 전문기술을 소유한 사단법인 자원순환 기술센터에 의해 시설 긴급점검이나 피재 상황조사의 대응 실시

1-2. 피재지역(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영향)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경제 산업성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반경 20km 권내 대피, 20~30km의 실내대피 명령으로 반경 30km권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 정지나 주민생활을 포함시킨 경제 활동에 지장 초래	○ 실내 대피지역의 주민에게 필요 물자의 확보, 연료(가솔린, 경유, 등유)공급을 최우선으로 실시
농림 수산성	○ 주변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의 기준초과 농산물이 판매중,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및 지바현의 일부 시정에서 시금치, 모기기나 등의 출하 제한 실시 ○ 후쿠시마현 및 이바라키현에서 원전사고에 의해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조업을 자제, 이바라키현 북부의 까나리로부터 방사성 물질 기준초과 검출 ○ 제한구역 내에서 영농 불가로 가축사육 및 과수관리 불가 ○ 도쿄 수도국에서 일부의 수도권의 수도물로 유아음용 기준 초과의 방사성 옥소가 측정, 유아에 의한 수도물의 섭취를 삼가, 미네랄 워터의 수요가 대폭 증가	○ 시금치 공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계단체에 요청 ○ 식품제조 · 유통 · 판매자에게 농작물이나 식품의 취급에 대해 주의 촉구 , 출하제한 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의 품목이나 대상지역내의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을 충분히 주지 노력 ○ 음료수의 확보에 대해 미네랄 워터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을 포함한 생산 · 공급의 확대 요청 ○ 축산물과 방사성 물질에 관한 정보를 웹에 게재 ○ 국민에게 농작물등의 안전성에 관한 농림수산성 장관 메시지를 발신 ○ JA그룹과 연계하여 농가 자금 등 지원 ○ 미야코현 등과 연계해 수산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 웹에 모니터링 검사 결과나 어개류 정부 등을 게재, 정확한 정보의 주지 노력 ○ 군마현에서 출하된 시금치 및 모기기나에 대해 출하제한 해제 ○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아이즈지역에서 출하된 원유방에 대해 출하제한 해제

2-1. 피재지역 이외(공급망을 통한 영향 등)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경제 산업성	□ 자동차 ○ 지진 직후 전국적 조업정지, 기간공장을 중심으로 차종 · 조업일을 한정해서 조업을 재개 ○ 부품공급은 여전히 불안정, 향후 조업은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실시 □ 화학 ○ 지진과 정전의 영향에 의한 서플라이어(supplier)의 조업 정지 등으로 피재지역에서의 원료조달 곤란 □ 전기 ○ 피해지역으로부터의 반도체 · 전자 부품의 공급이 정체, 원재료의 조달이 부분적으로 곤란	○ 가설주택용 자재나 전선 · 케이블 자재 등의 라이프라인, 인프라 설비 유지관련 물자에 대해 안정공급 확보 노력중
농림 수산성	○ 지진 직후 긴급교통로의 지정에 따른 규제나 가솔린의 공급 부족에 의해 식료품이나 원재료 등의 물류가 정체, 현재 회복세 ○ 출하제한이나 섭취제한이 되고 있는 산지나 품목 이외의 청과물에 대해 도 · 소매단계에서 당초 입하량의 감소나 가격하락, 현재 회복세 ○ 국내합판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이와테 · 미야기의 합판공장이 피재, 비피해지역의 공장의 증산으로 가설 주택에 필요한 합판자재는 확보 가능 예상	○ 식품사업자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확한 정보제공, 신중한 대응의 요청, 농림수산성 장관이 국민에게 농작물등의 안전성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 ○ 주택자재와 관련, 관련 부처와의 회의 설치에 의한 검토 ○ 합판 등 가설주택용 자재에 대해 관련 업계에의 대응 협력 의뢰, 수급상황의 조사 및 정보제공

2-2. 피재지역 이외(전력공급 제한에 따른 영향)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경제 산업성	○ 반도체 · 전자부품, 화학, 비철금속, 소형재, 섬유, 제지 등의 산업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 자가발전 비보유업자는 단시간의 정전이라도 설비가동 불가, 계획정전에 의해 생산 계속에 지장 초래 – 24시간 조업형, 설비가동이 장시간 필요, 1개의 생산 공정이 장시간 소요	○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대규모 정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산업단체에 대해 에너지 절약에의 협력 의뢰 ○ 계획정전의 실시에 따라 국민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분의 계획의 공표나 대상지역 세분화 등 개선 조치, 철도 등은 변전소의 운용 등에 의해 가능한 악영향을 완화 대응 ○ 「전력수급대책본부」는 절전 유지 및 강화를 통해 계획정전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대책의 기본방향」을 책정하고 4월말 목표로 실효성있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 예정
농림 수산성	○ 식품제조공장 등 정전으로 조업의 일시정지나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 (특히, 일정한 온도관리가 필요한 냉장 냉동 시설이나 발효 등을 따르는 요구르트, 삶은 메주콩, 빵 등의 제조에 영향). ○ 지진 피해에 따른 외식 등의 업무용 수요의 침체, 계획정전의 영향(영업시간 단축)으로 화물운송 지연 ○ 계획정전의 영향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 단축에 따라 선어 수요 감소	○ 농림수산성은 경제산업성에 계획정전으로 인한 공장이나 시장 조업에 지장 문제를 피력, 정전시간대의 사전주지, 계획정전의 대상 제외 등을 요청
국토 교통성	○ 계획정전으로 수도권 철도 대부분의 노선에서 운휴 또는 상당한 운행 감축에 따라 통근 · 통학에 큰 지장 ○ 변전소의 운용이나 시간대 편성 등의 연구, 전구간의 운행 회복이나 통근 · 통학에 고심	○ 관계부처(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철도회사가 연계 · 협력하고, 전구간의 운행이나 통근 · 통학 확보에 노력

2-3. 피재지역 이외(대체공급에 의한 생산 확보)

국내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경제 산업성	□ 자동차 ○ 중부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의 부품공급원으로부터 대체 공급의 가능성은 높지만, 고점유율을 차지하는 부품 서플라이어의 생산 복구가 장기화하면 전국의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우려 □ 시멘트 ○ 서일본에서의 생산 및 수출분을 국내에 유용하여 대체 공급 가능	-
농림 수산성	○ 수도권의 우유 출하는 80%까지 회복, 계획정전 등으로 불완전 회복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주변지역에서 기준초과 방사성 물질을 가진 농산물이 판매 ○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및 지바현의 일부 시정에서 시금치, 모기기나 등의 출하 제한 실시(시금치는, 도쿄 중앙도매시장에서 입하량이 평년 대비 약 60% 정도) ○ 전국 각지의 조합에서 협력해서 증산 및 공급을 표명	○ 원료인 생유는 홋카이도에서의 공급을 포함해 광역적인 공급 실시 ○ 유업공장 가동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정전 예외 조치 ○ 시금치의 공급 확보가 행해지도록 관계단체에 요청 ○ 음료수 확보를 위해 관계단체에 미네랄워터 추가공급 의뢰
국토 교통성	○ 동북 태평양 해안에서 어선의 건조 · 수선을 하는 조선소가 괴멸, 피해지역 역외에서 수선 등이 이뤄짐	○ 가동가능한 조선소 조사 실시
국외		
경제 산업성	□ 화학 · 기계 ○ 해외 수입에 의한 대체를 검토하는 기업이 있음, 예를 들어 폴리에스텔에 사용되는 에틸렌 · 글리콜에 대해 4~6월에 수입할 가능성 있음	-

〈참고 2〉 동북지역 대지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수요측면)

1. 수요 급증에 의한 매진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경제 산업성	□ 소매업 ○ 수도권 소매점은 수요급증으로 부족물품 발생, 시간경과에 따라 수요 안정세 회복중	○ 생활필수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유통업계에 요청 완료
농림 수산성	○ 컵라면, 통조림 등 식료품이나 페트병 등 음료수가 일부의 점포에서 매진이 되고 있으나 현재 회복세 있음	○ 식품유통업계에 식료품의 적정유통의 확보를 위한 대응 요청 ○ 음료수 확보을 위해 관련업계에 미네랄워터의 수요증가에 따라 수입을 포함한 생산 · 공급의 확대를 요청 ○ 미네랄워터류의 표시와 관련된 JAS법의 운용 완화
국토 교통성	○ 미네랄워터류의 수요가 증가, 수입품이나 증산품에 대해 용기포장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미네랄워터류 표시와 관련된 JAS법 및 식품위생법 완화

2. 심리 악화에 의한 영향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경제 산업성	□ 소매업 ○ 고급의료품을 중심으로 매입 중지 경향, 백화점을 비롯한 점포의 매상이 약 20% 감소 □ 제조업, 완제품 회사에서 수주 감소 우려	–
농림 수산성	○ 지진 피해에 따른 외식수요의 침체, 계획정전의 영향(영업시간 단축)에 의해 운송 지연 ○ 계획정전의 영향(음식점 영업단축)으로 선어 수요 감소 ○ 소비자의 자숙 분위기로 경사 등 외식산업을 이용 및 매출 감소세	○ 자금대출을 포함한 복구대책 검토
국토 교통성	○ (항공) 국내선 · 국제선의 수요가 대폭 감소(국내외 항공 일부 결항)	○ 주요 공항에서 방사선 측정, 해외항공사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포괄적 · 체계적으로 공표(국토교통성 홈페이지내) ○ IATA나 JNTO 등 항공 · 관광관련 기관과의 링크

3. 허위 소문 등에 의한 영향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외무성	○ 재외공관 조사 결과, 50개국 이상이 일본 식품 등 수입에 대해 방사능검사의 실시, 수출증명서의 첨부 요구, 수입 정지 등 규제 강화	○ 원전사고에 따른 수출관련 조치로 ① 재외공관에 의한 정보수집, ② 대사관 · 국제기관, 과잉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정보제공 · 설명
경제 산업성	□ 제조업 ○ 해외 거래업자에게 방사선검사 혹은 안전성의 증명을 요구, 국내에서도 방사능 오염에 관한 문의	○ 자금대출을 포함한 복구대책 검토
농림 수산성	○ 출하 및 섭취제한 산지나 품목 이외의 청과물에 대해 도 · 소매단계에서 당초 입하량의 감소나 가격침체가 나타났으나 현재 회복세 ○ 후쿠시마현에서 원전사고에 의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이 조업을 자숙, 이바라키현 북부의 까나리에서 기준초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 ○ 해외에서 일본생산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나 검사를 강화	○ 식품사업자 등에 과학적 · 객관적 근거하는 정확한 정보제공, 농작물 등의 안전성에 관한 발표, 출하제한에 관해서 Q&A를 작성 및 게재 ○ 식품제조 · 유통 · 판매업자에 대해 출하제한의 대상지역이외의 품목이나 대상지역내의 대상품목이외의 품목에 대해 정보제공 강화 ○ 미야코현 등과 연계해 수산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 웹에 모니터링 검사 결과나 정확한 정보의 제공 ○ 해외에 정부조치나 검사결과 등 정보제공, 과잉한 규제가 없도록 제의
소비자청	–	○ 식품의 방사능검출에 대해 소비자청장이 소비자에게 허위 소문 등에 의해 혼란이 없도록 확실한 정보 제공 및 메시지 발송
국토 교통성	□ 해운 ○ 컨테이너 항로관련 외국선사를 중심으로 도쿄항, 요코하마항의 기항 취소, 기항 거부의 사례 발생 ○ 해외 발주자가 일본의 조선소에서 건조중의 선박에 대해 방사능물질의 계측을 요구 □ 항공, 국내선 · 국제선의 수요가 대폭 감소 □ 해외 및 국내 여행 취소 지속	□ 해운 ○ 외국선사에 대해 국토교통성 HP에 게재되고 있는 도쿄항, 요코하마항 등의 방사선량 측정결과 제공, 수송서비스의 지속을 요청 ○ IMO, 3월20일 「일본 항만에의 기항의 제한이 없다」의 언론 발표, 23일, 4월 1일 「방사선의 계측결과, 항만주변 건강상의 리스크는 없다」의 체결국에의 통지 및 웹 게시, 일본 해사협회(NK)에서 선박의 방사성 물질의 계측결과의 확인서를 발행 □ 항공, 주요 공항의 방사선측정 값, 운용상황 등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정보 게시(국토교통성 홈페이지) □ 관광, 방문 · 재팬 대상시장(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 긴급조사를 실시

4. 지진 · 해일 등에 의한 영향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국토 교통성	□ 주택 ○ 전괴 43,919동, 반괴 11,287동, 일부파손 173,999동 등의 주택피해 발생, 피재한 주택의 보수 · 재건이 필요 ○ 응급가설주택은 이와테현 1.8만호, 미야기현 3.0만호, 후쿠시마현 1.4만호, 도치기현 20호, 지바현 230호, 나가노현 40호 필요(합계 62,290호)	○ 피재 주택의 보수 ·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진단 및 상담 실시 – 주거관련 피해지역전용 무료 상담전화 설치 – 피재 주요도시에 상담창구 설치 – 현지에서의 무료진단 및 상담 ○ 응급가설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성 장관은 (사)주택생산단체연합에 2개월간 최소 3만호의 공급이 할 수 있도록 요청, 피재 각현의 필요 호수를 근거로 그 후 3개월간 3만호 정도의 공급을 준비 요청 ○ 「피재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촉진 등에 관한 검토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의 응급가설 주택의 공급을 촉진
농림 수산성	–	○ 임야청에서 관계단체 등에 지원 물자로서 목탄 · 연탄등의 공급 요청,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의 요청에 따라 7월까지 목탄(26톤), 목탄풍로 (1,300개) 공급 ○ 동북 삼림관리국에서 이와테현 · 미야기현에 스토브113대 등을 제공.

〈참고 3〉 동북지역 대지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고용측면)

1. 피재지역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후생 노동성	○ 재해구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중 해일 피해가 심했던 임해부의 취업자수는 약 84만명, 많은 수의 휴업이나 이직의 증가가 우려 ○ (3월28일~4월 10일) 상기 3개 현의 직업상담 건수는 69,088건, 사업주상담건수는 18,623건, 신규 졸업자의 내정 취소는 75건 등 증가세	○ 정부는 「피재자등 취로지원 · 고용 창출 추진회의」을 통해 긴급종합 대책(4월5일)으로서 「일본은 하나」프로젝트를 정리 및 실시 ○ 고용 창출 기금사업의 요건완화나 현지 우선 고용을 위해 협의회 설치나 헬로워크의 기능 확대,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 요건의 완화, 3년이내 졸업자 채용 확대 장려금이나 3년이내 졸업자 시범 고용 장려금의 확충 · 요건완화 등 실시
농림 수산성	–	○ 「피재자등 취로지원 · 고용 창출 추진회의」에서 제1단계 대책을 정리 ○ 복구 사업에서의 지역의 건설 기업의 수주 확보의 추진, 농림어업 이직자에게 대한 헬로워크에서의 적극 지원, 농림어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피재자의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결정 및 추진
국토 교통성	○ 동북지구의 피재 조선소의 종업원 2,112명(협력사 포함), 하청사업자 등도 상당한 피해 ·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조선업계에서 기타지역의 동업자로 수용 지원에 착수 ○ 선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특례조치나 고용조정 조성금 제도등의 설명회, 도도부현 노동국과 연계 실시 ○ 선원을 희망하는 피재자에 대해 전국의 선원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활용, 취직 상담 및 헬로워크 등과도 연계 실시.

2. 피재지역 이외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후생 노동성	○ 계획정전이나 물류정체, 부품부족 등의 영향으로 조업의 축소 · 정지된 사업소 존재, 일부에서는 피해지역이외라도 휴업등이 우려 ○ (3월28일~4월 3일)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이외의 사업주상담 건수는 10,214건, 신규 졸업자의 내정 취소 98건 등 증가세	상기 '후생노동성' 조치와 동일
농림 수산성	–	○ 「피재자등 취로지원 · 고용 창출 추진회의」에서 정리,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주거 확보, 농림어업 등의 취업기회 확보 등 추진

〈참고 4〉 동북지역 대지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물가측면)

1. 피재지역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농림 수산성	○ 동북지역 도정의 소매가격은 지진 이후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했지만 현재 지진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환	○ 야채(양배추, 양상추, 당근, 인삼),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에 대해 소매가격조사를 실시 예정, 향후 도정의 소매가격 동향을 주시
소비자청	–	○ 생활물자 등의 가격 · 수급동향에 대해 지진 이후 물가담당관 회의를 2회 개최하고, 각 부성과 연계하여 조사 · 감시 ○ 소비자청장, 냉정한 구매 행동관련 메시지 발신 ○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불요불급의 구입, 사재기 등을 자제하도록 소비자청이 경제산업성에 요청

2. 피재지역 이외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농림 수산성	○ 야채(양배추, 양상추, 당근, 인삼),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의 전국평균 소매가격은 지진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 ○ 도정 소매가격은 지진이후 일시적으로 키타칸토 및 수도권에서 상승했지만 현재는 지진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	상기 '농림수산성' 조치와 동일
소비자청	–	상기 '소비자청' 조치와 동일

〈참고 5〉 동북지역 대지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금융측면)

	경제적 영향	정부의 대응
금융청	○ 동북 6개 현 · 이바라키현에 본점이 있는 72개 금융기관의 영업점포 약2,700개 중 지진 직후(3월14일) 약 280개(약 10%)가 폐쇄 ⇒ 4월12일 시점의 폐쇄 점포는 약 140개 지점(약5%)	○ 금융기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 예금 증서, 통장을 분실했을 경우라도 예금자 확인을 통해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 – 대부조건의 변경이나 자금제공 등 신청 시, 최대한 노력 – 어음의 부도처분, 신속한 보험금 지불에 대해 배려 – 재해에 따른 부적절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감시 강화 –「개정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공포 및 시행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부조건 변경 등의 노력의무 부과)의 기한을 1년간 연장(11년3월말→12년3월말) – 이하와 같은 조치를 공표 · 유가증권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에 대한 특례조치 · 금융검사 메뉴얼 · 감독 지침의 특례조치 및 운용의 명확화 · 금융기관 등 보고의 제출기한의 탄력화
재무성	–	○ 정책금융공고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일본 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을 통한 위기대응 융자대상에 추가
농림 수산성	–	○ 대지진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융통 등을 위해 관계 단체에 의뢰 ○ 가축공제 및 원예시설 공제의 불입기한 등 연장, 공제금의 신속한 지불을 위한 조치 등을 위해 아오모리현, 기타 6개 현 및 같은 현내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통지 ○ 피재지역의 농업인에 대해 과수공제(수확공제) 및 밭농사물 공제의 지불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의 공포 · 시행
경제 산업성	–	○ 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안전네트워크 대부 시, 2011년도 예산을 활용하고 금리감면 조치, 금리 인하를 실시 (3월 31일) . ○ 공장단지시설 정비 등의 대부와 관련하여 계속사업이 곤란한 사업자에 대해 채권포기나 상환 유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속히 하도록 도도부현 지사 및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요청

Ⅳ 영국 (FY2011-12: 2011.4~2012.3)

1. 세제개편

* 이하 정리된 내용은 FY2011-12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세제 변동 내용이며, FY2010-11 예산안(6월)의 일부 세제 변동사항과 함께 연간 재정법안(Finance Bill 2011)으로 입법절차 진행 중

□ (소득세) 기업관련 공제 비율 및 자본취득세 면제 한도 확대 등

○ 기업투자감세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의 소득세 감면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 기업가 공제(Enterpreneurs' relief)의 생애한도를 500만파운드에서 1,000만파운드로 증액

- 기업가 공제 생애한도(lifetime limit)는 2010년 3월 정부예산안에서 기존의 100만파운드를 FY2010-11부터 200만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고 2010년 6월 정부예산안에서 다시 500만파운드로 증액한 바 있음

○ 자본취득세(Gapital Gains Tax)의 연간 면제 한도를 10,600파운드로 인상

□ (법인세) 법인세율 추가 인하 등 기업지원 확대

○ 1%p 인하 예정이었던 법인세율에 대해 추가로 1%p를 인하하여 FY2011-12에 26%, FY2012-13에 25%로 확정

- FY2014-15까지 매년 1%p씩 인하한다는 방침 유지

○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금감면비율을 2011.4월부터 75%에서 100%로 확대하여 총 감면비율 200%를 적용하고 2012.4월부터는 225% 적용

○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의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를 5년간 100% 감면

- 21개 지역을 새로운 기업촉진지구로 선정할 계획, 리버풀 등 11개 지역을 우선 선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2011년 6월에 확정할 계획

□ (은행세) 2012년부터 은행세율을 0.003%p 인상

○ 2011년 2월에 확정한 2012년 은행세율은 0.075%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재차 인상하여 0.078%로 수정

□ (간접세) 주류세, 담배세 인상 및 연료세 인상 연기

○ 2008년 예산안의 주류세(Alcohol Duties) 인상 계획은 2011.3.28부터 예정대로 물가인상을 초과하여 2% 인상

– 물가연동은 생산자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를 기준으로 함

○ 담배세(Tobacco Duties)의 경우 말아 피우는 담배에 대한 세율을 10%p 추가로 인상

– 2010년 3월 예산안에서는 담배세에 대해 물가인상 초과 2% 인상을 계획

○ 연료세(Fuel duty rates) 기본세율은 2011.3.23 이후 리터당 1페니 인하

– 2011.4.1에 적용되어야 하는 연료세 인상을 연기, 2012.1.1에 리터당 3.02페니 인상

□ 기타 조세행정 간소화에 대한 입법조치, 반조세회피 규정 입법화 등

○ 소득세와 사회보험기여금(NICs)의 조세행정 일원화 등 추진

○ 인지세 회피 대책 마련 등 반조세회피 규정 입법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FY2011-12 예산안

가) 경제 · 재정 전망

□ 예산책임청(OBR)[17]의 경제 · 재정 전망

○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 가을 전망치보다 0.4%p 감소한 1.7%로 전망

– 2010년 경제성장률도 2010년 가을 전망치보다 0.5%p 하향 조정

– 2011년 물가상승률은 3.9%로 2010년보다도 0.5%p 상승할 전망이나 2013년 이후 목표치인 2.0%를 유지

〈표 2-Ⅳ-1〉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97~'07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GDP 성장률(%)	2.9	1.3	1.7	2.5	2.9	2.9	2.8
소비자물가(CPI)	–	3.4	3.9	2.2	2.0	2.0	2.0

출처: HM Treasury, Budget 2011

○ 공공부문의 순차입은 FY2011-12에 GDP의 7.9%, FY2015-16에 1.5%로 예측

– 2010년 가을 전망치와 비교하여 다소 적자규모가 확대됨

• 2010년 가을 전망치 : FY2011-12 7.6%, FY2015-16 1.0%

– 경기조절된 경상재정수지는 FY2014-15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정부 재정건전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FY2015-16까지 경기조절된 경상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재정건전화 목표

17) 2011.3.22일 예산책임청 관련 법률(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이 국왕의 재가로 확정되어 한시조직에서 영구조직으로 변경되었음

(fiscal mandate)로 설정하고 2010년 예산안(6월)에서는 FY2015-16에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의 누적 부채 규모는 FY2011-12에 GDP의 66.1%이고, FY2013-14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일반정부기준의 총채무규모는 FY2011-12에 GDP의 84.1% 규모로 예측

〈표 2-Ⅳ-2〉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실적	전망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	11.1	9.9	7.9	6.2	4.1	2.5	1.5
경상재정수지	-7.6	-7.1	-5.8	-4.5	-2.7	-1.2	-0.2
기초재정수지	-9.2	-7.1	-5	-3.5	-1.3	0.3	1.3
경기조정 순차입	8.9	7.4	5.3	3.7	2.0	1.0	0.5
경기조정 경상재정수지	-5.3	-4.6	-3.2	-2	-0.6	0.4	0.8
총 정책결정효과		0.0	0.0	0.0	0.0	0.0	0.0
일반정부(Treaty) 재정적자	11.4	9.8	7.9	6.2	4.1	2.6	1.6
채무							
공공부문 순부채	52.7	60.3	66.1	69.7	70.9	70.5	69.1
일반정부(Treaty) 총채무	71.2	78.7	84.1	87	87.2	85.7	83.5
생산갭 (Output Gap)	-4.2	-3.4	-3.9	-3.5	-2.8	-2.0	-1.3

출처: HM Treasury, Budget 2011

나) 2011 예산기조

□ FY2011 예산안은 경제 성장과 공정성을 기조로 함

○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공정한 조세제도와 사회적 유동성 지원, 기업성장을 위한 경쟁적 조세제도 마련, 투자 장벽 제거 등을 계획

○ 2011년 예산안의 정책으로 세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감축 효과는 거의 없음

– 세입정책으로 FY2011-12에 총 6억 2,500만파운드의 수입이 증가되는 반면 지출정책으로 총 6억 3,500만파운드를 지출

– 오히려 FY2011-12에는 세입, 지출 합계 1,000만파운드의 지출확대 효과가 나타남

〈표 2-Ⅳ-3〉 2011년 예산안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조세정책	+625	+85	+295	+115	+355
지출정책	-635	-350	-270	-230	-
총 정책효과	**-10**	**-265**	**+25**	**-115**	**+355**

출처: HM Treasury, Budget 2011

□ (경제 안정 및 성장)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기업 지원, 혁신 강화 등 종합대책 수립

○ 새로운 국제적 자본이동 과세규정(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을 통해 영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해외 기업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 조세간소화청(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의 권고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43개의 과세감면제도 폐지

○ 연간 3억 5,000만파운드의 비용이 발생되는 특정 규제 방안 철회

○ 2011.4월부터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세금감면 비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기업투자제도와 벤처자본신탁(Venture Capital Trusts) 제도 개선

○ 과학자본(science capital) 개발에 1억파운드 투자

○ 도로사업에 신규 2억파운드를 배정하고, 혹한으로 인한 하수구 보수가 필요한 지자체에 1억파운드 지원

○ 향후 2년에 걸쳐 추가 8만개의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체험관과 향후 4년 동안 5만개의 인턴 일자리(apprenticeship) 확보 계획

□ (공정성) 공정하고 간소한 조세제도와 연금 및 사회보장급여제도 강화 등

○ 65세 미만 인적공제를 2012.4월부터 630파운드 추가 인상하여 8,105파운드까지 인상

○ 간접세의 물가연동 기준을 2012.4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변경

○ 연료세 리터당 1페니 인하

○ 미래 연금수급자들을 위한 국가연금제도 개혁 추진

– 주(weekly) 140파운드 정도의 기여 단일형(contributory single tier) 연금에 대한 선택사항 포함

○ 모기지 이자지원제도를 1년 추가 연장하고, 첫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총 2억 5,000만 파운드 배정

다) 세입 · 세출 규모

□ FY2011-12 공공부문 총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38.1%로 전년보다 약 0.9%p 증가하였고, 총관리지출(TME)은 GDP 대비 46.0%로 전년보다 약 1.1%p 감소

○ FY2011-12 총수입은 5,890억파운드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지속적으로 추진된 세입확보 조치에 따라 전년보다 약 405억파운드 증가

– 부가가치세 인하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입이 전년보다 약 190억파운드 증가

–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보다 각각 80억파운드, 50억파운드 증가 예측

[그림 2-Ⅳ-1] FY2011-12 유형별 세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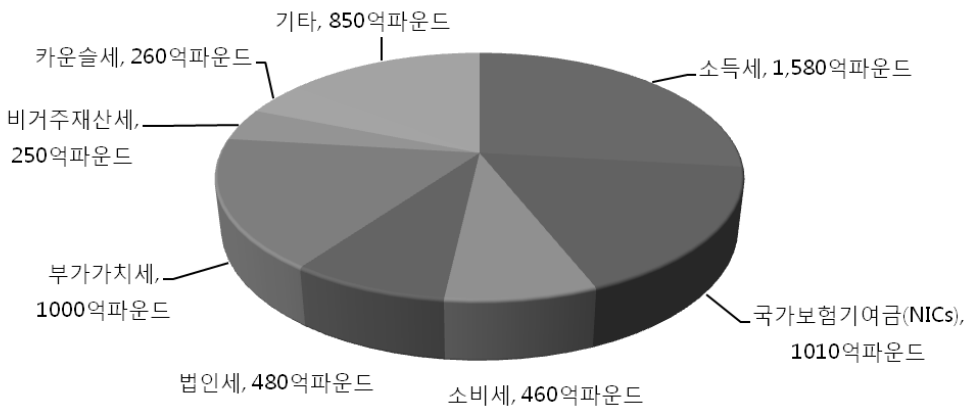

주: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경상세입 총액과 각 세입유형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HM Treasury, Budget 2011

○ FY2011-12의 총관리지출(TME) 총액은 7,104억파운드이며 전년에 비해 약 16억파운드 증가에 그쳐 GDP 대비 총관리지출 규모는 1.1%p 감소함

– 전년보다 사회적 보호 분야에서 60억파운드, 의료분야 40억파운드, 채무이자 60억파운드, 교통 10억파운드, 기타 10억파운드 증가

– 나머지 분야의 지출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소

• 주거 및 환경 30억파운드, 공공질서 및 안전 20억파운드 감소

[그림 2-Ⅳ-2] FY2011-12 기능별 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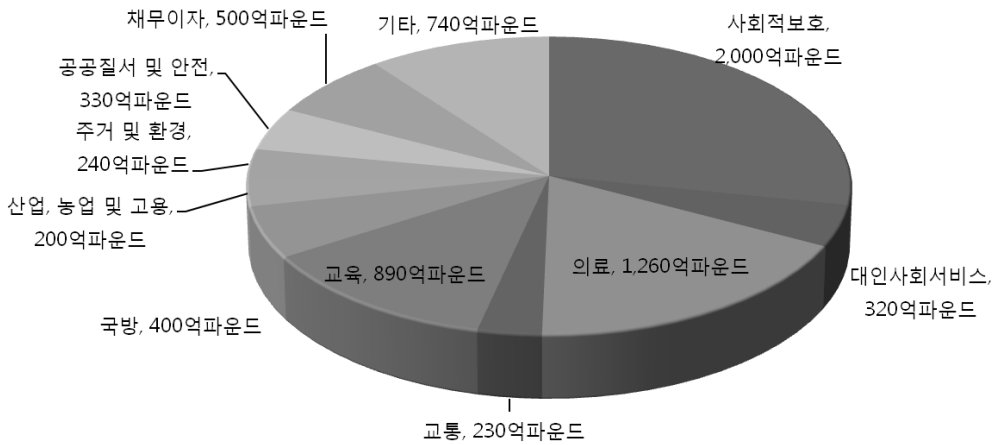

주: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총관리지출(TME)과 각 분야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HM Treasury, Budget 2011

□ 세입확대와 지출억제 방침은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계획

○ 경상세입은 FY2011-12 이후 GDP 대비 38%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총관리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FY2015-16에는 FY2010-11보다 약 7.2%p 낮아질 전망

〈표 2-Ⅳ-4〉 공공부문 예산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전 망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FY2015-16
경상세입	**548.5**	**589.0**	**620.0**	**660.0**	**697.0**	**735.0**
GDP %	37.2	38.1	38.1	38.4	38.5	38.4
총관리지출(TME)	**694.4**	**710.4**	**720.2**	**730.1**	**743.6**	**763.8**
GDP %	47.1	46.0	44.3	42.5	41.0	39.9
자원(경상)지출	**632.8**	**656.7**	**669.6**	**682.4**	**694.6**	**713.4**
연간관리지출(AME)	287.4	314.4	324.9	333.3	346.4	360.8
부처별지출한도(DEL)	345.4	342.3	344.7	349.1	348.2	352.5
감가상각 제외 DEL	326.1	326.3	327.1	331.1	329.0	333.1
자본(투자)지출	**61.6**	**53.7**	**50.7**	**47.7**	**49.1**	**50.4**
연간관리지출(AME)	11.5	9.2	8.0	8.5	8.8	7.7
부처별지출한도(DEL)	50.0	44.5	42.6	39.2	40.3	42.7

출처: HM Treasury, Budget 2011

2) FY2011-12 본세출예산안

□ 본세출예산안에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총 지출은 5,128억파운드이며, 약 2,025억파운드의 지출은 비의결 지출에 해당함

○ FY2011-12의 지출 승인 요청 규모는 FY2010-11에 비해 600억파운드 정도 감소

○ 의결대상 지출은 부처별 지출한도(DEL) 약 3,102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 약 1,465억파운드, 비예산(Non-budget) 약 560억파운드로 구성

○ 현금주의로 조정한 순현금소요액은 약 4,498억파운드 규모임

〈표 2-Ⅳ-5〉 2011년 본세출예산안 요약

(단위: 십억파운드)

	의결	비의결	합계
자원(Resource) 부처별지출한도(DEL)	271.2	68.9	340.1
감가상각	15.1	1.4	16.5
자본 DEL	38.6	4.7	43.3
자원 연간관리지출(AME)	138.2	127.5	265.7
자본 AME	8.3	1.4	9.7
비예산(Non-budget)[1]	56.0	해당없음	56.0

주: 1) 권한이양행정부(devolved administrations)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급금 포함. 권한이양행정부의 지출은 비의결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에 포함되어 있음

출처: HM Treasury, 2011 Press notices 45/11

□ FY2011-12 본세출예산안은 예결산 및 자원회계 정비사업(Alignment Project)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예산체계에 기초하여 작성

○ 세출예산안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비의결 지출 내역을 포함

– 비의결 지출에는 국가보험기금 등 통합국고자금에서 재원을 직접 조달하지 않는 지출프로그램이나 통합국고자금의 연간 승인 면제 대상 지출이 포함되어 있음

나. 추경

□ 변동사항 없음

다. 결산

□ 변동사항 없음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예산책임 및 감사법(Budget Responsibility & National Audit Act 2011)[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발표 및 의회 제출 (2011. 4. 11)

○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은 아래 내용들을 포함한 예산책임헌장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정부의 재정정책과 채무관리정책 목표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 재정현황 및 예산보고서(FSBR)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 예산책임청(OBR)의 역할 (단, 임무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음)

○ 재정건전화 목표

–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는 5년 이내에 경기조정된 경상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고 FY2015-16까지 공공부문 순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임

– 이러한 목표는 2010년 6월 예산안에서 표명된 것으로 예산책임헌장에 포함되어 법률화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재정건전화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헌장을 수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회계연도 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FY2011-12부터 예산교환제도(Budget Exchange System) 도입 (2011 예산안, 2011.3.23)

○ 적정한도(prudent limit) 내에서 당해 연도의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기존의 차년도 이월(End Year Flexibility) 제도는 폐지

○ 단, 예산이월은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허용되며, 1년을 초과하는 회계연도로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 부처가 불용예산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축적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임

18) 예산책임 및 감사법은 재정법(Finance Act) 1998의 예산 및 재정안정화 관련 규정과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을 대체한 법규로 2010년에 발의되었으며, 2011년 3월 최종 승인됨. 관련 내용은『재정동향』4호 참고.

□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발표한 복지제도 개혁안 입법 추진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의회 제출 (2011. 2. 16)

– 주요 내용은 2010년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에서 발표된 바 있음. 중기재정계획의 복지개혁안은『재정동향』4호 참고

○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 도입과 장애생활수당을 대체할 독립생활급여(personal independence payment)에 대한 규정 등 주요 개혁내용 입법화

– 지역주거수당의 물가연동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설정

– 기여형 고용지원수당에 대해 12개월 기간한도 설정

– 복지급여 총 한도(caps) 규정 : 연간 가구한도 26,000파운드

○ 복지개혁법안의 재정절감 기대효과

FY2012–13	FY2013–14	FY2014–15
9억 6,000만파운드	25억 1,000만파운드	38억 7,000만파운드

□ 연금저축공제 및 이중과세에 대한 법률 규정을 재정비하여 해외 연금 저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연금지급금 또는 유사 보상금(remuneration)에 대한 과세 범위 설정

○ 2011년 재정법안(Finance Bill)에 관련 규정 신설, 2011.4.6부터 즉시 효력 발생

나. 경제성장 및 경기부양

□ 예산안 발표와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포괄적 정부정책 제시

○ 2011.4월부터 설비 등에 대한 자본공제를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여 신규 장비투자를 촉진

○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의 가용자금을 30억파운드 증액

○ 2014년까지 11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증명 제공하는 신규 기능대학(University Technical Colleges) 프로그램을 24개 이상으로 확대

○ 그 외 기업촉진지구 신규 21개 지역 지정, 신규 인턴십 및 청소년 직업체험관 확대 등

다. 기타 이슈

□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재원 5,000만파운드 입찰 개시 (2011. 3. 4)

○ 2010년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에서 동 사업에 2015년까지 총 5억 3,000만파운드 규모의 재원 배정

□ 정부, 공공부문 임금 검토보고서의 임금인상 제안 수용 (2011. 3. 21)

○ 공공부문 임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연소득 21,000파운드 이하의 FY2011-12 임금 인상분으로 250파운드를 제안

○ 2010년 6월 예산안에서 FY2010-11 공무원 임금을 동결 (연소득 21,000파운드 이하는 제외)

– 연소득 2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는 2년간 임금이 동결되며, FY2014-15까지 33억파운드의 예산 절감을 예상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 세제개편

가. 프랑스 2011년 재정법 확정

□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2010년 12월 29일, 2011년 재정법(2011 Finance Act) 4차 개정 및 2010년 재정법(2010 Finance Act) 등을 승인함

○ 승인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관련 세제혜택 축소)

□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 시 실제 발생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9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일반규정 적용

□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이 차입을 하는 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의해서 보증되는 경우 특수한 관계가 없는 회사(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란 주주나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함

○ 도입 배경: 실제적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LBO* 방식의 기업 인수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프랑스 과세당국은 실질투자 없는 인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한도를 제한함

* LBO(Leverage Buy-Out):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즉,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이를 인수

대가로 지급할 경우 실제적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임

□ (배당소득공제제도) 자회사 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교환받은 주식은 배당소득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 계속 보유중인 것으로 의제됨

○ 배당소득공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란 수입배당금의 9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회사 주식을 최소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식을 2년간 보유하지 않아 배당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연결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자본이득과세제도) 특수 관계있는 법인 간에 지급한 지적재산권의 대가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과세제도 적용

○ 관련 자본이득의 경우 장기 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자본이득과세 제도를 적용

○ 또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장기자본 이득의 범위에 특허권과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개량권(improvements)을 포함시킴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용료(royalty)에 대한 손금부인 규정이 폐지됨

○ 판매 후 리스한 건물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판매 후 리스: 리스자산을 처분한 후 그 리스자산을 리스하는 거래

(소득세 인상 및 세제혜택 축소)

□ 소득세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자본이득세율 인상

○ 2011년에 신고할 2010년 소득세에 대한 최고소득세율을 40%에서 41%로 1%p 인상

〈표 2-Ⅴ-1〉 개전 전 후 소득세율 비교

과세소득구간 (EURO)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0 ~ 5,963	0	0
5,963 ~ 11,896	5.5%	5.5%
11,896 ~ 26,420	14%	14%
26,420 ~ 70,830	30%	30%
70,830 초과	40%	41%

자료: 프랑스 국세청
http://www.impots.gouv.fr/portal/dgi/home?pageId=home&sfid=00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11년 1월 1일 이후 18%에서 19%로 인상

○ 자본이득세율(배당금, 이자, 그리고 자본소득 등 기타)이 2011년 1월 1일 이후 18%에서 19%로 인상

– 부동산의 자본이득세율도 2011년 1월 1일 이후 16%에서 19%로 인상

□ 소득세 관련 각종 세제혜택 축소

○ 주택 구입 목적 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2011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 및 2011년 9월 30일 이후 구입한 주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정신적 피해(moral damage)에 대한 보상금이 10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시장성 있는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소액자본이득 비과세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지

– 이전 규정에 따르면 25,830유로 미만의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음

○ 조세감면한도(Overall tax reduction limitation)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 20,000유로 + 과세소득의 8%에서 2011년 18,000유로 + 과세소득의 6%로 축소됨

– 조세감면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조치를 받음으로 인해 감소되는 조세부담 감소액의 총량에 대한 한도

○ 신혼부부들에게 결혼한 당해에만 그리고 이혼부부들에게 이혼한 당해에만 적용되던

세금 혜택 폐지

- 따라서 새로운 법에 의하면, 결혼하는 부부는 각각 따로 2011 한해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거나 혹은 함께 당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하는 해의 전체 기간에 대해 각각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 기타 세제개편

○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태양에너지 생산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를 절반으로 축소(50%에서 25%)

○ 중소기업에 대한 부유세 혜택(wealth tax credit)을 75%에서 50%로 축소

- 세금혜택은 일정 조건(투자 종류, 자산 규모, 고용인의 수 등)을 따르도록 함
- 기존 연구와 개발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나, 처음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첫해 세금공제는 50%에서 40%로, 둘째 해는 40%에서 35%로 축소

○ TV, 전화 및 인터넷 통합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율('triple play' 서비스)은 표준세율인 19.6%를 적용

- 이전 규정에 따르면 특정 통신서비스의 경우 경감세율인 5.5%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나 통합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명확하지 않았음

○ 2011년부터 체계적 위험세(Systematic risk tax)로 알려진 은행세를 도입함

-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동법의 과세표준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며 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나. 프랑스의 온라인광고세(구글세) 도입

□ 프랑스 정부는 자국에 근거를 둔 회사(france-based company)가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의 1%를 온라인 광고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온라인광고세(또는 구글세)를 도입

○ 2010년 12월 29일, 구글세의 신설이 포함된 2011년 재정법(2011 Finance Act)이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통과

- 사르코지 대통령이 2010년 초 온라인 광고세 도입 주창 : 구글 프랑스 지사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어 프랑스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
-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예산장관은 2010년 11월 15일, 구글세의 시행을 2011년 7월 1일로 미룰 것이라고 밝힘

○ 세수는 5,000만유로로 예상되며 이중 4,500만유로가 구글에 과세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1월 6일, 문화부 장관은 예술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기반 사업을 지원하여 관련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온라인광고세 수입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다. 사회보장기여금(social contribution) 인상

□ 400유로 이상의 연금(retraite chapeau) 급여만 과세 대상이 됨

○ 세율은 소득이 400유로와 600유로 구간에는 7%, 600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14%

라. 부유세 개편 (Taxation of Wealth, ISF[19])

□ 2011년 5월 11일,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 개편을 확정하였고 2011년 6~7월경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음

○ 부유세 개편은 2007년부터 논의된 것으로 경쟁력과 공평성 제고 및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과 수렴을 도모하기 위함

○ 부유세 대상에는 건물과 부동산, 금융 자산, 귀금속, 가구, 자동차, 요트, 비행기 등이 있으며, 프랑스 국민이 보유한 해외 자산 외에 미성년자가 보유한 재산도 포함

○ 개편 전후 세율 비교

- 개편 후 세율구간을 더 세분화하여 기존의 급격한 재산세 증가 방지, 순자산이 130만유로 이상의 경우만 과세
- 세율은 기존 0.55%~1.8%(표 참고)에서 두 개의 세율(0.25%, 0.5%)로 단순화했으

19) Impo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며, 300만유로일 이상일 경우에만 0.5% 세율을 적용 (2012년부터 적용)

〈표 2-Ⅴ-2〉 개편 전 후 부유세 세율

(단위: 백만유로, %)

개정전 (2011년까지)		개정후 (2012년부터 적용 예정)	
과세소득구간 (EURO)	개정 전 세율	과세소득구간 (EURO)	개정 후 세율
0~0.8	0	0~1.30	0
0.8~1.31	0.55	1.30~1.35	0.25
1.31~2.57	0.75	1.35~3.00	〃
2.57~4.04	1.00	3.00~3.10	0.5
4.04~7.71	1.3	3.10~3.30	〃
7.71~16.79	1.65	3.30~5.00	〃
16.7~초과	1.80	5.00~10.00	〃

○ 사르코지 정부는 Tax Shield(박스 참고)를 부유세와 함께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결정

– 사르코지 대통령은 "독일은 부유세 폐지 시 Tax Shield도 폐지했다. 부유세가 없다면 Tax Shield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세제를 독일 세제에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10년 11월 16일 언급함

▣ 사르코지 대통령과 Tax Shield 제도

○ 프랑스의 "일반세법(CGI)"은 직접세 납부액 총액이 연간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에 자발적으로 납부한 직접세*총액이 연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혹은 그 다음해에 초과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부유세, 부유세, 거주세 등

○ 고소득자들에 대한 기존 감세혜택인 Tax Shield를 폐지하더라도, 동 부유세율 인하 정책으로 인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는 논란이 있음

– 2009년 부유세 수입은 약 30억유로, Tax Shield로 환급한 지출은 약 6억유로에 불과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통상 5~6월경 발표

나. 추경

□ (Exceptional Budget) 특별 계정으로 아이보리코스트에 4억유로 특별 지원 결정

○ 크리스티 라가드 (Christine Lagarde) 재경부 장관은 프랑스 통화권 국가들의 춘계장관 회의 참석해 아이보리코스트의 재건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 결정

다. 결산

□ 통상 5~6월경 발표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OECD의 2011.1.31 프랑스에 대한 경제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보고서에서 제시한 재정건전화 관련 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09년과 2010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GDP 대비 7%를 상회했으며 이는 주로 자동화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프랑스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83억 유로와 96억 유로에 달함

○ 2009년 역사상 최고치 재정적자(GDP 대비 7.9%)를 기록했던 프랑스는 2011~14년 다년간예산계획을 발표,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로 억제하며, 2014년에는 2%까지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임

○ OECD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 OECD 사무국은 재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자국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음

○ OECD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조세가 높아 이에 대한 세율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500여개에 달하는 조세지출예산을 단순화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 OECD 보고서(Economic Survey of France, 2011)에서는 프랑스의 재정수지 악화 중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성을 역설

○ 올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경기는 재정과 고용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은 적자를 2014년까지 GDP 대비 2%로 감소시키고 부채를 GDP 대비 90% 이하로 낮춰 안정화할 계획이나, 지속적인 부채 감소를 위한 계획은 중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림 2-Ⅴ-1] 프랑스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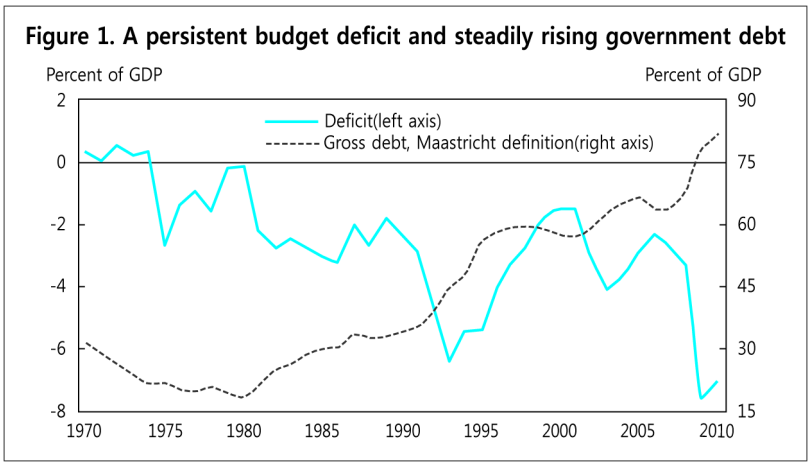

출처: OECD와 프랑스 통계청 (INSEE)

○ 재정건전화와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핵심

– 현재의 중앙정부와 사회보장 예산 프레임워크는 과거에 지속적인 적자를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 예산안 그리고 독립적인 재정위원회가 필요

– 적자 감소는 주로 지출통제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비효율적 사업 재검토를 통한 정부 효율성 개선, 연금 부문에 있어 2010년 개혁 외에 장기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 필요

* 가령, 기여기간은 평생소득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연금제도는 더욱 투명하고 단순하게 운영될 필요

– 조세제도는 성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특히 왜곡이 가장 작은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환경세가 우선 개편 대상임

- 세수 기반은 더욱 확대하고 비효율적 지출 축소
- 실업수당 감축을 위해 고용은 증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간의 조건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함

□ 2011년 3월 23일, 국무총리는 재정에 관한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 관련 헌법초안을 각료회의에 발표, 균형재정(balance of public finances) 달성을 위해 새로운 법률 체계와 법 기구(legal instrument) 제정

○ 이는 여름 전에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세 개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률 체계는 재정법과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에 적용, 재정을 통제하는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수정

○ 첫째, 각 법에 최소한 3년 기간을 도입, 해당 기간 동안 각 프로그램이 매년 수익과 지출 균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에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통제

– 동법에서 제시한 수익과 지출의 균형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안은 헌법위원회의 견책 대상

○ 두번째 규정은 일반법에서 세금 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번째 규정은 안정화 보고서를 EC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의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상원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강력한 재정건전화 목표(2011년 6%, 2012년 4.6%, 2013년 3%)을 가지고 있으며, 위 내용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

□ 2011-2014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Stability Programme 2011-2014)

○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안정화 프로그램 2010-2013 보고서에 담아 2010년 1월 경제·재무각료이사회에 제출 (2011년 GDP 대비 6%, 2012년 4.6%, 2013년 3%)

– 7월 이사회는 프랑스가 이사회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고 승인하고, 적자 감축을 위해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결정

– 정부는 조세법의 허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공약에 따라 지출 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하고 있음

– 2011년 적자를 GDP 대비 6% 달성을 위한 조치들이 2010년 12월에 통과한 채 재정

법과 사회보장예산안에 반영됨

– 2011년 경제성장률은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고, 2010년 최종 재정적자 는 GDP 대비 7%로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10년 재정상황이 예상보다 호전되었다고 발표

○ 2010년 재정법(Finance Bill)의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는 8.5%였으나 확정치는 7.0%로 낮아짐

– 이는 경제와 고용 회복을 시사하며, 또한 2010년 세제개혁 비용이 예상보다 낮았던 것을 반영

○ 2010년 부채는 GDP 대비 81.7%, 2011년 예산안(Budget Bill) 잠정치보다 1%p 낮은 수준

○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지속적인 정부정책개혁(RGPP)과 조세허점 개선 통한 재정 개선

– 재정 거버넌스 개선 위해 헌법 개정 제안

– 2010년 기타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연금개혁과 잠재성장률 제고 등 재정의 장기 지속성 개선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재경부 장관은 2012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5%로 하향 조정

○ 검토 결과, 전 세계 수요는 기대치 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현재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도 하향조정한 원인

○ 올해 경제성장 전망은 2%로 유지

○ 그 외 올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5.7%로, 2012년은 4.6%로, 2013년까지 3%로 점차 감소를 목표로 함

– 프랑스는 유럽연합 집행기관에 연례 적자감소계획을 제출하는데, 2012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86%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3년에는 85.6%로 감소

다. 기타 정책이슈

□ (G20 재무장관 첫 모임) 글로벌 경제 현황 외에도 국제금융체제의 지속가능성과 균형을 위한 프레임워크, 금융규제, 개발, 기후변화 및 상품가격의 불안정성 등을 논의

○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를 위해 거시적 불균형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들에 관해 합의

– 지표는 국가재정(채무, 적자), 민간부문의 금융 건전성, 균형 재정, 환율 등 넓은 범위의 불균형을 포함

□ 사회보장계획예산 적자 소폭 감소

○ 2010년 사회보장예산(general scheme of Social Security)은 작년 10월 예측치보다 약 8억유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6월 말 감사이사회의 최종 승인 예정

– 감소는 지출 통제를 통해 달성한 것으로, 의료보험지출목표(ONDAM)[20]를 최초 달성

20) 1997년 이후 평균적으로 15억 유로 적자

Ⅵ 독일 (FY2011: 2011.1~2011.12)

1. 세제개편

가. 은행세 도입

□ 독일 내각, 은행세(금융안정 분담금) 관련 법령 추가개정 (2011.3.2.)

○ 동 법령은 지난해 말 발효된 구조조정기금법(Restructuring Fund Act)을 추가 개정한 것으로 은행세율, 연간 은행세 규모, 은행세 부과과정등의 내용을 포함

– 지난해 8월 은행구조조정법(bank restructuring law) 정부안이 내각을 통과하고 12월 9일 이와 관련된 구조조정기금법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 초 구조조정기금 조성

– 부과되는 은행세는 구조조정기금에 반영되어 향후 경제위기시 은행업계의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

– 은행세 부과대상기관은 독일의 모든 은행이며 부과대상은 비예금성 부채로 국한하고 이를 FMSA(Federal Agency for Financial Market Stabilisation)가 관리함

– 구조조정기금의 목표는 700억유로에 달하며 동 기금으로 부족할 시에는 독일의 모든 은행에게 연간 분담금(annual contributions) 외에 특별 분담금(special contributions)을 부과할 예정

• 특별 분담금은 은행의 지난 3년간 연간분담금 평균치에 의해 결정됨

○ (은행세율) 부채규모별로 차등하여 부과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

– 총부채규모 100억유로 이하의 은행에 대해서는 0.02%, 100억유로~1,000억유로의 경우는 0.03%, 1,000억유로 초과일 경우는 0.04% 은행세율 적용

– 단, 파생상품은 0.00015% 세율을 적용할 방침

○ (연간은행세 규모) 금융기관의 연간 분담금 규모는 은행의 전년도 총 수익의 최대

15%로 제한하여 은행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연간분담금의 최소 5%는 부과되어야 하며 총분담금이 연간 분담금 상한선(전년도 총수익의 최대 15%)을 상회하여 분담금 상한선 액수만 지불한 경우에 그 차액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익년으로 이월되어 부과
- 독일의 총 은행세 규모는 연간 약 8억~15억유로로 예상

○ (은행세 부과과정) 각 금융기관별 연간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자료는 회계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매년 7월 15일 이전에는 FMSA에 보고해야 함

- 각 금융기관별 연간분담금 규모는 매년 9월 30일 공고

○ 동 법령은 현재 의회에서 검토중

2) 조세간소화법 입법추진

□ 독일 연립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조세간소화법(안)이 2011년 3월 18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검토중

○ 법(안)은 2011년 7월에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법(안)은 주로 개인납세자의 세무신고절차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짐

- 특히 서류 작업에서 IT에 기반하는 절차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조세간소화법(안)을 사업자와 일반 납세자 관련 사항으로 구분하여 아래에서 설명함

□ 사업자 관련사항

○ 개정법(안)에서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정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서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특정한 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함
  - 유효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란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함
- 개정법(안)에 따르면, 유효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VAT invoice)는 전자서명 없이 E-mail로 발송될 수 있음

- 따라서 E-mail이나 E-mail에 첨부된 전자문서 (예를 들어, PDF 문서)는 전자서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음

○ 개정법(안)은 법적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답변(tax ruling)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함

–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적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답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해당 건(matters)이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결정됨

– 개정법(안)에 따르면, 해당 건의 평가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법적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답변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정법(안)은 사업소득자와 관련 있는 다른 신고사항을 간소화함

– 현행 법률에 따르면, 독일의 납세자는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거나 파트너십이나 독일에서 설립되지 않는(not resident)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관할권을 가진 독일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개정법(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거나 파트너십이나 독일에서 설립되지 않는(not resident)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법(안)은 주주투입자본 계정의 변화가 있던 연도에만 주주투입자본 계정을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함

– 주주투입자본 계정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회사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임

– 주주가 투입한 자본은 세무 목적상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 이는 주주투입자본의 배분을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금에서 배제하기 위함
- 현행 법률에 따르면, 배당금의 원천이 이익(profit)이 아니라 주주가 투입한 자본(capital contribution)인 경우에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현행 제도에 따르며, 주주투입자본 계정상 변동이 없더라도 법인은 주주투입자본 계정을 매년 신고하여야 함

– 개정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주투입자본 계정의 신고를 간소화하여 실제 주주

투입자본 계정의 변화가 있던 연도에만 신고하도록 함

□ 일반 납세자 관련사항

○ 개정법(안)에서는 근로소득자의 표준소득공제 금액을 인상시킬 계획

– 근로소득자의 표준소득공제(standard lump sum tax deduction) 금액은 현행 920유로에서 1,000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 개정법(안)에서는 분리과세되는 자본투자소득을 공제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소득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인하할 계획임

○ 개정법(안)에서는 개인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격년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인 납세자가 매년 해야 하는 세무신고의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2012년 예산편성지침 내각 결의 (2011.3.16)

○ 독일 정부는 지난해 여름 결의된 Top-down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 연방정부 예산 및 2011~2015년 경제계획 관련 첫 정부지침 초안을 내각에서 결의

– 이는 독일의 구조적 신규차입 규모를 2016년까지 GDP의 0.35%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보고 있음

○ 부채제한이 예산안의 핵심 기준임

–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지출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신규부채를 감소

〈표 2-Ⅵ-1〉 2011-2015년 예산전망

(단위: 십억유로, %)

	2011	2012(지침)	중기재정계획		
			2013	2014	2015
재정지출	305.8	303.8	305.7	304.4	309.5
전년 대비 증가율		-0.7	0.6	-0.4	1.7
2011-2015년 연평균 증가율	0.30				
재정수입					
조세수입	229.2	243	252.9	261.4	270.5
세외수입	28.2	29.3	30.5	27.6	25.8
순차입	48.4	31.5	22.3	15.3	13.3

출처: 독일재무부, Eckwertebeschluss zum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12 und zum Finanzplan 2011 bis 2015, 2011년 3월

○ (경제전망) GDP 성장률은 2011년 2.3%, 2012년 1.8%, 2013-2015년 1.6%로 전망

○ (예산전망) 신규 순차입규모는 2011년 484억유로, 2012년 315억유로에서 2015년에는 대폭 감소한 133억유로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세수입은 2011년 2,292억유로에서 2015년 2,705억유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재정지출은 향후 5년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독일 정부는 '에너지 및 기후기금'에 특별예산을 편성함

- 원전연료세의 수입을 에너지 공급 지원과 국제 기후 및 환경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

○ (분야별 지출) 동 지침에서 독일 내각은 교육 및 연구, 개발 분야의 지원은 증가시키기로 했으나, 국방 분야의 지출은 감소키로 함

- 교육 및 연구 분야에 2013년까지 120억유로를 추가지원하고, 2014~2015년에는 동 지원 수준을 유지하여, 2015년 동 분야 지원금이 GDP의 10%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2012년 개발지원금은 개발부와 유로 외교부에서 각각 5억 6천만유로, 1억 9천만유로를 지원하기로 함
  - 독일 정부는 '에너지 및 기후기금'에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원전연료세의 수입을 에너지 공급 지원과 국제 기후 및 환경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
  - 2015년 '에너지 및 기후기금'을 포함한 독일 개발지원금은 EU 개발지원 목표 GDP 0.7%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
- 내무부는 2O12년 사이버 IT보안 프로그램, 테러위협 방지책 및 아프간 경찰 훈련에 추가로 4,750만유로를 지출할 예정
- 반면, 국방부의 경우는 국방개혁을 통해 2011~2015년 83억유로를 긴축할 예정

□ FY2012 예산안은 통상 7월 발표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FY2010 결산보고서는 통상 6월 발표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독일내각, 수정된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n Stabilitätsprogramms) 승인 (2011.4.13)

○ 2010년 독일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인 3%를 초과한 3.3%였으나, 성장 지향적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헌법상의 부채-억제 규율을 충실히 지켜 2011년 재정적자는 2.5%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2년, 2013년, 2014년 각각 1.5%, 1%, 0.5%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초에 독일은 '유럽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제재 메커니즘인 교정적 제재(Corrective arm: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가 중단되고 예방적 제재(Preventive arm)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 SGP의 제재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1권 제4호 3. 정책적 이슈〉를 참고

○ 따라서 2012년부터는 수정된 안정화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EU의 중기목표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0.5%로: 재정흑자 달성)와 부합하는 내용

–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독일은 2012년 말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 독일의 부채비율은 GDP의 75.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전 독일의 부채비율은 GDP의 73.5%였으나, 위기 이후 GDP의 83.2%로 크게 증가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정책이슈

□ EU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로지역 안정을 위한 개정안을 승인함(2011.3.25)

○ 동 개정안은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sation Mechanism: ESM)의 기초가 될 것임

– ESM은 2013년 종료되는 EFSF를 대체하는 영구적 위기대응 메커니즘으로 설립되었음

○ 동 개정안은 '유럽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European SGP)'과 '유럽 경쟁력향상 협정(Euro-Plus Pact)'의 핵심사항에 근거함

– '유럽 경쟁력향상 협정(Euro-Plus Pact)'은 유로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매년 각 국가별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1년 동안 시행하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이를 평가한다는 계획임

– '유럽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1권 제4호 3. 정책적 이슈〉를 참고

Ⅶ 캐나다 (FY2011~12: 2011.4~2012.3)

1. 세제개편

가. 개인소득세 주요 개정안

□ 캐나다정부는 어린이 예능비 세액공제(Children's Arts Tax Credit), 자원 소방관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 가족 간호 세액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를 신설

○ (어린이 예능비 세액공제) 16세 이하 자녀의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 발달 활동을 위해 연간 1인당 500캐나다달러 한도 내에서 활동비의 15%를 공제

○ (자원 소방관 세액공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하여 소방관으로 일한 경우 3,000캐나다달러의 15%만큼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 (가족 간호 세액공제) 2012년부터 한 가구원이 정신·신체적으로 병약한 다른 가구원을 돌보는 경우 인당 2,000캐나다달러의 15%를 공제해 줌

□ 양육비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및 교육비 세액공제(Tuition Tax Credit)제도가 확대됨

○ (양육비 세액공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1년 동안 지출한 양육비용의 15%를 공제하는 제도이며 현행 1주택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시에 한 가구로 혜택이 제한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구당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됨

○ (교육비 세액공제-자격증 수수료) 교육기관, 전문협회, 주(州)정부 등에 지불하는 자격증 시험수수료가 연간 100캐나다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교육, 교재비) 캐나다 학생이 해외 대학에서 교육받을 경우 교육비, 교육 및 교재비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Tax Credits)를 받을 수 있

는 기간을 기존의 연속 13주 이상에서 연속 3주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제 범위가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 중 부모, 형제, 부양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1만 캐나다달러의 공제 한도 규정을 폐지

□ 소득분할 제한규정(Tax on Split Income)의 적용대상에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포함하여 최대 29%의 세율이 적용됨

나. 법인세 주요 개정안

□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 적용대상에 주 에너지원이 폐열인 전기에너지공급설비를 추가하고 캐나다 내에서 제품의 제조 또는 공정 과정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50% 가속상각 비율을 2014년까지 연장

□ 파트너십에 투자한 기업의 과세기간이 파트너십의 과세기관과 다를 경우 파트너십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투자한 기업의 과세기간으로 안분하여 인식하도록 변경

다. 기타 주요 개정안

□ 원활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할 예정

○ 관세율 체계의 개선, 관세 항목의 재정비 등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Budget 2011" – 2011년 3월 발표)

□ (경제전망) 2011년 GDP성장률 2.9%, 명목GDP성장률 5.8%, 실업률 7.5%, 소비자물가 2.4% 등

〈표 2-Ⅷ-1〉 캐나다 경제전망(2011년 예산안)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Real GDP growth							
September 2010 survey	3.0	2.5	2.5	2.9	2.6	2.5	2.7
2011년 예산안	3.1	2.9	2.8	2.7	2.5	2.5	2.7
GDP inflation							
September 2010 survey	2.8	2.0	2.3	2.0	2.0	2.0	2.1
2011년 예산안	3.0	2.8	2.1	2.1	2.0	2.0	2.2
Nominal GDP growth							
September 2010 survey	5.9	4.6	5.2	5.0	4.6	4.4	4.7
2011년 예산안	6.2	5.8	5.0	4.9	4.5	4.5	4.9
Unemployment rate							
September 2010 survey	8.0	7.7	7.4	7.0	6.8	6.6	7.4
2011년 예산안	8.0	7.5	7.2	7.0	6.7	6.5	7.0
Consumer Price Index (CPI) inflation							
September 2010 survey	1.7	2.2	2.1	2.1	2.0	2.0	2.0
2011년 예산안	1.8	2.4	2.1	2.0	2.0	2.0	2.1
U.S. real GDP growth							
September 2010 survey	2.7	2.4	3.0	3.1	3.0	2.7	2.8
2011년 예산안	2.8	3.1	3.1	3.2	3.3	3.2	3.2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년 3월

□ (재정전망) 총세입의 증가 및 프로그램지출의 감소로 재정수지는 개선되어 FY2015-16년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

○ (총세입) FY2011-12 총세입은 2,49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6%)이며 경제회복에 힘입어 FY2009-10 GDP 대비 14.3%에서 FY2015-16에 15.1%로 증가할 전망

○ (프로그램지출) FY2011-12 2,457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이며 경기부양책 종료 및 절약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FY2015-16년에는 GDP 대비 12.9%로 하락

○ (재정수지) FY2010-11 적자규모는 전년 대비 25% 감소, FY2011-12에 또 다시 25%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FY2014-15에 균형재정을 달성, FY2015-16에는 42억캐나다달러 또는 GDP 대비 0.2% 흑자전환이 예상됨

○ (정부부채) FY2009-10 GDP 대비 34.0%에서 FY2011-12 34.4%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FY2015-16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9.7%로 하락할 전망

〈표 2-Ⅶ-2〉 캐나다 재정전망(2011년 예산안)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총세입	2,186	2,356	2,491	2,644	2,812	2,968	3,092
프로그램 지출	2,448	2,452	2,457	2,473	2,520	2,577	2,656
이자지출	294	308	330	365	386	394	394
총지출	2,742	2,760	2,787	2,838	2,907	2,972	3,050
재정수지	-556	-405	-296	-194	-95	-3	42
부채	5,191	5,564	5,860	6,054	6,149	6,152	6,110
총세입	14.3	14.5	14.6	14.8	15.0	15.1	15.1
프로그램 지출	16.0	15.1	14.4	13.8	13.4	13.1	12.9
이자지출	1.9	1.9	1.9	2.0	2.1	2.0	1.9
재정수지	-3.6	-2.5	-1.7	-1.1	-0.5	0.0	0.2
부채	34.0	34.3	34.4	33.8	32.7	31.3	29.7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년 3월

□ (예산기조) 고용창출 및 성장을 위한 낮은 세율 정책을 제시

○ 고용창출을 지원 : 기업이 캐나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조성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 혁신, 교육 및 훈련 투자 : R&D 지원 등 기업 경쟁력 제고

○ 캐나다의 재정우위 입지를 유지

□ (세입) FY2011-12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5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491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4.6%의 비중을 차지

○ (개인소득세) FY2011-12 개인소득세는 1,19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7.0%)로 전년 대비 66억캐나다달러 증가

-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주택수리세액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가 종결되면서 FY2010-11 개인소득세는 총 1,133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93억캐나다달러 또는 9.0% 증가함
- FY2015-16까지 연평균 6.0%씩 증가하여 GDP성장률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법인세) FY2011-12 321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9%)로 전년 대비 35억캐나다달러 증가

- FY2010-11 법인세는 286억캐나다달러로 일회성 법인 지출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7% 하락했으며 FY2015-16까지 연평균 6.3%의 증가세가 예상됨

○ (재화 및 용역세) 재화 및 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는 301억캐나다달러(GDP대비 1.8%)로 전년 대비 10억캐나다달러 증가

- FY2010-11 291억캐나다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8.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향후 FY2015-16까지 연평균 4.8%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고용보험) FY2011-12 고용보험 수입은 18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1%)로 전년 대비 14억캐나다달러 증가

- 고용보험료 인상폭을 2011년에 소득 100캐나다달러당 5센트로 제한한 후 2012년부터 100달러당 10센트로 인상할 예정이며 2015년에 균형 수지를 이룰 것으로 예측

〈표 2-Ⅶ-3〉 세입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039	1,133	1,199	1,281	1,365	1,449	1,515
법인세	304	286	321	327	351	371	389
기타소득세	53	54	58	63	68	73	77
총소득세(A)	1,396	1,473	1,578	1,671	1,784	1,892	1,981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69	291	301	318	333	350	368
관세	35	35	38	41	42	45	48
기타소비세	101	108	109	109	109	107	108
총소비세(B)	406	434	449	467	484	503	524
총조세수입(C=A+B)	1,802	1,907	2,027	2,138	2,269	2,395	2,505
실업보험(D)	168	175	189	208	228	245	248
기타세입(E)	217	273	275	298	315	328	338
총세입(F=C+D+E)	2,186	2,356	2,491	2,644	2,812	2,968	3,092
개인소득세	6.8	7.0	7.0	7.2	7.3	7.4	7.4
법인세	2.0	1.8	1.9	1.8	1.9	1.9	1.9
재화 및 용역세	1.8	1.8	1.8	1.8	1.8	1.8	1.8
총조세수입	11.8	11.8	11.9	11.9	12.1	12.2	12.2
실업보험	1.1	1.1	1.1	1.2	1.2	1.2	1.2
기타세입	1.4	1.7	1.6	1.7	1.7	1.7	1.6
총세입	14.3	14.5	14.6	14.8	15.0	15.1	15.1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년 3월

□ (프로그램지출) FY2011-12 총지출은 2,457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14.4%로 예측

○ (노후혜택)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정부가 저소득 노령인구의 소득지원을 늘리면서 FY2015-16까지 노후혜택으로 인한 지출은 연평균 5%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0-11 고용보험 혜택으로 인한 지출은 실업률 감소와 함께 전년 대비 6.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1-12에는 또 다시 2.9%가 감소할 전망

- FY2015-16까지 연평균 188억 캐나다달러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부문간 이전지출) 보건 · 사회 프로그램 및 지역평등화교부금(equalization), 지방공식회계(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등의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은 꾸준히 증가

○ (직접프로그램비용) 이전비용, 자본 감가상각 및 기타 운용비용을 포함한 직접프로

그램 비용부문은 FY2015-16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신규투자 및 기존 자본의 개선은 자본 감가상각비용을 상승시킬 전망

〈표 2-Ⅶ-4〉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후혜택 (Elderly benefits)	347	359	380	401	423	445	467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216	201	195	189	187	188	190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123	127	131	135	137	138	139
소계(A)	686	686	706	725	747	771	795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보건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57	372	387	407	427	447	470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62	164	169	178	187	195	204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27	–31	–31	–33	–35	–37	–39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19	20	20	20	20	20	20
기타	59	5	16	3	2	2	2
소계(B)	570	530	560	575	601	627	656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99	406	369	340	319	306	307
자본상환비용(Capital amortization)	43	45	47	50	52	54	56
기타발생비용 (Other operating expenses)	217	220	235	244	253	258	267
운영비용 (Operating expenses subject to freeze)	534	564	541	539	549	562	576
소계(C)	1,192	1,235	1,191	1,173	1,172	1,180	1,205
총프로그램지출(A+B+C)	**2,448**	**2,452**	**2,457**	**2,473**	**2,520**	**2,577**	**2,656**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5	4.2	4.1	4.0	4.0	3.9	3.9
정부부문 간 주요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7	3.3	3.3	3.2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 (Direct program expenses)	7.8	7.6	7.0	6.6	6.2	6.0	5.9
총프로그램지출	**16.0**	**15.1**	**14.4**	**13.8**	**13.4**	**13.1**	**12.9**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년 3월

- 근로자 연금 및 혜택, 국방부에서 발생하는 급여 외 지출, 불량채권 등의 누적 비용 등의 기타비용도 소폭 증가할 전망
- 농가소득지원, 지역에 납부하는 천연자원 로열티, 학비보조를 위한 부처 간 재원이전은 경기부양책의 종료, FY2013-14에 종결될 캐나다-미국 목재협정(Canada-U.S. Softwood Lumber Agreement), 해양석유 생산량의 감소로 인한 천연자원 수입이전의 하락 등으로 이전비용은 향후 감소 예정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FY2010-11 결산보고서는 2011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향후 5년 동안 총 172억 캐나다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10년 발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전략검토(Strategic Reviews) : 2007년 예산부터 전략검토를 실시해 부처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 전략검토로 인한 절약효과는 2015년까지 총 7년 간 110억 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2-Ⅶ-5〉 2007-2010년 전략검토

(단위: 억캐나다달러)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총계
2007 전략검토	1.99	3.11	3.86	3.95	4.03	4.03	4.03	25.0
2008 전략검토		3.49	4.49	5.86	5.98	6.04	6.04	31.9
2009 전략검토			1.52	2.48	2.87	2.88	2.88	12.6
2010 전략검토				1.94	2.71	5.69	5.25	15.6
소계	1.99	6.60	9.87	14.2	15.6	18.6	18.2	85.1
국방부					5.25	10.0	10.0	25.3
총계	**1.99**	**6.60**	**9.87**	**14.2**	**20.8**	**28.6**	**28.2**	**110.3**

자료: "Budget 2011," 캐나다재무부, 2011년 3월

○ 조세시스템 개편(Tax Fairness) : 세금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개인 및 법인에 적용하는 조세시스템을 일부 개편하여 7년간 총 41억캐나다달러를 절약할 방침(세제개편 부분 참조)

○ 전략 및 운영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 2011년 예산에서는 종합적으로 1년간 전 정부에 걸쳐 전략 및 운영 검토를 실시하여 정부 운영 및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둠

– 총 800억캐나다달러에 해당하는 직접프로그램 비용이 평가되며 FY2014-15까지

최소 40억캐나다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

- 결과는 2012년 예산에 공개될 예정이며 전략 및 운영 검토가 실시됨으로써 캐나다 정부 재정은 예상보다 1년 일찍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1년 예산에 기록된 FY2010-11부터 FY2015-16까지 절약될 재정규모는 총 62억캐나다달러, 전략 및 운영 검토를 통한 절약 규모와 합치면 동 기간 동안 총 172억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표 2-Ⅶ-6〉 2011년 예산 중 절약규모의 측정

(단위: 억캐나다달러)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총계
2010 전략검토		1.94	2.71	5.69	5.25	5.34	20.94
조세시스템 개편		2.40	7.30	10.95	10.4	9.9	40.95
2011 예산의 총 절약 규모	0	4.34	10.01	16.64	15.65	15.24	61.89
전략 및 운영검토 절약 규모			10.0	20.0	40.0	40.0	110.0
총 절약 규모	0	4.34	20.01	36.64	55.65	55.24	171.89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년 3월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경제성장은 "가. 예산"의 경제전망 참조

다. 기타 정책이슈

□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국가의 인프라투자를 위해 지역인프라통합펀드(Regional Infrastructure Integration Fund)를 구축해 500만캐나다달러 지원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서 관리하는 이 기금은 중남미국가의 운송 및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 인프라 관련 규정을 개선해 재화 및 서비스 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캐나다는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5년에 걸쳐 총 1,1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캐나다국제개발청(CIDA)은 Decent Employment for Youth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관광 및 제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1,000만캐나다달러 지원

○ 독일과 함께 언론분야(Media in Cooperation and Transition)에 30만캐나다달러, 선거비용 60만캐나다달러, 튀니지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에 10만캐나다달러 지원

Ⅷ 호주 (FY2011-12: 2011.7~2012.6)

1. 세제개편

가. FY2011-2012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2011. 5. 10)

1) 증세정책

□ FY2011-12 동안 한시적 특별세(Temporary 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 징수

○ 수해복구 지역 재건을 위하여 한시적 특별세 도입으로 약 17억호주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

○ 한시적 특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2권 제1호 1. 세제개편 및 3. 정책적 이슈>를 참조

□ 회사차량 부가급부(fringe benefits)에 적용되는 세율 변경

○ 현재는 주행거리에 따라 법정세율이 차등 적용되나 2011년 5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에는 20%의 단일 법정세율로 대체되며 주행거리에 따라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예정

〈표 2-Ⅷ-1〉 회사차량에 대한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 tax) 적용 세율

(단위: %)

부가급부세 적용연도 동안 주행 거리(4.1~3.31)	법정세율				
	기존 계약	2011년 5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			
		2011.5.10부터	2012.4.1부터	2013.4.1부터	2014.4.1부터
0~15,000km	0.26	**0.20**	0.20	0.20	0.20
15,000~25,000km	0.20	**0.20**	0.20	0.20	0.20
25,001~40,000km	0.11	**0.14**	**0.17**	**0.20**	0.20
40,000km 초과	0.07	**0.10**	**0.13**	**0.17**	**0.20**

자료: http://assistant.treasurer.gov.au

- 현행 세율에서 20% 단일세율로 변경시 연간 15,000km 이하 주행차량은 세금 할인 증가, 15,000~25,000km 주행차량은 현행 세금 할인 유지, 25,000km 이상 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할인 감소

○ 금번 조치로 인하여 향후 4년간 9억 7,000만호주달러 규모의 예산수지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다양한 세액공제제도 폐지로 추가 세수 확보

○ 40세 미만의 배우자 세금공제(dependent spouse tax offset) 폐지

-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7억 5,500만호주달러의 추가 세수 발생

○ FY2012-13부터 사업자 세액공제(Entrepreneurs' Tax Offset) 폐지

-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3억 6,500만호주달러의 추가 세수 발생

○ 2011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를 적용받는 미성년자(18세 미만) 대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납세액(tax payable)을 감소해 주는 항목 폐지

- 이를 통해 향후 7억 4,000만호주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

2) 감세정책

□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혜택 확대

○ 정부는 FY2011-12 동안 저소득층의 민생고를 완화하고 노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 방식을 개선

– 현재 세액공제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은 혜택의 절반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점(PAYG withholding schedule)에 환급받고 나머지 절반은 연말 세금신고시 환급받았으나 2011년 7월부터 세금감면액의 70%를 주 또는 격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또한 3만호주달러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호주달러를 추가로 환급받게 됨

○ 동 조치로 인하여 약 650만명의 저소득층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FY2011-12 동안 약 14억호주달러의 세금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소기업의 현금 흐름 제고를 위하여 2012-13 소득연도부터 사업용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한 대당 5,000호주달러까지 즉시 공제

○ 동 조치로 인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 약 3억 5,000만호주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 저소득층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가족세제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21] 폭 확대

○ 부양자녀 나이별로 차등 지원되었으나 16~19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대상 가족세제혜택 A 수령액을 13~15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대상 수령액 수준으로 지급

– 16~17세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4,208호주달러, 18~19세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3,741호주달러까지 추가 지원

21) 가족세제혜택 A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족의 연소득 및 나이, 가족 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됨

〈표 2-Ⅷ-2〉 현행 가족세제혜택 A의 최대 수령액

(단위: 호주달러)

각 자녀당	2주 단위	1년간 지원액
13세 이하	160.30	4,905.60
13~15세	208.46	6,161.20
16~17세	51.24	2,062.25
18~24세	68.74	2,518.50

자료: http://www.centrelink.gov.au

○ 동 조치로 인하여 향후 4년간 7억 7,190만호주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 대체연료(alternative fuels)에 대한 소비세 및 소비관세(excise-equivalent customs) 도입 연기

○ 대체연료에 대한 소비세 및 소비관세 도입이 2011년 12월 1일까지 연기되어 6억 4,100만호주달러의 세수 손실 발생

2. 예산, 결산, 추경예산안

가. 예산

□ "전 호주 국민을 위한 견실한 경제(A Stronger Economy for All Australians)"라는 기조 아래 FY2011-12 예산안 발표 (2011. 5. 10)

1)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최근 자연재해로 인하여 2011년 상반기 경제 성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로 중기 경제여건은 여전히 견실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초에 발생한 호주의 자연재해 및 일본과 뉴질랜드의 지진 등으로 인하여 FY2010-11의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0.75%p 하락한 2.25%로 기대

○ FY2011-12 및 FY2012-13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표 2-Ⅷ-3〉 거시경제지표 전망 추이

(단위: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경제성장률	2.25	4.00	3.75	3.00	3.00
고용증가율	2.75	1.75	1.75	1.50	1.50
실업률	5.00	4.75	4.50	5.00	5.00
소비자물가지수(CPI)	3.25	2.75	3.00	2.50	2.50
경상성장률	8.00	6.25	5.75	5.25	5.25

자료: FY2011-12 Budget Paper No.1, 2011. 5

□ (재정전망)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지출 증가와 단기의 경제여건 둔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로 FY2011-12의 예산수지는 226억호주달러의 적자(GDP 대비 △1.5%)를 예상

※ 전망시점별 FY2011-12 예산수지 변화 추이(GDP 대비 %): (FY2010-11 budget('10.5)) △0.9% → (MYEFO('10.11) △0.8% → (FY2011-12 budget('11.5)) △1.5%)

○ (재정수입) FY2011-12 재정수입은 3,500억호주달러(GDP 대비 23.7%)로 전망

– 2011년 초 자연재해로 인한 단기 경제여건 둔화, 호주달러 강세, 글로벌 금융위기

의 여파 등으로 최근 전망치*보다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MYEFO('10.11)) 재정수입 전망: 3,554억호주달러(GDP대비 24.2%)

○ (재정지출) FY2011-12 재정지출은 3,658억호주달러(GDP 대비 24.8%)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FY2008-09 및 FY2009-10에 투입된 정부 경기 진작을 위한 지출이 종료되어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모든 신규지출계획을 보완하여 향후 4년간 220억호주달러를 절감하는 등 긴축 예산 편성

• 동 예산안은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이는 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인력을 최대한 육성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단기의 여러 가지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노력 및 엄격한 지출 통제로 FY2012-13에는 계획대로 예산흑자(GDP 대비 0.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표 2-Ⅷ-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현금징수액[1] (Receipts)	284.7	303.7	**342.4**	378.5	395.9	415.5
GDP 대비 비율	22.2	21.9	**23.2**	24.3	24.1	24.0
현금지급액[2] (Payments)	336.9	349.7	**362.1**	372.1	389.2	406.5
GDP 대비 비율	26.2	25.2	**24.5**	23.9	23.7	23.5
Future Fund 수익금	2.5	3.4	**2.9**	2.9	3.0	3.2
예산수지[3] (Underlying cash balance)	-54.8	-49.4	**-22.6**	3.5	3.7	5.8
GDP 대비 비율	-4.3	-3.6	**-1.5**	0.2	0.2	0.3
재정수입[1] (Revenue)	292.8	310.8	**350.0**	383.1	405.2	425.8
GDP 대비 비율	22.8	22.4	**23.7**	24.6	24.7	24.6
재정지출 (Fiscal balance)	339.2	350.8	**365.8**	380.5	399.0	414.1
GDP 대비 비율	26.4	25.3	**24.8**	24.4	24.3	23.9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46.5	-40.0	**-15.9**	2.6	6.2	11.7
순자본투자 (Net capital investment)	6.4	5.7	**4.4**	-1.4	3.0	3.2
재정수지 (Fiscal balance)	-52.9	-45.7	**-20.3**	4.0	3.2	8.5
GDP 대비 비율	-4.1	-3.3	**-1.4**	0.3	0.2	0.5

주: 1)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포함

2) 금융리스(finance leases) 하의 순자산획득 및 비금융자산의 구입, 운영활동을 위한 현금 지급액과 같음

3)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FY2011-12 Budget Paper No.1, 2011. 5

2) 예산 기조 및 주요 내용

□ 금년도 예산안은 “전 호주 국민을 위한 견실한 경제”라는 기조 아래 다음 7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예산적자에서 예산흑자로의 전환

–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FY2012-13에 예산흑자로의 전환 목표 달성

– 유례 없는 광산 투자붐에 의한 임금 및 물가상승 압력 등 다양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는 220억호주달러의 예산절감을 수행

– 예산흑자로의 전환은 최근 40여 년간 가장 빠른 재정건전화를 의미

– 자세한 내용은 〈3. 가. 재정건전화〉 참조

○ 호주 미래를 위한 노동력 양성

– 국가노동력양성펀드(National Workforce Development Fund)를 통한 산업 및 지역 수요에 맞춘 13만개의 양질의 훈련장소 건립 수행 등에 5억 5,800만호주달러 투입

– 직업 교육 및 훈련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17.5억호주달러 지원

– 신규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등을 재정비하여 노동참여율 제고

– 자세한 내용은 〈3.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참조

○ 사회기반시설 확충

– 도로, 철도 및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360억호주달러 투자

–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장벽 제거

○ 더 나은 보건시설을 위한 투자

– 주정부의 병원 증설을 위하여 FY2014-15부터 FY2019-20까지 최소 164억호주달러를 보증 지원

– 국가적인 정신보건개혁(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수행을 위하여 5년간 22억 호주달러 지출

– 영상진단 및 의약품 관련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7억 1,700만호주달러 지출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치과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5,300만호주달러 지출

○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 최고의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한 "National Rewards for Great Teachers program"에 향후 4년간 약 4억 2,500만호주달러 지원
-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2억호주달러 지원

○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민생고 완화와 노동참여 제고를 위하여 1년간 저소득층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 확대
- 10대를 부양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Part A) 폭 확대
- 2009년 9월에 수행한 연금개혁으로 2주 기준의 최대 연금요율 인상, 연금수령액은 부부의 경우 116호주달러, 독신인 경우 128호주달러 증가
- 자세한 내용은 〈1. 세제개편〉 참조

○ 지역사회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43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지역사회의 병원, 보건시설, 대학, 도로 등의 시설 확충
- 소기업의 세제완화 및 간소화 시행

나. 결산

□ 『2010-11 Final Budget Outcome』은 2011년 9월 말에 발표 예정임

○ FY2009-10 결산 내용은 〈『재정동향』 제4호〉 참조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호주정부는 재정규율 강화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해 FY2012-13에 흑자 예산으로의 전환을 달성

○ 금번 예산안에서도 향후 추계기간 동안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계획

– FY2011-12 및 FY2012-13의 기록적으로 낮은 지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행했던 경기부양조치의 종료와 신규지출을 최대한 제한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Ⅷ-5〉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 증가율 전망

(단위: %)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실질지출증가율	0.7	0.5	-0.1	1.9	1.9

주: 실질지출증가율은 현금주의 기준의 지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FY2011-12 Budget Paper No.1, 2011. 5

○ 흑자 예산 달성을 위하여 향후 추계기간동안 약 220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세제개편을 통하여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등 긴축 예산 편성

〈표 2-Ⅷ-6〉 FY2011-12예산안에서 발표한 주요 예산 절감 내역

	2010-11 $m	2011-12 $m	2012-13 $m	2013-14 $m	2014-15 $m	Total $m
Natural disaster recovery and rebuilding						
Temporary 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	-3.8	1,492.6	218.1	-2.9	0.0	**1,704.0**
Deferral of infrastructure projects	122.5	400.3	644.2	104.7	-326.3	**945.4**
Cessation of the Green Car Innovation Fund	40.9	7.5	102.3	102.9	180.6	**434.2**
Priority 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 reallocation	0.0	50.0	125.0	125.0	50.0	**350.0**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11.6	60.9	70.2	89.1	113.3	**345.1**
Capital Development Pool – cessation	0.0	55.0	78.0	81.0	84.0	**298.0**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for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program	0.0	109.6	18.2	0.0	122.2	**250.0**
Tax reform and integrity						
Fringe benefits tax — reform of the car fringe benefit rules	5.0	26.4	135.4	331.2	455.9	**953.9**
Dependent Spouse Tax Offset - phase out	0.0	60.0	220.0	230.0	245.0	**755.0**
Removing minors' eligibility for low income tax offset on unearned income	0.0	0.0	240.0	250.0	250.0	**740.0**
Tax compliance — reporting taxable payments	0.0	-3.6	-10.3	183.3	255.5	**425.0**
Abolish the Entrepreneurs' Tax Offset	0.0	0.0	0.0	180.0	185.0	**365.0**
Sustainability of family payments						
Pause indexation of upper limits and thresholds for a further two years	0.0	-0.1	231.4	475.1	495.5	**1,201.9**
Pause indexation of Family Tax Benefit supplements for three years	-0.2	76.8	179.1	268.1	279.3	**803.2**
Reprioritising spending						
Defence - Capital Investment Reprogramming	0.0	-69.8	158.9	323.8	868.0	**1,280.8**
Defence - Increased efficiencies	0.0	226.6	320.7	318.7	319.1	**1,185.0**
Efficiency dividend – temporary increase in the rate	0.0	126.0	250.4	309.0	371.1	**1,056.5**
Building Australia's Future Workforce — Productivity Places Program — redirection of funding	0.0	83.8	255.7	257.0	257.4	**853.9**
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100.0	17.1	97.1	90.7	116.0	**420.9**
Medicare Benefits Schedule – pathology services	0.0	64.0	90.5	109.3	142.1	**405.9**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 Better Access Initiative – rationalisation of GP mental health services	0.0	50.1	80.5	85.4	90.9	**306.9**
Green Start program – cessation	121.2	41.2	0.6	0.0	0.0	**163.0**
Other	71.0	973.6	1,680.7	1,631.1	2,622.3	**6,978.7**
Total saves [(a)]	**468.2**	**3,847.9**	**5,186.8**	**5,542.5**	**7,176.9**	**22,222.4**

(a) In underlying cash terms, the Budget delivers savings of $21.7 billion over five years.

자료: FY2011-12 Budget Overview, 2011. 5

□ 효율성배당(efficiency dividend)제도 비율을 인상하여 공공서비스 지출예산 절감 유도

○ 효율성배당제도는 매년 승인된 각 부처의 경상경비(ordinary operating costs)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여 의무적으로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임

○ 금번 조치는 FY2011-12와 FY2012-13에는 현행 1.25%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FY2013-14와 FY2014-15는 현행 수준인 1.25%를 적용

– 이로 인하여 FY2011-12에 4억 6,500만호주달러를 추가로 절감하고, 향후 추계기간 동안 약 11억호주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호주정부는 강건한 경제를 위하여 “호주 미래를 위한 노동력 양성 계획(Building Australia’s Future Workforce Package)”을 발표

○ 동 계획은 크게 ‘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동참여율 제고’에 중점

– 기술에 대한 투자 : 각 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향후 6년간 30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기술인력 양성

• 국가 및 지역, 기업이 원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5억 5,800만호주달러를 투입하여 국가노동력양성펀드(National Workforce Development Fund)를 조성

• 더 나은 직업훈련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턴제도(apprenticeship system) 개선을 위하여 2억호주달러를 투자

• 직업교육 및 훈련 제도의 대규모 개혁을 위하여 FY2012-13부터 향후 5년간 17억 5,000만호주달러를 제공

– 노동참여율 제고 :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하고 취업이 어려운 그룹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세액공제액을 즉각 환급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40세 미만의 배우자 소득공제(dependent spouse tax offset)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피부양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

• 15~24세 청년층 대상으로 가족세제혜택 A 지급액을 인상조치하여 교육과정 이수율을 제고하고, 학교중퇴자(early school leavers)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6,760만호주달러를 제공

• 한부모(single parents) 가정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상담지원에 370만호주달러, 지역사회의 아동프로그램 확대에 1,910만호주달러, 10대부모에 대한 지원에 8,000만호주달러를 제공

• 장애지원연금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을 구직시장으로 복귀

※ 장애지원연금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다. 기타 정책이슈〉 참조

•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

다. 기타 정책이슈

1) FY2012-13부터 탄소세 및 탄소배출거래제 도입 발표(2011. 2. 24)

□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오염 경제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거래제를 2012년 7월부터 도입 예정

○ 탄소배출거래제도는 고정 탄소가격제를 3~5년 실시한 후 탄소가격이 정착되고 제도 운영이 원활해지면 완전한 형태의 탄소배출거래제도로 전환하는 2단계 제도임

– 이는 본격적인 탄소거래제도 실시에 앞서 탄소배출기업 및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기를 설정

〈참고〉 탄소세 및 탄소배출거래제도(Carbon Price Mechanism and Emissions Trading Scheme) 개요 및 호주의 기후변화정책 논의과정

① 탄소세 및 탄소배출거래제도 개요

□ 도입시기

○ 2012년 7월 1일부터 도입(올해 안에 양 의회의 입법 통과 전제)

□ 고정가격(fixed price) 부과기간

○ 고정가격 부과기간은 3~5년이며 최초 고정가격은 온실가스 감축을 확고히 하고 저공해기술(low emission technologies)에 대한 투자 및 경제적 전환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질 것임

□ 탄소배출거래제도 계획

○ 고정가격 부과기간이 종료된 후 총량제한 및 거래방식(cap-and-trade)의 탄소배출거래제도로 전환

– 동 거래제도는 고정가격 부과의 종료를 의미하며 시행시기 최소 12개월 전에 발표

○ 총량제한 및 거래방식의 탄소배출거래제도가 연기될 경우 고정가격의 수준 또는 단계적 세율에 변화가 있을 것임

□ 적용범위

○ 탄소세는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6개의 온실가스 및 기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 정치형에너지 부문(the stationary energy sector)
- 운송부문(transport sector)
- 산업공정부문(industrial processes sector)
- 석유 및 가스추출과정에서의 누출, 파이프라인으로부터의 누출, 광산에서의 메탄가스 등 의도하지 않은 배출(fugitive emissions)
- 폐기물 처리(emissions from non-legacy waste)

○ 농업분야는 탄소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호주의 기후변화정책 논의과정

□ 2007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탄소세 시행을 건의

○ 2007년 4월말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팀을 발족하여 호주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 2008년 9월말 최종보고서(Garnaut Climate Change Review Final Reoport)를 발표

- 동 보고서는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호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바, 호주 기후변화정책의 중심이자 가능한 많은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임

○ 2007년 총선에서 승리한 케빈 러드(Kevin Rudd) 노동당 정부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008년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Water)를 설치, 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2008년 12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비롯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한 백서(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CPRS) White paper)를 발표

– CPRS에서 제시한 중기 국가배출 목표

•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 온실가스 감축의 장기 목표 제시

•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15% 온실가스 감축의 중기 목표 제시(5%는 무조건적인 목표치로서 다른 국가들의 결정과 무관하게 실행할 것이며, 15%는 주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배출을 억제하고 호주의 감축과 비교될 정도로 감축한다는 맥락 하에서 제시하는 목표치임)

○ 러드 총리는 CPRS 백서를 의회에 상정했으나 상원에서 두 번씩 부결

– 2009년 8월 13일, 2010년 7월 3일 탄소오염감축안(CPRS) 부결

○ 2011년 2월 24일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연방총리는 탄소세 및 탄소배출거래제도를 FY2012-13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

2) 수해복구지역 재건을 위한 한시적 특별세(Temporary 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국왕 승인(2011. 4. 12)

□ 호주 연방정부가 발의한 한시적 특별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2011. 2. 24)했으나 상원에서 「재해구호 및 복구제도(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 (NDRRA))」의 강화를 요구

○ 상원은 미래에 발생할 재해를 대비하고 주 및 준주 정부의 책임강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강화

– 주 및 준주 정부는 정기적으로 회계전문가(state Auditor-General)에게 보험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최대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함

– 동 감사보고서는 재무 · 규제완화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에 의해 검토됨

– 재무 · 규제완화부는 주 및 준주 정부의 보험 및 자연재해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ies)을 검토하고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을 통해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만약 주 및 준주 정부가 적정기간 내에 권고조치 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구호 및 복구제도」하에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
– 연방정부는 「재해구호 및 복구제도」를 매 3년마다 법무장관의 감사를 받아야 함

□ 호주 상원은 위와 같은 제도 강화 조치를 수용하여 3월 22일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시적 특별세 법안은 4월 12일 국왕의 재가를 얻음

□ 한시적 특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2권 제1호 1. 세제개편 및 3. 정책적 이슈〉를 참조

3) 생산성 및 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장애지원연금개혁 수행

□ FY2011-12예산안을 통해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수혜자와 고령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장려복지(Welfare-to-work) 개혁을 수행
○ 장애지원연금제도는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정신질환자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신질환자로 진단받은 사람 수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
○ 또한 지난 3월 실업수당 수혜자 58만 8,824명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구직활동이 요구되지 않음
– 여기에는 현행 규정상 자원봉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예외에 적용되는 55세 이상의 수혜자가 2만 8,698명이 포함되어 있음
○ 연방정부는 장애지원연금 수혜 자격 취득을 강화하고 미취업 고령자들을 구직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 강화를 검토
– 장애지원연금 수혜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검증(gate-keeping)제도 검토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장애평가기준(disability impairment table)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음

– 또한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 지급에 적용되는 일자리조사(work test) 강화 방안도 고려 중

• 고령 실업자들을 구직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일자리조사의 예외규정 폐기 검토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Ⅰ. 미 국 (2011년 3월 기준)
Ⅱ. 일 본 (2011년 2월 기준)
Ⅲ. 영 국 (2011년 3월 기준)
Ⅳ. 프랑스 (2011년 2월 기준)
Ⅴ. 독 일 (2011년 3월 기준)
Ⅵ. 캐나다 (2011년 2월 기준)
Ⅶ. 호 주 (2011년 3월 기준)

Ⅰ 미국 (2011년 3월 기준, FY2011: 2010.10~2011.9)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재정적자는 약 8,29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달러(15.7%) 증가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재정수입은 약 660억달러(6.9%), 총재정지출은 약 1,784억달러(10.7%) 증가하였는데 재정지출 증가액이 재정수입 증가액을 초과하여 2011년도 재정수지가 전년에 비해 악화

〈표 3-Ⅰ-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1]		FY2010[1]		FY201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2 (추정)[2]
	3월	누계 ('08.10~'09.3)	3월	누계 ('09.10~'10.3)	3월	누계 ('10.10~'11.3)	변동분	%	
총재정수입	128,957	989,834	153,358	953,896	150,894	1,019,896	66,000	6.9	2,627,449
예산(on-Budget)	71,507	670,517	103,165	648,716	105,897	740,923	92,207	14.2	1,968,719
예산 외(off-Budget)[3]	57,450	319,317	50,193	305,179	44,997	278,974	-26,205	-8.6	658,730
총재정지출	321,230	1,946,632	218,745	1,670,885	339,047	1,849,306	178,421	10.7	3,728,686
예산	267,146	1,698,694	162,696	1,401,780	289,982	1,591,146	189,366	13.5	3,145,904
예산 외	54,084	247,938	56,049	269,105	49,065	258,161	-10,944	-4.1	582,782
재정수지	-192,273	-956,799	-65,387	-716,990	-188,153	-829,410	-112,420	15.7	-1,101,237
예산	-195,639	-1,028,178	-59,531	-753,064	-184,086	-850,223	-97,159	12.9	-1,177,185
예산 외	3,365	71,379	-5,856	36,074	-4,068	20,813	-15,261	-42.3	75,948
총재원조달 규모	192,273	956,799	65,387	716,990	188,153	829,410	112,420	15.7	1,101,237
채무	253,534	1,026,310	352,933	739,470	86,821	628,096	-111,374	-15.1	1,024,686
재무부 operating cash 감소, 증가(-)	-42,503	102,782	-176,714	56,763	72,557	191,778	135,015	237.9	235,000
기타	-18,757	-172,294	-110,832	-79,244	28,775	9,536	88,780	-112.0	-158,449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10.7월 OMB에서 발표한 FY2011 Mid-Session Review에 근거한 수치
3) 사회보장기금과 우편서비스기금은 법에 의해 연방예산에서 '예산 외(off-budget)'로 구분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3월, 2010.3월, 2011.3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3월(누계) 총재정수입은 약 1조 19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660억달러(6.9%) 증가

○ 이는 주로 개인소득세 및 기타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실에 기인

– 개인소득세는 약 821억달러(20.9%), 기타재정수입은 약 53억달러(11.1%) 가량 증가

○ 이외에도 법인세가 전년동기 대비 약 11억달러(2.1%), 실업보험 관련 수입이 약 53억달러(48.9%), 소비세와 관세 수입이 각각 약 34억달러(11.6%) 및 약 25억달러(21.4%) 증가

○ 반면 유산세 및 증여세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실업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세입 역시 감소

– 유산세 및 증여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 92억달러(98.1%) 줄었고,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은 약 192억달러(4.7%) 감소한 3,895억달러 규모

〈표 3– I –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1]		FY2010[1]		FY201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3월	누계 ('08.10~'09.3)	3월	누계 ('09.10~'10.3)	3월	누계 ('10.10~'11.3)	변동분	%
개인소득세	41,227	429,701	59,503	393,506	52,757	475,598	82,092	20.9
법인세	3,392	56,236	8,578	53,969	16,902	55,081	1,112	2.1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ff-budget)	57,450	319,317	50,193	305,179	44,997	278,974	–26,205	–8.6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n-budget)	15,632	98,531	13,081	90,665	15,382	92,414	1,749	1.9
실업보험	338	10,059	693	10,780	673	16,053	5,273	48.9
기타퇴직연금	324	2,077	318	2,046	311	2,016	–30	–1.5
소비세	4,994	28,701	6,782	29,588	7,108	33,032	3,444	11.6
유산세 및 증여세	1,919	12,106	2,829	9,344	121	175	–9,169	–98.1
관세	1,522	12,185	1,942	11,632	2,214	14,119	2,487	21.4
기타 재정수입	2,159	20,919	9,438	47,184	10,428	52,434	5,250	11.1
총재정수입	128,957	989,834	153,358	953,896	150,894	1,019,896	66,000	6.9
예산	71,507	670,517	103,165	648,716	105,897	740,923	92,207	14.2
예산 외	57,450	319,317	50,193	305,179	44,997	278,974	–26,205	–8.6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3월, 2010.3월, 2011.3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1 3월(누계) 재정지출은 약 1조 8,49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1,784억달러(10.7%) 증가

○ 상업 및 주택금융 부문의 지출에서 약 1,242억달러(99.8%)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

– 이외에도 보건 부문의 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129억달러(7.1%), 사회보장 부문 지출이 약 123억 달러(3.5%) 증가

○ 나머지 분야도 대체로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외교(10.8%), 농업(8.1%), 지역개발(6.8%), 상계계정수입(6.8%) 지출이 감소

○ 소득보장 부문은 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872억달러(2.5%) 감소

〈표 3–Ⅰ–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1]		FY2010[1]		FY201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3월	누계 (2008.10 ~2009.3)	3월	누계 (2009.10 ~2010.3)	3월	누계 (2010.10 ~2011.3)	변동분	%
국방	51,674	331,652	63,869	349,982	64,031	357,498	7,516	2.1
외교	2,165	17,358	3,409	22,759	2,932	20,301	–2,458	–10.8
과학, 우주, 기술 일반	2,286	11,948	2,663	14,511	2,596	14,768	257	1.8
에너지	241	218	1,043	3,915	1,492	6,608	2,693	68.8
천연자원 및 환경	2,310	16,413	3,425	19,310	3,524	22,489	3,179	16.5
농업	1,625	21,504	3,647	18,778	2,064	17,266	–1,512	–8.1
상업 및 주택금융	54,419	374,250	–105,949	–124,383	3,269	–196	124,187	–99.8
교통	5,504	38,049	6,471	42,302	6,559	44,251	1,949	4.6
지역개발	2,180	15,417	2,269	12,356	2,020	11,518	–838	–6.8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7,111	45,598	12,383	70,230	15,182	71,952	1,722	2.5
보건	33,463	156,194	32,564	181,412	35,375	194,309	12,897	7.1
메디케어	23,499	206,290	39,159	218,479	41,467	226,667	8,188	3.7
소득보장	52,521	271,669	65,904	345,423	63,419	336,701	–8,722	–2.5
사회보장	56,103	324,176	58,331	347,427	60,362	359,716	12,289	3.5
보훈	4,354	46,191	9,828	53,820	11,544	60,827	7,007	13.0
법무행정	4,032	23,844	4,684	27,512	4,735	28,366	854	3.1
일반행정	2,801	10,728	1,639	8,514	2,119	10,282	1,768	20.8
순이자지급	19,926	94,824	19,280	105,732	21,948	116,407	10,675	10.1
상계계정수입	–4,983	–59,690	–5,873	–47,194	–5,591	–50,424	–3,230	6.8
합계	321,230	1,946,632	218,745	1,670,885	339,047	1,849,306	178,421	10.7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3월, 2010.3월, 2011.3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1년 3월 31일 기준 공공채무[22]는 전년동기 대비 1조 4,970억달러(11.7%)가 증가한 14조 2,701억달러 기록

○ 이는 시장성 채권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이 중 중기채가 큰 폭으로 증가

– 시장성 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 1조 3,756억달러(17.7%)가 증가하였고 이 중 중기채가 1조 2,818억달러(28.1%)가량 증가

○ 비시장성 채권은 '10년 3월에 비해 약 1,213억달러(2.4%) 증가한 5조 1,374억달러 규모

○ 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54억달러(3.0%) 증가한 4조 6,185억달러 규모를 보였고,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의 경우, 약 1조 3,616억달러(10.7%) 증가한 9조 6,516억달러를 기록

22) 공공채무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비정무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표 3-Ⅰ-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9.3.31			'10.3.31			'11.3.31			전년 대비 증감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변동분	%	변동분	%	변동분	%
시장성:	6,242,353	23,768	6,266,121	7,733,561	23,481	7,757,041	9,110,819	21,921	9,132,740	1,377,258	17.8	-1,559	-6.6	1,375,699	17.7
단기채(T-Bills)	2,027,691	5,874	2,033,566	1,838,020	5,458	1,843,478	1,694,692	3,809	1,698,501	-143,328	-7.8	-1,649	-30.2	-144,977	-7.9
중기채(T-Notes)	3,084,283	604	3,084,887	4,563,766	2,291	4,566,057	5,843,938	3,933	5,847,871	1,280,172	28.0	1,642	71.7	1,281,814	28.1
장기채(T-Bonds)	617,628	2,921	620,548	758,781	3,605	762,386	931,474	3,815	935,289	172,693	22.7	210	5.8	172,903	22.7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512,751	369	513,120	572,994	205	573,199	640,714	125	640,840	67,720	11.8	-80	-38.8	67,641	11.8
Federal Financing Bank	0	14,000	14,000	0	11,921	11,921	0	10,239	10,239	0	0.0	-1,682	-14.1	-1,682	-14.1
비시장성:	591,190	4,269,630	4,860,821	556,508	4,459,574	5,016,082	540,824	4,596,550	5,137,374	-15,684	-0.3	136,977	3.1	121,292	2.4
Domestic Series	29,995	0	29,995	29,995	0	29,995	29,995	0	29,995	0	0.0	0		0	0.0
Foreign Series	5,986	0	5,986	4,886	0	4,886	3,786	0	3,786	-1,100	-22.5	0		-1,100	-22.5
R.E.A. Series	1	0	1	1	0	1									
State and Local overnment Series	240,096	0	240,096	208,494	0	208,494	181,922	0	181,922	-26,572	-12.7	0		-26,572	-12.7
United States Savings Securities	193,975	0	193,975	190,293	0	190,293	186,864	0	186,864	-3,429	-1.8	0		-3,429	-1.8
Government Account Series	119,543	4,269,139	4,388,682	121,558	4,459,081	4,580,640	136,956	4,596,057	4,733,014	15,398	0.3	136,976	3.1	152,374	3.3
Hope Bonds	0	492	492	0	492	492	0	493	493	0	0.0	1	0.1	1	0.1
Other	1,594	0	1,594	1,281	0	1,281	1,301	0	1,301	20	1.6	0		20	1.6
합계	6,833,543	4,293,398	11,126,941	8,290,069	4,483,054	12,773,123	9,651,643	4,618,471	14,270,115	1,361,574	10.7	135,416	3.0	1,496,992	11.7

자료: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of the U.S.(Dept. of Treasury), 2009.3월, 2010.3월, 2011.3월

Ⅱ 일본 (2011년 2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일반회계)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일본의 일반회계 재정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0억엔(5.4%)가량 악화된 4.3조엔 규모

○ 재정지출이 약 2조 5,760억엔(3.3%) 감소하였지만 재정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약 2조 7950억엔 혹은 3.7%)하여 전반적인 재정적자 수준이 악화

□ (특별회계) 특별회계 부문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증가 규모는 약 15조 2,300억엔 수준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정수입은 약 10조 1,660억엔(3.2%) 가량이 증가하였고 재정지출은 5조 640억엔(1.7%)이 감소하면서 흑자를 기록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2월	누계 ('08.4~'09.2)	2월	누계 ('09.4~'10.2)	2월	누계 ('10.4~'11.2)	누계 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입	8,915	57,730	6,243	75,164	3,801	72,369	-2,795	-3.7	102,558
재정지출	3,635	66,463	4,497	79,249	5,130	76,674	-2,576	-3.3	107,069
수지	5,280	-8,734	1,746	-4,085	-1,329	-4,305	-219	5.4	-4,511
〈특별회계〉									
재정수입	25,024	333,935	25,928	318,187	26,394	328,353	10,166	3.2	381,673
재정지출	19,238	312,990	16,897	306,740	18,681	301,676	-5,064	-1.7	378,566
수지	5,786	20,946	9,031	11,447	7,713	26,676	15,230	133.1	3,107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2월 말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2월(누계) 총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한 72조 3,690억엔 수준

○ 이는 정부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6조 570억엔(13.3%) 감소한 것이 주요인

○ 또한, 국유재산 이용수입 및 납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조 1,720억엔(22%), 1조 2,340억엔(25.1%) 감소

○ 반면,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 7,440억엔(14.1%)가량 증가

–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동기 대비 2조 2,290억엔(178.1%)가량 큰 폭으로 증가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2011년 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2월	누계 ('08.4~'09.2)	2월	누계 ('09.4~'10.2)	2월	누계 ('10.4~'11.2)	누계기준	%	
조세 및 인지수입	**5,753**	**24,942**	**1,600**	**19,514**	**1,644**	**22,258**	**2,744**	**14.1**	**39,643**
조세	5,660	24,119	1,514	18,722	1,557	21,488	2,766	14.8	38,619
소득세	1,482	9,663	936	8,425	968	8,498	73	0.9	12,808
법인세	2,775	5,291	67	1,251	85	3,480	2,229	178.1	7,489
상속세	153	886	123	749	135	847	98	13.1	1,271
소비세	731	4,508	247	4,296	241	4,698	401	9.3	10,155
주세	120	788	13	767	14	756	−11	−1.5	1,383
담배세	73	531	22	516	18	538	22	4.2	827
휘발류세	107	935	10	1,393	10	1,419	26	1.9	2,576
석유가스세	1	7	1	7	1	7	0	−1.8	12
항공기연료세	7	51	1	49	1	46	−3	−5.6	77
석유석탄세	45	256	–	250	–	237	−13	−5.1	480
전원개발촉진세	28	203	0	188	0	204	16	8.7	330
자동차중량세	61	412	53	362	35	254	−108	−29.8	447
관세	77	581	40	464	48	498	34	7.4	756
톤세	1	7	1	6	1	7	1	10.1	8
토지세	0	0	0	0	0	0	0	−58.5	–
구세(旧税)	0	0	0	0	0	0	0	−36.4	–
인지수입	93	822	85	792	87	770	−22	−2.8	1,024
국영기업수입	1	14	1	14	1	14	0	0.4	16
정부자산매각수입	14	218	14	109	44	169	60	55.0	809
국유재산매각	6	100	7	71	12	80	9	12.8	129
회수금 등 수입	8	118	7	38	31	89	51	133.0	681
기타수입	71	2,755	77	5,337	127	4,165	−1,172	−22.0	9,757
국유재산이용수입	4	65	3	66	3	67	1	1.5	73
납부금	21	399	21	363	30	424	61	16.7	737
기타	46	2,292	53	4,908	93	3,674	−1,234	−25.1	8,946
정부채권발행(公債金)	3,075	27,089	4,551	45,679	1,985	39,622	−6,057	−13.3	44,303
전년도 잉여금수입	–	2,711	–	4,511	–	6,141	1,630	36.1	2,200
총계	8,915	57,730	6,243	75,164	3,801	72,369	−2,795	−3.7	96,728

주: –는 데이터 없음, 0은 10억엔 미만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2월 말

□ 2011년 2월(누계) 특별회계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약 10조 1,660억엔(3.2%) 증가한 328조 3,530억엔을 기록

○ 이는 국채정리기금과 연금부문에서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

– 국채정리기금과 연금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조 7,590억엔(8.8%), 9조 3,600억엔(14.2%)이 증가하였기 때문

○ 전년동기 대비 재정투융자 수입이 약 12조 4570억엔(40.2%), 사회자본정비사업 수입이 1조 5,060억엔(29%)가량 크게 감소하였지만 수입 증가분을 상쇄하지는 못하였음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2011년 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2월	누계 ('08.4~'09.2)	2월	누계 ('09.4~'10.2)	2월	누계 ('10.4~'11.2)	누계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3,920	35,527	3,881	36,223	4,104	37,197	975	2.7	54,977
등기	7	172	6	160	6	138	-22	-13.7	159
지진재보험	4	53	5	54	5	57	2	4.4	73
국채정리기금	7,822	178,534	11,385	168,370	11,673	183,129	14,759	8.8	196,871
외국환자금	502	1,663	30	440	0	602	162	36.7	2,696
재정투융자[1]	2,819	33,986	664	30,989	1,191	18,533	-12,457	-40.2	37,229
에너지대책	42	1,668	50	1,775	60	1,675	-100	-5.6	2,389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2]	10	143	16	183	–	–	–	–	–
노동보험	182	7,681	1,087	6,587	299	6,025	-562	-8.5	8,724
선원보험[2]	7	58	0	55	–	–	–	–	–
연금	9,131	66,563	8,285	65,890	8,752	75,250	9,360	14.2	79,067
식량안정공급	47	1,178	41	1,172	51	1,031	-141	-12.1	3,047
농업공제재보험	2	69	0	83	4	92	8	9.9	124
삼림보험	0	11	0	10	0	10	0	-4.7	11
국유임야사업	70	408	81	443	91	427	-16	-3.7	467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14	1	13	1	13	0	0.4	24
무역재보험	6	203	0	140	3	85	-55	-39.3	201
특허	10	278	9	279	9	283	3	1.2	302
사회자본정비사업	439	5,590	383	5,198	140	3,691	-1,506	-29.0	3,861
자동차안전	3	136	4	122	3	117	-6	-4.7	123
계	25,024	333,935	25,928	318,187	26,394	328,353	10,166	3.2	390,345

주: 1) 산업투자와 재정융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2월말

3. 소관별 세출동향

□ 일반회계 2011년 2월(누계) 기준 재정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5,760억엔(3.3%)가량 감소한 76조 6,740억엔 수준

○ 이는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에서의 지출 감소가 주요인이고 총무성 또한 큰 폭으로 지출이 감소한 데에 기인

– 전년동기 대비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의 지출은 각각 1조 9,540억엔(40.7%), 8030억엔(42.6%) 감소하였고, 총무성은 5,730억엔(3.1%)가량 감소

○ 반면, 후생노동성은 지난해에 비해 지출이 6,230억엔(2.5%) 증가한 25조 3,940억엔을 기록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2011년 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2월	누계 ('08.4~'09.2)	2월	누계 ('09.4~'10.2)	2월	누계 ('10.4~'11.2)	누계 기준	%	
황실비	0.2	3	0.2	3	0.2	3	-0.2	-6.4	6
국회	8	103	8	104	10	120	16	15.7	164
재판소	22	276	21	264	21	265	2	0.6	337
회계검사원	1	14	1	13	1	14	0.2	1.3	18
내각	3	37	4	41	3	53	12	28.9	129
내각부	43	407	40	400	33	348	-52	-13.1	599
총무성	31	15,714	24	18,757	27	18,184	-573	-3.1	21,638
법무성	42	555	44	563	43	566	3	0.5	761
외무성	38	588	60	642	171	701	58	9.1	914
재무성	137	15,325	122	16,137	807	16,480	343	2.1	22,957
문부과학성	242	4,530	271	4,830	348	4,890	59	1.2	6,362
후생노동성	2,368	18,826	2,729	24,771	2,870	25,394	623	2.5	29,278
농림수산성	131	1,827	148	1,977	162	1,751	-226	-11.4	3,100
경제산업성	43	575	293	1,884	147	1,081	-803	-42.6	1,675
국토교통성	216	3,717	405	4,807	175	2,853	-1,954	-40.7	7,426
환경성	7	76	21	259	20	236	-23	-8.9	395
방위성	305	3,889	305	3,795	292	3,734	-61	-1.6	4,910
재정지출(합계)	3,635	66,463	4,497	79,249	5,130	76,674	-2,576	-3.3	100,669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2월 말

□ 특별회계 2011년 2월 기준 지출(누계)은 전년동기 대비 5조 640억엔(1.7%) 감소하여 301조 6,760억엔을 기록

○ 재정투융자 부문에서 지출이 '10년에 비해 약 12조 2,090억엔(41%) 가량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이외에도 사회자본정비사업, 노동보험 부문에서의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8.8%(5,310억엔), 6.4%(3,780억엔)가량 감소

○ 일본의 고령사회 진전으로 연금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2조 7,270억엔(3.8%)이 증가한 74조 910억엔의 규모를 보임

○ 또한, 국채정리기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조 4,530억엔(2.4%) 증가한 145조 6,260억엔을 기록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2011년 2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2월	누계 ('08.4~ '09.2)	2월	누계 ('09.4~ '10.2)	2월	누계 ('10.4~ '11.2)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22	49,634	579	50,484	600	52,399	1,915	3.8	54,897
등기	11	116	10	117	13	114	-3	-2.5	163
지진재보험	0	0	0	0	0	0	0	5.3	73
국채정리기금	5,265	149,227	4,139	142,172	5,101	145,626	3,453	2.4	189,398
외국환자금	26	522	10	169	11	475	306	180.8	2,034
재정투융자[1]	2,734	31,906	583	29,750	1,115	17,541	-12,209	-41.0	36,246
에너지대책	31	2,018	35	1,970	56	1,909	-61	-3.1	2,464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2]	11	113	10	116	–	–	–	–	–
노동보험	426	6,185	476	5,929	412	5,551	-378	-6.4	8,679
선원보험[2]	5	46	0	48	–	–	–	–	–
연금	10,332	68,591	10,648	71,364	10,985	74,091	2,727	3.8	78,966
식량안정공급	39	1,391	43	1,125	39	966	-160	-14.2	3,049
농업공제재보험	3	38	3	57	14	76	19	33.0	116
삼림보험	0	2	0	1	0	1	0	-2.2	5
국유임야사업	76	426	87	455	93	434	-21	-4.7	504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12	1	11	1	12	1	9.1	16
무역재보험	1	15	0	12	49	58	47	405.1	201
특허	7	86	7	88	7	88	0	-0.3	120
사회자본정비사업	244	2,607	263	2,825	179	2,295	-531	-18.8	5,207
자동차안전	3	55	3	45	6	41	-4	-8.5	65
계	19,238	312,990	16,897	306,740	18,681	301,676	-5,064	-1.7	382,201

주: 1) 산업투자와 재정융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2월 말

4. 국가채무 동향

□ 2011년 3월 31일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약 924조엔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준

○ 국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38조엔(5.3%)이 증가한 758조 5,690억엔 규모

– 정부채권이 42조 3,400억엔(7.1%)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 장기채권 증가액이 약 31조 2,130억엔(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채권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약 4조 3,120억엔(9.9%) 감소하였으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도 작년에 비해 약 4조 340억엔(3.3%) 감소

○ 차입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약 1조 4,010억엔(2.5%) 감소한 약 55조엔 수준

○ 재정어음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4조 7,570억엔(4.5%) 증가한 110조 7,850억엔 규모

〈표 3-Ⅱ-6〉 중앙정부채무 (3월 31일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3월	3월	3월	증감액	%
국채	680,448	720,489	758,569	38,080	5.3
정부채권	545,936	593,972	636,312	42,340	7.1
장기(10년 이상)	354,238	373,155	404,368	31,213	8.4
중기(2~5년)	161,018	177,193	192,632	15,438	8.7
단기(1년 미만)	30,680	43,624	39,312	-4,312	-9.9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	131,050	122,225	118,192	-4,034	-3.3
장기(10년 이상)	94,737	100,274	100,789	515	0.5
중기(2~5년)	36,313	21,951	17,403	-4,548	-20.7
교부채권(Subsidy bond)	527	450	367	-82	-18.3
출자채권 등	2,211	1,767	1,623	-144	-8.2
기타 채권[1)]	725	2,075	2,075	0	0.0
차입금	57,566	56,406	55,006	-1,401	-2.5
장기(1년 초과)	22,252	21,092	19,692	-1,401	-6.6
단기(1년 이하)	35,314	35,314	35,314	0	0.0
재정어음(Financing Bills)	108,483	106,028	110,785	4,757	4.5
총계	846,497	882,924	924,360	41,436	4.7
정부보증채무	45,429	46,596	44,745	-1,851	-4.0

주: 1) 기타 채권은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위기대응업무 채권과 일본고속도로 보유·채무상환계획 승계 채권의 합계수치임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상기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과 국내 차입금을 포함함

자료: 일본 재무성, 국채 및 차입금 및 정부보증채무 현황 – 헤세이 21, 22, 23 각 연도 3.31 기준

Ⅲ 영국 (2011년 3월 기준, FY2011-12: 2011.4~2012.3)[2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1.3월 말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규모는 GDP의 59.9%로 전년 대비 7.1%p 증가

○ 2010.3월 말보다 약 1,431억파운드 증가한 9,034억파운드 기록

– 금융시장에 대한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순부채 규모는 2조 2,386억파운드로 GDP 대비 148.5%에 달함

□ FY2010-11 3월 말 누계 공공부문의 순차입규모는 1,411억파운드로 전년보다 약 154억파운드(9.8%) 감소

○ 2011.3월 순차입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약 12억파운드 감소한 186억파운드

– 금융시장의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순차입은 전년 동월보다 약 16억파운드 감소한 164억파운드 규모

□ FY2010-11 3월 누계 경상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1,009억파운드를 기록

○ 2011.3월 경상재정적자는 104억파운드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억파운드 감소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3월	'08.4~'09.3	3월	'09.4~'10.3	3월	'10.4~'11.3	4~3월 누계기준	%
경상재정수지	-12.0	-49.8	-11.5	-107.3	-10.4	-100.9	6.3	-5.9
순차입	20.0	96.4	19.8	156.5	18.6	141.1	-15.4	-9.8
순부채	606.8		760.3		903.4		143.1	18.8
GDP 대비 순부채	43.3		52.8		59.9		7.1%p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1.4.19)

23) 영국은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스코틀랜드 왕립은행과 로이드 금융그룹을 완전히 포함시켰음. 이는 금융시장의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공공부문 순부채(PSND in.) 지표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 따라서 『재정동향』 1~4호에서 사용한 공공부문 순부채 자료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중앙정부의 FY2010-11 3월 누계 경상재정적자는 1,020억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30억파운드(2.8%) 감소

○ 전년 대비 재정수입 6.9%, 재정지출 5.1% 증가

○ 순투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42억파운드(27.5%) 감소한 373억파운드를 기록

○ 중앙정부 순차입 규모는 1,393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1.0% 감소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3월	'08.4~'09.3	3월	'09.4~'10.3	3월	'10.4~'11.3	4~3월 누계기준	%
재정수입[1]	38.4	495.4	44.8	476.0	44.1	508.9	32.9	6.9
생산물과세(VAT포함)	12.8	167.6	15.4	169.7	16.7	189.9	20.2	11.9
소득세 및 재산세	13.4	200.8	15.8	182.5	14.5	194.0	11.6	6.3
기타과세	33.3	352.6	36.1	376.4	35.8	387.5	11.0	2.9
사회보장기여금	9.2	96.6	10.8	96.6	10.0	97.2	0.6	0.6
이자 및 배당금	1.2	9.7	0.9	6.8	1.0	6.2	-0.6	-8.8
기타 재정수입	0.7	8.0	0.7	8.2	0.7	8.7	0.6	6.8
재정지출	47.2	536.6	52.5	574.4	52.6	603.8	29.4	5.1
이자	1.0	30.5	2.4	30.9	2.4	43.1	12.2	39.6
순사회복지급여	12.8	153.5	14.0	167.1	14.3	173.2	6.2	3.7
기타 재정지출	33.3	352.6	36.1	376.4	35.8	387.5	11.0	2.9
감가상각	-0.5	-6.5	-0.6	-6.7	-0.6	-7.2	-0.5	7.6
경상재정수지	-9.3	-47.8	-8.3	-105.0	-9.0	-102.0	3.0	-2.8
투자[2]	8.6	50.8	9.4	58.1	8.8	44.5	-13.7	-23.5
less Depreciation	0.5	6.5	0.6	6.7	0.6	7.2	0.5	7.6
순투자	8.0	44.3	8.8	51.4	8.2	37.3	-14.2	-27.5
순차입	17.4	92.0	17.1	156.4	17.3	139.3	-17.1	-11.0

주: 1) 재정수입에 대한 정의는 영국 재무부에서 공표한 바를 따름(상속세 포함)
2) 투자=자본형성+토지순취득+순투자보조금-자본자산매각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Last update, 2011.4.19)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10-11 3월 누계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29억파운드(6.9%) 증가한 5089억 파운드 수준

○ 법인세가 전년 대비 18.1%(69억파운드)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15.4% 증가

○ 반면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전년 대비 6억파운드(8.8%) 감소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파운드)

구 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3월	'08.4~'09.3	3월	'09.4~'10.3	3월	'10.4~'11.3	4~3월 누계기준	%
생산물과세	12.8	167.6	15.4	169.7	16.7	189.9	20.2	11.9
부가가치세	6.3	85.4	8.0	83.6	9.3	96.5	12.9	15.4
소득세 및 재산세	13.4	200.8	15.8	182.5	14.5	194.0	11.6	6.3
소득세[1]	12.4	153.7	14.3	144.4	12.7	149.1	4.7	3.2
법인세 등[2]	0.9	47.1	1.5	38.1	1.8	45.0	6.9	18.1
기타 과세(tax)	1.2	12.7	1.2	12.3	1.2	13.0	0.6	5.2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9.2	96.6	10.8	96.6	10.0	97.2	0.6	0.6
이자 및 배당금	1.2	9.7	0.9	6.8	1.0	6.2	-0.6	-8.8
기타 재정수입(receipts)	0.7	8.0	0.7	8.2	0.7	8.7	0.6	6.8
재정수입	38.4	495.4	44.8	476.0	44.1	508.9	32.9	6.9

주: 1) 가구기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법인의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포함
2) 주로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임. 기타 소득세 포함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Last update, 2011.4.19)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0-11 3월 누계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6,038억파운드 규모

○ 사회복지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3.7%(62억파운드) 증가

○ 이자지출 규모가 전년에 비해 39.6%(122억파운드) 증가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3월	'08.4~'09.3	3월	'09.4~'10.3	3월	'10.4~'11.3	4~3월 누계기준	%
이자	1.0	30.5	2.4	30.9	2.4	43.1	12.2	39.6
순사회복지급여	12.8	153.5	14.0	167.1	14.3	173.2	6.2	3.7
기타 재정지출	33.3	352.6	36.1	376.4	35.8	387.5	11.0	2.9
재정지출	47.2	536.6	52.5	574.4	52.6	603.8	29.4	5.1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Last update, 2011.4.19)

4. 국가채무 동향

□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FY2010-11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전년 대비 10.6% 감소하여 1,114억파운드를 기록

○ 전년에 비해 중앙정부의 순차입규모는 171억파운드(11.0%) 감소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순융자 규모는 20억파운드(68.1%) 증가

○ 공기업의 경우 금융공기업은 268억파운드의 순융자를 기록하였고, 비금융공기업과 중앙은행도 각각 29억파운드, 1억파운드의 순융자를 나타냄

□ 2011.3월 말, 공공부문 순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9,034억파운드 기록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3월	'08.4~'09.3	3월	'09.4~'10.3	3월	'10.4~'11.3	4~3월 누계기준	%
경상재정수지			-12.0	-49.8	-11.5	-107.3	-10.4	-100.9	6.3	-5.9
순투자			7.9	46.6	8.3	49.2	8.2	40.2	-9.0	-18.3
순차입	정부(A)	중앙정부	17.4	92.0	17.1	156.4	17.3	139.3	-17.1	-11.0
		지방정부	2.0	4.5	0.9	2.9	0.7	4.9	2.0	68.1
		일반정부	19.4	96.6	18.0	159.3	17.9	144.1	-15.2	-9.5
	공기업(B)	비금융공기업	0.6	0.2	1.8	-2.7	0.7	-2.9	-0.2	6.7
		중앙은행	0.0	-0.4	0.0	-0.1	0.0	-0.1	0.0	-8.7
	한시적금융개입효과 제외 공공부문순차입 (A+B)		20.0	96.4	19.8	156.5	18.6	141.1	-15.4	-9.8
	금융공기업(C)		-1.6	-23.9	-1.7	-28.5	-2.2	-26.8	1.7	-6.1
	공공부문순차입 (A+B+C)		18.4	72.5	18.0	128.0	16.4	114.4	-13.6	-10.6
순국가채무			606.8		760.3		903.4		143.1	18.8
GDP 대비 국가채무			43.3		52.8		59.9		7.1%p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3)';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 (Last update, 2011.4.19)

Ⅳ 프랑스 (2011년 2월 기준, FY2011: 2011.1~2011.2)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재정적자는 280억유로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8.4% 증가하여 재정 상황 악화

○ 일반회계 재정지출(누적)은 전년 대비 5억유로(-0.9%)가 감소하였고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억유로(1.9%) 증가하여 수입증가액이 지출감소액보다 커서 재정수지 개선

○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74억유로(200.7%) 증가한 111억유로 수준

〈표 3-Ⅳ-1〉 중앙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2월	누계 ('09.1-2월)	2월	누계 ('09.1-2월)	2월	누계 ('09.1-2월)	누계 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지	-21.1	-25.4	-10.8	-18.1	-11.1	-16.9	1.2	-6.8
재정지출 (대금상환 및 감세 제외)	35.4	57.5	30.2	57.5	30.7	57.0	-0.5	-0.9
재정수입 (대금상환 및 감세 별도)	14.2	32.1	19.4	39.4	19.7	40.2	0.7	1.9
특별회계 재정수지	-3.3	-7.1	-1.8	-3.7	-3.5	-11.1	-7.4	200.7
지방정부에 대한 선불	-3.9	-7.9	-1.4	-3.3	-4.6	-9.5	-6.2	189.5
재정수지	-24.4	-32.6	-12.6	-21.8	-14.6	-28.0	-6.2	28.4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9~2011 각 연도 1,2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1월~2월까지 세수는 전년 대비 20억유로(5.4%) 증가한 393억유로를 기록

○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종료 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

○ 2009년 기업지원을 위한 환급확대정책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일정수준 회복

– 법인세는 2010년 2월(누적)에 비해 109.3% 크게 증가한 1억유로 수준

–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229억 유로 수준

○ 2011년 2월(누계) 세수는 27억유로로 전년대비 33.2% 증가, 총재정수입은 1.9% 증가한 402억유로를 기록

〈표 3-Ⅳ-2〉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2011
	2월	누계 ('09.1-2월)	2월	누계 ('09.1-2월)	2월	누계 ('09.1-2월)	누계 기준	%	
세수	13.5	31.1	18.7	37.3	19.1	39.3	2.0	5.4	254.9
소득세	9.5	12.5	9.1	12.2	8.3	11.6	-0.6	-4.9	52.2
법인세	-4.6	-5.2	-0.7	-0.8	-0.2	0.1	0.9	-109.3	44.8
TIPP[1)]	1.4	2.3	1.2	1.9	1.2	2.0	0.1	5.1	14.1
부가가치세	5.7	19.1	8.0	22.0	8.5	22.9	0.9	4.1	130.9
기타	1.5	2.4	1.1	2.1	1.3	2.7	0.7	33.2	12.9
세외수입	0.6	0.9	0.4	1.7	0.4	0.6	-1.2	-67.4	16.9
소계	14.1	32.0	19.1	39.0	19.5	39.8	0.8	2.1	271.8
기타 수입	0.1	0.1	0.3	0.4	0.2	0.3	-0.1	-22.0	3.2
총재정수입	14.2	32.1	19.4	39.4	19.7	40.2	0.7	1.9	274.9

주: 1)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pétroliers; TIPP)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9~2011 각 연도 1, 2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년 1월~2월 세출은 전년 대비 44억유로(11.7%) 증가한 4190억유로 수준

○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25.8%)에 기인

○ 운용비와 국채이자가 각각 8억유로(15.4%), 1억유로로 (3.1%) 증가

□ 2011년 2월(누적) 보조금은 151억유로로 전년 대비 24.5% 감소

○ 2011년 1월부터 사업소세 개편에 따른 보상이 현재까지는 아직 없음

〈표 3-Ⅳ-3〉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2월	누계 ('09.1-2월)	2월	누계 ('09.1-2월)	2월	누계 ('09.1-2월)	누계 기준	%
세출	21.1	41.8	19.3	37.5	21.8	41.9	4.4	11.7
예비비	0.0	1.0	0.0	1.0	0.0	1.0	0.0	1.0
인건비	10.9	20.2	8.1	16.3	11.4	20.5	4.2	25.8
운용비	2.2	5.1	2.8	5.5	1.9	6.4	0.8	15.4
국채이자	0.1	3.1	0.0	2.9	0.0	3.0	0.1	3.1
투자비	0.8	1.6	0.2	0.2	0.1	0.1	-0.1	-47.5
이전비[1]	7.0	11.0	8.3	11.6	8.5	10.9	-0.7	-5.9
재정운용비용	0.0	0.0	0.0	0.0	1.0	1.0	-	-
미래투자프로그램 지출	-	-	0.0	0.0	-	-	_	_
보조금(PSR)	14.3	15.7	10.9	20.0	8.9	15.1	-4.9	-24.5
지방정부보조금	11.2	11.2	4.4	8.8	4.6	9.2	0.4	4.3
사업소세 개편(폐지)에 따른 보상금	-	-	2.7	5.3	-		_	_
EU보조금	3.1	4.5	3.8	5.9	4.3	5.9	0.0	0.3
총재정지출	35.4	57.5	30.2	57.5	30.7	57.0	-0.5	-0.9

주: 1) 이전비(Dépenses d'intervention)에는 가계이전비, 기업이전비,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소송비용이 포함됨
2) -는 데이터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9~2011 각 연도 1,2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1년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채는 1조 2,270억유로로 전년 대비 7.3% 증가

○ 1년 미만 단기채권이 전년 대비 210억유로(10.2%) 감소한 반면, OAT/Bons 등 장기채권은 930억 유로(12.35%) 증가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08	2009	2010	전년 대비 증감	
	2009.03.31.	2010.03.31.	2011.03.31.	증감액	%
중앙정부국채	1064	1,184	1,270	86	7.3
OAT/Bons : 장기채권(10-50년)	695	759	852	93	12.3
BTAN/Treasury Notes : 중기채권(2-5년)	205	219	233	14	6.4
BTF/Treasury Bills : 단기채권(1년 미만)	164	206	185	-21	-10.2
평균만기기간	6년 253일	6년 352일	7년 50일		

자료: Agence France Trésor(채무담당기관)의 월간보고서(Monthly Bulletin) 2009~2011 각 연도 4월호

V 독일 (2011년 3월 기준, FY2011: 2011.1~2011.12)[24]

1. 세입 및 세출 동향

□ 연방예산의 2011.3월(누계) 재정적자는 254억유로로 전년 3월에 비해 약 25억유로(9.0%) 감소

○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나 재정수입은 전년보다 8.1% 크게 증가

– 재정수입 증가는 조세수입 증가(전년 대비 13.6%)로 인한 효과임

〈표 3-Ⅴ-1〉 연방정부 재정

(단위: 십억유로,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1 (추정)
	3월	'09.1~31	3월	'10.1~31	3월	'11.1~31	변동분	%	
재정지출	20.4	78.0	21.4	81.9	20.3	83.9	2.0	2.4	305.8
재정수입	24.2	60.7	22.1	54.0	24.4	58.4	4.4	8.1	257.0
세수	16.4	49.3	17.3	45.7	20.9	51.9	6.2	13.6	229.2
재정수지	3.8	–17.4	0.6	–27.9	4.2	–25.4	2.5	–9.0	–48.8

주: 1) 잠정치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9.2~3월, 2010.2~3월, 2011.2~3월

24) 2008년 11월 기준 월간통계 누락으로 2008년의 경우 누계치만 제시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10 1월~3월 연방정부 총재정수입은 약 584억유로로 전년보다 약 45억유로(8.3%) 증가

○ 3월(누계)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약 519억유로로 전년 대비 62억유로(13.6%) 증가

– 부가가치세가 약 28억유로(12.2%), 소득세 및 법인세 약 22억유로(11.8%), 담배세 약 4억유로(17.5%) 증가

• 소득세 중 분리과세분이 전년 대비 81.5% 증가

○ 3월(누계) 기타수입은 약 65억유로로 전년 대비 20.9%(17억유로) 감소

〈표 3-Ⅴ-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1 (예산)
	3월	'09.1~3	3월	'10.1~3	3월	'11.1~3	변동분	%	
Ⅰ. 조세수입	16,408	49,320	17,304	45,687	20,868	51,901	6,214	13.6	229,164
공동세:	15,182	43,652	14,215	41,004	16,839	45,968	4,964	12.1	184,183
소득세 및 법인세	8,583	20,449	8,292	18,202	9,875	20,354	2,152	11.8	84,791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분)	4,375	12,986	3,877	11,465	4,274	12,146	681	5.9	55,781
소득세(연말정산분)	1,635	1,262	2,480	2,616	2,915	2,871	255	9.7	11,921
소득세(분리과세분)	125	1,598	296	1,403	335	2,546	1,143	81.5	6,895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275	2,403	220	1,743	230	1,548	–195	–11.2	3,569
법인세	2,171	2,199	1,420	976	2,121	1,243	267	27.4	6,625
부가가치세	6,599	23,201	5,918	22,756	6,962	25,528	2,772	12.2	97,985
수입부가가치세	2	3	4	46	3	86	40	87.0	1,407
에너지세	2,982	4,777	2,780	4,446	3,028	4,457	11	0.2	39,142
담배세	1,046	2,365	1,266	2,462	1,724	2,893	431	17.5	13,440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1,382	3,191	1,263	2,856	1,411	3,072	216	7.6	11,850
보험세	644	4,502	744	4,496	586	4,869	373	8.3	10,620
전기세	538	1,560	640	1,498	832	1,785	287	19.2	7,030
자동차세	–	–	809	2,345	817	2,349	4	0.2	8,445
주세	139	594	130	527	119	575	48	9.1	1,963
커피세	67	225	70	238	70	248	10	4.2	1,030
추가 주정부 교부금	–3,445	–3,445	–3,188	–3,188	–2,996	–2,996	192	–6.0	–12,159
GNP 연계 EU예산 출자금	–1,257	–4,896	–799	–6,475	–969	–6,948	–473	7.3	–21,870
부가가치세 연계 EU예산 출자금	–332	–1,659	–76	–687	–91	–646	41	–6.0	–2,300
단거리 대중교통을 위한 주정부 지원	–565	–1,694	–573	–1,719	–582	–1,745	–26	1.5	–6,980
자동차세 및 HGV 통행료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	–	0	–2,248	0	–2,248	0	0.0	–8,992
Ⅱ. 기타 수입	7,794	11,346	4,717	8,274	3,563	6,541	–1,733	–20.9	27,860
경제활동 수입	3,619	3,799	3,510	3,866	2,212	2,402	–1,464	–37.9	5,565
이자수입	45	250	10	82	31	63	–19	–23.2	512
차관수익 및 민영화 수입	236	770	318	958	303	620	–338	–35.3	4,247
총 재정수입	24,203	60,667	22,021	53,961	24,430	58,442	4,481	8.3	257,024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9.2~3월, 2010.2~3월, 2011.2~3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3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전년에 비해 21억유로(2.5%) 증가한 약 839억유로를 기록

○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분야 지출이 전년보다 20.6%(약 5억유로),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지출이 전년 대비 13.7%(약 5억유로) 증가

○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지출도 전년 대비 1.9%(약 9억유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실업보험 지출이 전년보다 31.1%(약 11억유로) 크게 증가

○ 반면 식품, 농업, 영업 및 에너지, 수자원공급, 무역, 서비스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11.3%(약 2억유로) 감소

〈표 3-Ⅴ-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FY2009		FY2010		FY2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1 (추정)
	3월	'09.1~3	3월	'10.1~3	3월	'11.1~3	변동분	%	
일반공공서비스	3,987	13,794	4,140	13,200	3,806	13,408	208	1.6	55,490
경제협력 및 개발	371	1,930	337	1,684	269	1,651	-33	-2.0	6,149
국방	2,356	8,048	2,236	8,077	2,274	7,882	-195	-2.4	32,147
연방행정	558	1,597	489	1,509	538	1,572	63	4.2	6,376
세무행정	296	823	324	903	280	880	-23	-2.5	4,166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1,075	2,812	839	2,642	1,180	3,187	545	20.6	16,933
연방 교육 및 훈련 보조	100	432	110	441	127	518	77	17.5	1,544
R&D	528	1,017	505	1,199	696	1,323	124	10.3	9,471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11,978	40,229	13,897	45,834	13,965	46,700	866	1.9	160,005
사회보장	6,290	24,459	6,426	24,968	6,387	24,831	-137	-0.5	77,655
실업보험	-	-	1,695	3,525	2,023	4,623	1,098	31.1	13,446
기초실업급여	3,014	8,626	3,074	9,014	2,584	7,807	-1,207	-13.4	34,190
:실업급여 Ⅱ	1,877	5,633	1,948	5,867	1,641	5,108	-759	-12.9	20,400
실업급여 Ⅱ, 주택 및 난방보조	303	857	262	817	295	824	7	0.9	3,600
주거보조	55	134	75	227	71	220	-7	-3.1	679
육아양육비	391	1,186	417	1,204	424	1,256	52	4.3	4,389
전쟁연금 및 대상자 복지	203	657	185	603	178	563	-40	-6.6	1,748
보건, 환경, 체육	91	218	73	220	81	295	75	34.1	1,580
주택,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76	252	79	284	123	346	62	21.8	2,098
주택	48	206	55	233	102	317	84	36.1	1,353
식품, 농업, 임업 및 에너지, 수자원 공급, 무역, 서비스	218	2,043	236	2,185	221	1,939	-246	-11.3	6,497
지역발전	65	134	46	118	76	143	25	21.2	740
석탄채굴	0	1,375	0	1,319	0	1,350	31	2.4	1,350
보증	25	73	48	237	30	101	-136	-57.4	1,770
교통, 통신	649	2,010	577	1,788	591	1,986	198	11.1	11,735
도로(지방운송재정법 제외)	297	688	294	703	308	650	-53	-7.5	5,926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1,237	3,027	1,256	3,325	1,234	3,780	455	13.7	15,999
연방 철도기금	437	1,082	429	1,074	420	1,049	-25	-2.3	5,283
구 독일연방철도/독일국영철도회사 (Deutsche Bahn AG)	242	794	240	662	244	676	14	2.1	3,877
금융 일반	1,099	13,640	303	12,377	-908	12,274	-103	-0.8	35,462
이자지출	1,024	13,204	224	12,135	-974	12,039	-96	-0.8	35,343
총 재정지출	20,411	78,026	21,401	81,856	20,292	83,915	2,059	2.5	305,800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9.2~3월, 2010.2~3월, 2011.2~3월

4. 국가채무 동향(2월 말 기준)

□ 2011.2.28 기준 연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약 1조 1,124억유로 기록

○ 연방채권 발행규모는 약 6,237억유로로 전년대비 약 195억유로(3.2%) 증가

○ 전년에 비해 특별연방채권 170억유로(9.3%), 연방재무부중기채권 140억유로(10.8%), 물가연동국채 100억유로(34.5%) 증가

○ 재무부할인채권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168억유로(17.2%) 감소

〈표 3-Ⅴ-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09.02.28	'10.02.28	'11.02.28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물가연동국채(Index Linked Bonds)	22,000	29,000	39,000	10,000	34.5
연방채권(Federal bonds)[1]	598,218	604,204	623,736	19,532	3.2
특별연방채권(Special federal bonds)	171,000	183,000	200,000	17,000	9.3
연방저축채권(Federal savings bonds)	9,523	9,429	8,477	-952	-10.1
연방재무부중기채권(Federal treasury notes)	115,000	130,000	144,000	14,000	10.8
재무부할인채권(Treasury discount paper)	58,585	97,628	80,814	-16,814	-17.2
연방재무부단기채권(Treasury financing paper)[2]	2,109	790	575	-215	-27.2
독일정부일일채권(German government day-bond)	3,443	2,353	1,885	-468	-19.9
Loans against borrowers' notes	13,140	12,679	12,420	-259	-2.0
Treuhand medium-term notes	51	51	51	0	0.0
Other intra-annual credit-market funds	2,100	-	1,480	-	-
합계	995,170	1,069,135	1,112,437	43,302	4.1

주: 1) 재정적자 보전용 장기국채, 10년 및 30년 만기
2) 1년 및 2년 만기 연방재무부중기채권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9.3월, 2010.3월, 2011.3월

Ⅵ 캐나다 (2011년 2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재정적자는 약 283억 캐나다달러(CAD)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3억 캐나다달러(30.3%) 감소

○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7%(131억CAD) 증가한 2103억CAD으로, 이는 비거주자 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결과

○ 프로그램지출은 이전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보다 0.2%(4.2억CAD) 감소한 2102억 CAD이며,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4.68%(12.6억CAD) 증가한 283억CAD

〈표 3-Ⅵ-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2월	누계 ('08.4~ '09.2)	2월	누계 ('09.4~ '10.2)	2월	누계 ('10.4~ '11.2)	변동분	%
예산(발생주의)								
재정수입	19,635	195,768	20,513	197,143	21,468	210,252	13,109	6.65
재정지출								
프로그램 지출	-16,533	-209,230	-19,159	-210,605	-19,543	-210,182	423	-0.20
이자지출	-2,285	-27,064	-2,256	-27,064	-2,517	-28,330	-1,266	4.68
재정수지(a)	817	-40,526	-902	-40,526	-592	-28,260	12,266	-30.27
예산외(b)	-14,638	-25,649	-1959	-25,649	-2,600	-18,547	7,102	-27.69
필요/잉여 재원규모 (a+b=c)	-13,821	-66,175	-2,861	-66,175	-3,192	-46,807	19,368	-29.27
순 재원조달 규모(d)	15,982	37,631	-782	37,631	1,856	26,048	-11,583	-30.78
순 현금수지 변화분(c+d)	2,161	-28,544	-3643	-28,544	-1,336	-20,759	7,785	-27.27
기말 현금수지		16,487		16,487		4,864	-11,623	-70.50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10.2월, 2011.2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2월(누계)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6%(131억CAD) 증가한 2103억CAD

○ (소득세) 개인소득세(5.8%, 56억CAD) 및 법인세(7.5%, 17억CAD)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5.4%(67억CAD) 증가한 1,330억CAD 규모

○ 수입 관세는 미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소비세(GST수입)가 크게 증가(197억 CAD, 8.7%)하여 총소비세는 전년동기 대비 7.4%(26억CAD) 증가한 377억CAD 규모

○ (고용보험료 및 기타) 고용보험료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3%(9억CAD) 증가하였고, 기타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3.4%(28억CAD) 증가

〈표 3-Ⅵ-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2월	누계 ('08.4~'09.2)	2월	누계 ('09.4~'10.2)	2월	누계 ('10.4~'11.2)	변동분	%
조세수입								
소득세	13,304	138,766	13,506	126,162	14,000	132,912	6,750	5.4
개인소득세	9,667	105,495	8,982	98,216	9,269	103,873	5,657	5.8
법인세	3,180	27,429	4172	22,584	4,422	24,279	1,695	7.5
비거주자	457	5,842	352	4,770	309	4,760	-10	0
소비세	2,510	36,810	3,291	35,122	3,203	37,724	2,602	7.4
GST (Goods and services tax)	1,443	23,841	2,192	22,584	2,044	24,555	1,971	8.7
에너지세	436	4,735	432	4,770	450	4,899	129	2.7
수입관세	327	3,720	297	3,187	309	3,184	-3	-0.1
기타소비세	304	4,514	370	4,581	400	5,086	505	11.0
조세수입 소계	15,814	175,576	16,797	161,284	17,203	170,636	9,352	5.8
고용보험료	1,911	14,850	1956	14,739	2,153	15,664	925	6.3
기타 수입	1,910	22,247	1,760	21,120	2,112	23,952	2,832	13.4
총 재정수입	19,635	212,673	20,513	197,143	21,468	210,252	13,109	6.6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10.2월, 2011.2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년 2월(누계기준)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4%(약8억4천만CAD) 증가한 2,385억 CAD를 기록

○ (프로그램지출) 이전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2%(4억 2천만CAD) 감소한 2,102억CAD를 기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노인급여 및 자녀수당의 증가분을 초과하는 고용보험급여의 감소분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5%(3.2억 CAD) 감소

–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은 보건 및 사회이전지출(CHT 및 CST) 등의 증가로 3.6%(17억CAD) 증가

– 이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8.1%(27억CAD) 감소

– 기타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4%(9억CAD) 증가

○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4.7%(13억CAD) 증가한 283억CAD를 기록

〈표 3-Ⅵ-3〉 연방정부 재정지출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2월	누계 ('08.4~'09.2)	2월	누계 ('09.4~'10.2)	2월	누계 ('10.4~'11.2)	변동분	%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노인급여	2,845	30,451	2,942	31,728	3,057	32,672	944	3.0
고용보험급여	1,739	14,140	2,341	19,882	1,770	18,300	-1,582	-8.0
자녀수당	955	10,957	1,031	11,372	1,030	11,686	314	2.8
소계	5,539	55,548	6,314	62,982	5,857	62,658	-324	-0.5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 지원								
CHT(Canada Health Transfer) 보건이전지출	1,885	20,743	2,084	22,760	2,182	23,885	1,125	4.9
CST(Canada Social Transfer) 사회이전지출	880	9,678	905	9,954	931	10,247	293	2.9
소계	2,765	30,421	2,989	32,714	3,113	34,132	1,418	4.3
재정이전	1,292	14,336	1,301	14,892	1,319	15,583	691	4.6
지역사회	15	871	166	1,841	108	1,727	-114	-6.2
Quebec주 CHT, CST운영비용 대체지급[1)]	-277	-2,783	-231	-2,471	-292	-2,781	-310	12.5
소계	3,795	42,845	4,225	46,976	4,248	48,661	1,685	3.6
기타 이전지출								
농업 및 농식품	56	1,485	-10	1,408	21	1,812	404	28.7
외교 · 통상	314	2,761	467	2,878	346	2,958	80	2.8
보건	131	2,003	156	2,290	129	2,277	-13	-0.6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	133	2,135	214	2,966	246	3,316	350	11.8
인디언 및 북부지역 개발	354	4,543	396	4,717	385	4,919	202	4.3
산업	153	1,918	528	2,708	272	2,987	279	10.3
기타	727	8,439	644	16,467	979	12,445	-4,022	-24.4
소계	1,868	23,284	2,395	33,434	2,378	30,714	-2,720	-8.1
이전지출 소계	11,202	121,677	12,934	143,392	12,483	142,033	-1,359	-0.9
기타 프로그램 지출								
국영기업	585	6,999	1,015	9,445	874	9,731	286	3.0
국방	1,591	16,859	1,591	17,616	1,650	17,255	-361	-2.0
부처별 사업비	3,155	37,315	3,619	40,152	4,536	41,163	1,011	2.5
기타 프로그램 지출 소계	5,331	61,173	6,225	67,213	7,060	68,149	936	1.4
총 프로그램 지출	16,533	182,850	19,159	210,605	19,543	210,182	-423	-0.2
이자지출	2,285	28,515	2,256	27,064	2,517	28,330	1,266	4.7
총 재정지출	18,818	211,365	21,415	237,669	22,060	238,512	843	0.4

주: 1) 다른 주정부와 다르게 Quebec주에서는 CHT와 CS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서는 현금 대신 연방 개인소득세율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지출로 표기. 원명칭은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10.2월, 2011.2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1.3.31 기준 연방정부의 비금융자산을 차감한 누적채무는 5,448억CAD로 전년 대비 5.0% 증가

○ 총부채는 9,038억 CAD로 작년 대비 2.3% 증가

– 시장성채권 및 이자부 부채가 각각 417억CAD, 312억CAD 증가

○ 자산과 부채를 합한 순채무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6,084억CAD

〈표 3-Ⅵ-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CAD, %)

구분	09.03.31 (누계)	10.03.31 (누계)	11.03.31 (누계)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부채					
미지급 부채 계정	113,999	120,525	109,890	-10,635	-8.8
이자부 부채					
만기 전 채무					
자국통화표시 채권					
시장성 채권	295,186	367,962	409,666	41,704	11.3
Treasury bills	192,275	175,849	163,549	-12,300	-7.0
Retail debt	12,532	11,855	10,103	-1,752	-14.8
기타	523	452	27	-425	-94.0
소계	500,516	556,118	583,345	27,227	4.9
외국통화표시 채권	10,381	8,243	7,694	-549	-6.7
이종통화 스왑 재평가 계정	3,690	-4,233	-5,583	-1,350	31.9
미상각 채권 할인핵/할증액	-4,751	-5,092	-4,257	835	-16.4
자본리스와 관련한 채무	4,184	4,090	3,975	-115	-2.8
만기 전 채무 소계	514,020	559,126	585,174	26,048	4.7
연금 및 기타 채무					
공공부문 연금	139,909	142,843	145,594	2,751	1.9
기타 근로자 및 보훈급여	50,311	54,227	56,722	2,495	4.6
기타 채무	5,923	6,587	6,479	-108	-1.6
연금 및 기타 채무 소계	196,143	203,657	208,795	5,138	2.5
이자부 부채 소계	710,163	762,783	793,969	31,186	4.1
총부채	824,162	883,308	903,859	20,551	2.3
금융자산					
현금 및 미수금 계정	122,147	101,205	89,644	-11,561	-11.4
외국환 계정	51,709	46,950	48,175	1,225	2.6
차관, 투자 및 선급금(순 급여)	125,093	152,681	157,651	4,970	3.3
총금융자산	298,949	300,836	295,470	-5,366	-1.8
순채무	525,213	582,472	608,389	25,917	4.4
비재정자산	61,503	63,375	63,584	209	0.3
연방정부 채무(누적 적자)	463,710	519,097	544,805	25,708	5.0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10. 3월, 2011. 3월

Ⅶ 호주 (2011년 3월 기준, FY2010-11: 2010.7~2011.6)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7~2011.3월 예산적자는 약 479억호주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2%(52억호주달러) 증가

○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7%(58억호주달러)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5.6%(139억호주달러) 증가하여 재정지출 증가분이 수입 증가분보다 큼

– FY2010-11 연간 재정수입은 약 3,197억호주달러 , 지출은 약 3,543억호주달러로 전망

□ 미래기금(Future Fund) 수익금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7.6%(63억호주달러) 증가한 420억호주달러

□ 2011년 3월(누계기준) 순채무는 888억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55.1% 증가

〈표 3-Ⅶ-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3월	누계 ('08.7~'09.3)	3월	누계 ('09.7~'10.3)	3월	누계 ('10.7~'11.3)	누계 기준	%	FY 2010-11
수입	24,378	215,393	25,201	214,942	23,145	220,783	5,841	2.7	319,682
지출	27,506	227,761	28,863	246,938	28,954	260,834	13,896	5.6	354,348
순운영수지	-3,128	-12,369	-3,661	-31,996	-5,809	-40,051	-8,055	25.2	-34,666
순자본투자	528	1,675	281	3,700	-3	1,939	-1,761	-47.6	7,254
재정수지[1]	-3,656	-14,044	-3,942	-35,695	-5,806	-41,991	-6,296	17.6	-41,920
예산수지[2]	-1,710	-20,407	-2,602	-42,644	-7,267	-47,857	-5,213	12.2	-41,468
총자산	–	273,520	–	315,343	–	317,025	1,682	0.5	316,787
총부채	–	227,806	–	325,195	–	395,688	70,493	21.7	380,148
순채무	–	-15,709	–	34,808	–	88,791	53,983	155.1	79,581

주: 1) 재정수지(fiscal balance) = 순운영수지(=수입-지출) – 순자본투자 (발생주의 기준)
2)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 재정수지(순운영수지 – 순자본투자) – Future Fund 수익금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9~2011년 각 연도 3월 보고서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7~2011.3월까지 총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2.7%(58억호주달러) 증가한 2,208억호주달러

○ 소득세는 원천징수세 및 기타 개인소득세 증가등 개인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3%(99억호주달러) 증가한 1,446억호주달러를 기록

○ 간접세는 재화 및 서비스세(GST), 소비세 증가의 영향으로 4.0%(24억호주달러) 증가

○ 배당소득이 81.9%(59억호주달러) 크게 감소하여,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3%(65억호주달러) 감소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3월	누계 ('08.7~'09.3)	3월	누계 ('09.7~'10.3)	3월	누계 ('10.7~'11.3)	누계 기준	%	FY2010-11
총재정수입	24,378	215,393	25,201	214,942	23,145	220,783	5,841	2.7	319,682
조세수입	22,585	199,520	23,585	194,982	21,674	207,276	12,294	6.3	299,419
소득세	14,690	141,760	16,024	134,677	16,090	144,554	9,877	7.3	214,500
개인소득세	12,616	86,990	13,220	86,708	14,746	96,388	9,680	11.2	138,360
원천징수	10,367	88,362	11,607	89,300	12,327	97,613	8,313	9.3	132,270
기타 개인소득세	3,428	18,808	2,634	18,067	3,444	20,456	2,389	13.2	30,440
환급	1,179	20,180	1,021	20,659	1,025	21,682	1,023	5.0	24,350
기타소득세	2,074	54,770	2,804	47,969	16,090	144,554	96,585	201.3	214,500
법인세	1,547	43,043	2,706	39,255	1,265	39,794	539	1.4	63,680
국민연금기금	435	7,656	25	5,089	93	5,372	283	5.6	7,330
석유세	-37	1,719	0	1,052	-23	607	-445	-42.3	1,470
간접급여세	129	2,351	74	2,573	8	2,393	-180	-7.0	3,660
간접세	7,895	57,761	7,561	60,305	5,584	62,722	2,417	4.0	84,919
재화 · 서비스세(GST)[1]	4,990	32,118	4,633	34,454	2,903	35,623	1,169	3.4	49,130
소비세	2,160	18,220	2,272	18,421	1,969	19,448	1,027	5.6	25,300
관세	485	4,806	435	4,446	450	4,374	-72	-1.6	6,430
기타 간접세	260	2,616	133	2,082	181	2,366	284	13.6	2,749
세외수입[2]	1,793	15,873	1,617	19,960	1,470	13,506	-6,454	-32.3	20,263
재화 및 서비스매출	695	4,542	737	5,683	696	5,771	88	1.5	7,987
이자	408	4,201	379	3,255	262	2,412	-843	-25.9	5,074
배당소득	478	2,952	154	7,215	112	1,309	-5,906	-81.9	1,764
기타	212	4,178	347	3,807	400	4,014	207	5.4	5,438

주: 1) 재화 ·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 항목은 FY2009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기타간접세(Other indirect tax)에 포함되어 있음

2) 세외수입 소계는 하위분류 값을 합산함.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9~2011년 각 연도 3월 보고서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년 3월(누계) 총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5.6%(139억호주달러) 증가한 2,608억호주달러

○ 공공서비스, 의료, 사회보장 및 복지가 재정지출의 주된 요인임

– 공공서비스(전년 대비 19억호주달러, 14.7%), 의료(전년 대비 24억호주달러, 6.4%), 사회보장 및 복지(전년 대비 44억호주달러, 5.3%) 증가

– 이외에도 기타목적(전년 대비 71억호주달러, 16.8%)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부간 이전은 전년 대비 28억호주달러(8.6%) 증가

○ 교육(23억호주달러, 8.1%), 연료 및 에너지(21억호주달러, 31.5%)부문 등은 감소

〈표 3–Ⅶ–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3월	누계 ('08.7~'09.3)	3월	누계 ('09.7~'10.3)	3월	누계 ('10.7~'11.3)	누계 기준	%	FY 2010–11
공공서비스	1,401	13,469	1,399	13,070	1,321	14,987	1,917	14.7	21,193
국방	1,493	13,325	1,727	14,161	1,885	14,590	429	3.0	21,086
공공질서 및 안전	243	2,006	278	2,565	289	2,748	183	7.1	3,924
교육	712	14,598	2,789	28,160	2,109	25,879	–2,281	–8.1	32,977
의료	4,009	34,769	4,532	38,014	4,519	40,428	2,414	6.4	57,435
사회보장 및 복지	12,413	86,723	10,754	83,967	9,806	88,391	4,424	5.3	115,699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517	3,293	691	5,335	449	5,264	–71	–1.3	5,830
여가 및 문화	82	1,295	371	2,008	175	2,072	64	3.2	3,312
연료 및 에너지	506	4,060	363	6,581	455	4,505	–2,076	–31.5	7,214
농업, 산림, 어업	120	1,422	179	1,799	247	1,793	–6	–0.3	3,685
광업	107	1,226	129	1,464	148	1,469	5	0.3	2,041
교통 및 통신	394	3,183	295	3,122	331	2,784	–338	–10.8	5,080
기타 경상비	577	4,341	543	4,215	797	6,322	2,107	50.0	8,927
기타 목적	4,932	44,052	4,812	42,477	6,425	49,603	7,126	16.8	65,946
공공채무 지급이자	108	2,204	590	4,447	832	6,741	2,294	51.6	9,132
연금 지급이자	525	4,722	554	4,990	587	5,272	282	5.7	6,989
정부간 이전	4,293	37,047	3,668	32,932	3,923	35,778	2,846	8.6	50,000
자연재해 구조비용	0	59	0	108	1,083	1,812	1,704	1,577.8	577
긴급예비비[1)]	6	20	0	0	0	0	0	–	–752
총지출	27,506	227,761	28,863	246,938	28,954	260,834	13,896	5.6	354,348

주: 1) 긴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에 자산매각 관련지출 포함
2)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수치합계와 총지출 값이 다를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9~2011년 각 연도 3월 보고서

4. 국가채무 동향

□ 2011년 3월말 일반정부 순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698.4%(688억호주달러) 감소한 787억 호주달러 적자 기록

○ 자산은 17억호주달러(0.5%) 증가하였으나, 부채가 705억호주달러(21.7%) 증가하여 순자산 감소

– 부채 중 연금 등 의무지급금을 제외한 이자발생 부채규모는 2,032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7%(523억호주달러) 증가

□ 2011년 3월말 순채무 규모는 888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5.1%(540억호주달러) 증가 (채무구조 악화)

〈표 3-Ⅷ-4〉 일반정부 채무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2009.3.31.	2010.3.31.	2011.3.31.	증감액	%	2011.6.30.
자산	273,520	315,343	317,025	1,682	0.5	316,787
금융자산	181,540	217,964	213,596	-4,368	-2.0	209,611
비금융자산	91,980	97,380	103,429	6,049	6.2	107,177
부채	227,806	325,195	395,688	70,493	21.7	380,148
이자발생부채	88,492	150,875	203,206	52,331	34.7	201,896
예치금	313	238	163	-75	-31.5	232
정부채권	80,495	138,307	192,985	54,678	39.5	191,137
차입	6,802	11,483	9,269	-2,214	-19.3	9,642
기타	883	846	789	-57	-6.7	885
의무지급금	139,313	174,321	192,482	18,161	10.4	178,252
순자산[1]	45,715	-9,852	-78,663	-68,811	698.4	-63,361
순금융자산[2]	-46,266	-107,232	-182,091	-74,859	69.8	-170,538
순금융부채[3]	67,255	133,324	207,868	74,544	55.9	195,306
순채무[4]	-15,709	34,808	88,791	53,983	155.1	79,581

주: 1) 순자산(net worth) = 자산 – 부채
2)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 금융자산 – 부채 (비금융자산 제외)
3) 순금융부채 = 부채 – 금융자산 + 금융자산 중 기타공공부문투자
4) 순채무 = (예치금 + 선수금 + 정부채권 차입 및 기타 차입) – (현금 및 예금 + 선지급 + 투자, 차입 등)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9~2011년 각 연도 3월 보고서